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연구진 >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연구총괄)

권성준 부연구위원

조희평 부연구위원

신현대 선임연구위원

이재국 연구위원

이희선 연구위원

조연주 위촉연구위원

외부 연구진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검토위원 :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목 차

요 약	1
I.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7
1.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37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7
나. 사업의 기대효과	39
2. 사업 개요	39
가.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39
나. 사업의 주요 내용	41
다. 사업의 추진체계	44
3.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45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45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46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49
1.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	49
가. 상위계획	49
나. 관련 법률 검토	52
2. 기초자료 검토	55
가. 출산 현황	55
나.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현황	65
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75
3. 유사사례 검토	82
가. 국내 사례	82
나. 해외 사례	92
4.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105
가. 경제사회 환경에 관한 주요 쟁점	105

나. 사업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주요 쟁점	106
다. 비용-효과성에 관한 주요 쟁점	107
Ⅲ. 경제사회 환경 분석	109
1. 경제사회 여건 분석	109
가. 경제·사회 문제 파악의 적절성	109
나.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과의 중복 문제	109
다. 정부 개입의 적절성	114
라.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117
2. 경제사회 영향 분석	120
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	120
나. 사회적 의견수렴의 충분성	123
3. 재정의 지속가능성	127
가. 향후 재정부담 검토	127
나. 안정적 자원조달 가능성	130
다. 중장기적 재정요소 변동 위험성	132
Ⅳ.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134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134
가. 사업목표의 명확성	134
나.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134
다.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135
2. 수혜대상의 적절성	136
가. 수혜대상의 명확성	136
나. 수요에 대한 검토	136
다. 사업대상 외 수혜 가능성	137
3. 추진방법의 적절성	138
가. 추진방법 설계의 적절성	138
나. 추진주체 역할의 명확성	139

다. 정책조합의 가능성	140
4. 전달체계의 적절성	142
가. 전달체계의 명확성	142
나. 수요자 접근의 용이성	143
다. 집행기구의 적절성	144
V. 비용 - 효과성 분석	145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145
가. 기대효과의 명확성	145
나.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	145
다. 성과지표의 적절성	146
2. 비용추정의 적정성	147
가. 비용추계의 적절성	147
나. 추가 발생 가능 비용 검토	164
다.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 변화	164
3. 비용 대비 효과성	165
가.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효과	165
나. 인적자본 형성 효과	178
다. 성과 대비 비용	198
라. 비용-효과적 대안 검토	203
V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4
1.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204
가. 종합평가의 개요	204
나. 평가 대상(주무부처 사업계획)	205
다. 조사 대상 집단	207
라. 종합평가 구조 및 평가항목	207
마. 종합평가 방법	211
바. 종합평가 결과	212

2.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14
가. 종합결론	214
나. 정책제언	215
참고문헌	218
부 록	223

표 목차

〈표 Ⅰ-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8
〈표 Ⅰ-2〉 사업의 추진근거	40
〈표 Ⅰ-3〉 사업의 추진경위	41
〈표 Ⅰ-4〉 사업의 주요 내용	42
〈표 Ⅰ-5〉 총사업비(2022~2025년)	43
〈표 Ⅰ-6〉 소요예산 산출근거	44
〈표 Ⅱ-1〉 출생아 수 및 출산율	56
〈표 Ⅱ-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18) 및 첫째아 출산연령(2017)	58
〈표 Ⅱ-3〉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9~2020년)	59
〈표 Ⅱ-4〉 출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61
〈표 Ⅱ-5〉 출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및 연령별 출생아 수	61
〈표 Ⅱ-6〉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62
〈표 Ⅱ-7〉 출산 순위별 비중	63
〈표 Ⅱ-8〉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2000~2020년)	63
〈표 Ⅱ-9〉 여성 미혼율	64
〈표 Ⅱ-10〉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65
〈표 Ⅱ-11〉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임신·출산지원)	69
〈표 Ⅱ-12〉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육아지원)	70
〈표 Ⅱ-13〉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일·가정 양립지원)	74
〈표 Ⅱ-14〉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생애단계별 분류	76
〈표 Ⅱ-1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원방법별 분류	76
〈표 Ⅱ-16〉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78
〈표 Ⅱ-1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2020)	78
〈표 Ⅱ-1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2020)	79

〈표 II-19〉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주요 사례	80
〈표 II-20〉 유사사업 비교(중앙정부)	82
〈표 II-21〉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9~2020년	84
〈표 II-22〉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구간 비교	85
〈표 II-23〉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 2018~2020년	87
〈표 II-24〉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20년	88
〈표 II-25〉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 2018~2020년	92
〈표 II-26〉 해외의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 유형별 정리	93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110
〈표 III-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산 현황	111
〈표 III-3〉 출산지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액	112
〈표 III-4〉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급유형별 현황	113
〈표 III-5〉 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수와 비중	113
〈표 III-6〉 출생순위별 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건 수 및 평균 예산	113
〈표 III-7〉 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액	114
〈표 III-8〉 출산지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액	115
〈표 III-9〉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116
〈표 III-10〉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지출 현황(2017)	118
〈표 III-11〉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에 대한 기존 문헌	121
〈표 III-12〉 자녀 양육지원 부족 인식	123
〈표 III-13〉 아동 물품 구입 비용	124
〈표 III-14〉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및 적정 금액	124
〈표 III-15〉 출산지원금 지원 시 선호 방법	126
〈표 III-16〉 변경된 총사업비(2022~2025년)	128
〈표 III-17〉 영유아 지원 부분 재정지출 추이	128
〈표 III-1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예산	131

〈표 III-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지원 현황과 예산	132
〈표 III-20〉 인구저위 기준 적용 총사업비(2022~2025년)	132
〈표 III-21〉 인구중위 기준 적용 총사업비(2022~2025년)	133
〈표 IV-1〉 영아기 지원 사업별 지원금액	141
〈표 V-1〉 아동 물품 구입비용	148
〈표 V-2〉 아동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150
〈표 V-3〉 아동 연령별 양육비 지출	153
〈표 V-4〉 아동 성별 양육비 지출	155
〈표 V-5〉 아동 출생순서별 양육비 지출	157
〈표 V-6〉 맞벌이 여부별 양육비 지출	158
〈표 V-7〉 가구소득별 양육비 지출	159
〈표 V-8〉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의 양육비 지출	160
〈표 V-9〉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양육비 지출	161
〈표 V-10〉 아동 양육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163
〈표 V-11〉 기초통계	169
〈표 V-12〉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 토빗모형 추정결과(0세, 1세) ·	171
〈표 V-13〉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 토빗모형 추정결과(2세, 3세) ·	172
〈표 V-14〉 보육비가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174
〈표 V-15〉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신규 출산과의 관계 분석	176
〈표 V-16〉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수와의 관계 분석	176
〈표 V-17〉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완결출산 가구의 미성년 자녀 수와의 관계 분석	177
〈표 V-18〉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K-ASQ 원점수	189
〈표 V-19〉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K-ASQ 원점수	190
〈표 V-20〉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K-ASQ 원점수(소득분위별 이질성 고려) ···	192
〈표 V-21〉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CBCL 백분위점수	194

〈표 V-22〉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CBCL 백분위점수	195
〈표 V-23〉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CBCL 백분위점수(소득분위별 이질성 고려) ·	195
〈표 V-24〉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REVT 원점수	197
〈표 V-25〉 0세 아동 출산·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혜 현황	199
〈표 V-26〉 출산장려금 수혜여부별 양육비 지출	200
〈표 VI-1〉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209
〈표 VI-2〉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211
〈표 VI-3〉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결과 산정 방식	212
〈표 VI-4〉 평가자별 종합평가점수	213
〈표 VI-5〉 평가자별 종합의견	213
〈표 VI-6〉 분과위 총평	214
〈표 VI-7〉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14

그림 목차

[그림 I-1] 시간, 돌봄서비스, 비용측면에서 제도 개선 체계도	39
[그림 I-2]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전달체계	44
[그림 I-3] 업무 흐름도	45
[그림 I-4]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46
[그림 II-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51
[그림 II-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영역별 핵심 과제	52
[그림 II-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	56
[그림 II-4] OECD 합계출산율 동향	57
[그림 II-5] OECD 첫째아 출산연령 동향	57
[그림 II-6] 시도별 합계 출산율 비교	60
[그림 II-7] 초혼부부의 혼인건수	64
[그림 II-8] 30~40대 미혼 여성 인구	65
[그림 II-9] 중앙정부 출산·양육비용 지원 정책	83
[그림 II-1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86
[그림 II-11]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첫째아)	89
[그림 II-12]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둘째아)	90
[그림 II-13]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셋째아)	91
[그림 III-1] OECD(평균)와 한국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교(2015~2017년)	118
[그림 IV-1] 사업의 전달체계	143
[그림 V-1] 아동 나이별 총양육비 지출	152
[그림 V-2] 동적 인적자본 형성(Dynamic Skill Formation)	179

[그림 V-3] 자기생산성, 정적 상호보완성, 동적 상호보완성	180
[그림 V-4]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	181
[그림 V-5] 출산 장려금이 0세 아동 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01
[그림 V-6] 출산장려금 구간별 0세 아동 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01
[그림 V-7] 출산장려금이 0세 아동 보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	202
[그림 VI-1]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계층 구조	208

요 약

I.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의 배경

- 2018년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에서 시작
 -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서는 출산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 양육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용·시간·돌봄 지원의 방향성 제시
 - 이러한 방향성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비용 지원 사업에 해당하며 초기 육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초기 양육비용 절감 및 다양한 양육 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목표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
- 2020년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정책 추진
 - 이 계획에서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추진 과제로,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영아기 집중 투자로 첫 만남 꾸러미가 언급됨
 - 첫 만남 꾸러미의 내용은 기존의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으로 확대 및 개편하는 것으로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
 - 이 중에서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해당

□ 사업의 목적

-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의 기대효과

- 의료서비스 외 자녀 보육 관련 서비스, 지역 상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신·출생 전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2. 사업 개요

□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 사업의 추진근거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과제로 ‘아동 출생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이 반영된 것을 근거로 추진

〈표 1〉 사업의 추진근거

	내 용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p>영아기 집중투자</p> <p>(첫 만남 꾸러미) 기존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22~)</p> <p>- 건강보험 임·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60만 →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사항) * 다태아 100만 → 140만원, 분만취약지는 20만원 추가 지원</p> <p>-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200만원* 신규 지급 * 지자체 보조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도입과정 지속 협의</p>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p. 80.

○ 사업의 추진경위

〈표 2〉 사업의 추진경위

일시	세부내용
2020.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반영
2021. 0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첫 만남 이용권 재량지급규정) 발의(서영석 의원), 소위 계류 중 *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 대상 대면 설명 지속 실시 등 근거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노력('21. 6.)
2021. 0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1. 04.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신청
2021. 05.	▲(기재부) '22년 2,260억원(국비) 반영한 부처안 제출(5. 27.) ▲(행안부) 지방재정부담 보조사업 협의 요청(5. 12. 복지부)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총리소속) 보조율 조정(기존30/50 → 조정50/70) 중점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5. 28. 행안부)
2021. 05.	202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개편 사업(행복e음)의 과제로 포함하여 개발추진 협의 완료(85백만원)
2021. 06.	지자체 의견 수렴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 마련 위한 17개 시·도 회의 추진 * 지자체 회의(2월), 시·도 재정부담협의회 2회(6. 11., 9. 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견수렴 2회(8. 19., 9. 8.),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협조요청(9. 2.)

자료: 사업 추진경위에 대한 부처의 답변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하여 작성

□ 사업의 주요 내용

〈표 3〉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지급방식	지역화폐 등 지급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 근거 규정 반영 추진 * 조항 신설(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제4항 신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처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일(결정 통지)로부터 1년까지 사용
전달체계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 → (시군구) 대상자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제출자료

○ 총사업비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중위 수준으로 바꾸쳐 지원대상인 출생아 수를 예측하여,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
- 동 사업은 2022년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며, 향후 4년(2022~2025년)간의 재정지출 총액은 2조 5,433억원으로 국비 1조 1,821억원, 지방비 1조 3,612억원 소요

〈표 4〉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790억원	2,902억원	3,013억원	3,116억원	11,821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787억원	2,899억원	3,013억원	3,113억원	-
① 출생아 수 ¹⁾	300천명	312천명	324천명	335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²⁾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³⁾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3,213억원	3,341억원	3,470억원	3,588억원	13,612억원
계(1+2)	6,003억원	6,243억원	6,483억원	6,704억원	25,433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적용

2) 평균보조율 47%(서울 30%, 지방 50%)

3) 민간위탁(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조: 바우처 운영관리비(인건비 및 사업홍보비)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 부처 사업설명회(2021. 6. 21.) 이후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출생아 수를 저위추계로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예산 규모(4년간 총사업비)가 기존 2조 5,432억원에서 2조 914억원으로 감소

〈표 5〉 변경된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263억원	2,372억원	2,484억원	2,604억원	9,723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260억원	2,369억원	2,481억원	2,601억원	-
① 출생아 수 ¹⁾	243천명	255천명	267천명	280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2,602억원	2,731억원	2,859억원	2,999억원	11,191억원
계(1+2)	4,865억원	5,103억원	5,343억원	5,603억원	20,914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저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7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

-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로 평균 약 47%의 국고 보조
- 소요예산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금,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운영 관리비, 보건복지부의 사업관리 및 지원비로 구성

〈표 6〉 소요예산 산출근거

- 2022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2,790억원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근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2,787억원)+바우처 운영 관리비(2.5억원)+사업관리 및 지원(0.6억원))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 2,787억원
 - 200만원×30만명('22년 장래인구추계 중위)×47%(평균보조율) = 2,787억원
 - 보조율 평균 47%(서울 30%, 지방 50%)
 - 분담을 관련 지자체 협의 필요
 - 바우처 운영 관리비: 2.5억원
 - 인건비(4,600천원×3인×12개월 = 165백만원) 및 사업홍보 등 운영비(80백만원)
 (인건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 나급 단가 적용)
 (사회보장정보원 집행: 바우처 이용대상자에 대한 문자안내,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업추진비 및 자산 취득비 등)
 - 사업관리 및 지원: 0.6억원
 - (보건복지부 집행: 수용비, 여비, 업추비 등)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

□ 사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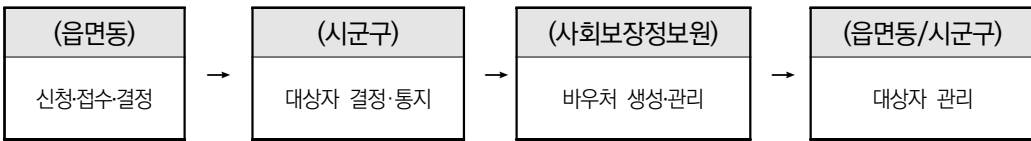
○ 주요 기관 역할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및 집행 방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 바우처 신청·접수·지원 결정 및 대상자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등 시스템 운영(바우처 생성·관리) 및 민원 응대

○ 전달체계

- (읍면동) 이용자의 신청·접수·결정
- (시군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대상자 정보를 카드사에 전송· 비용 지불 및 지급 정산 등의 바우처를 관리

[그림 1] 사업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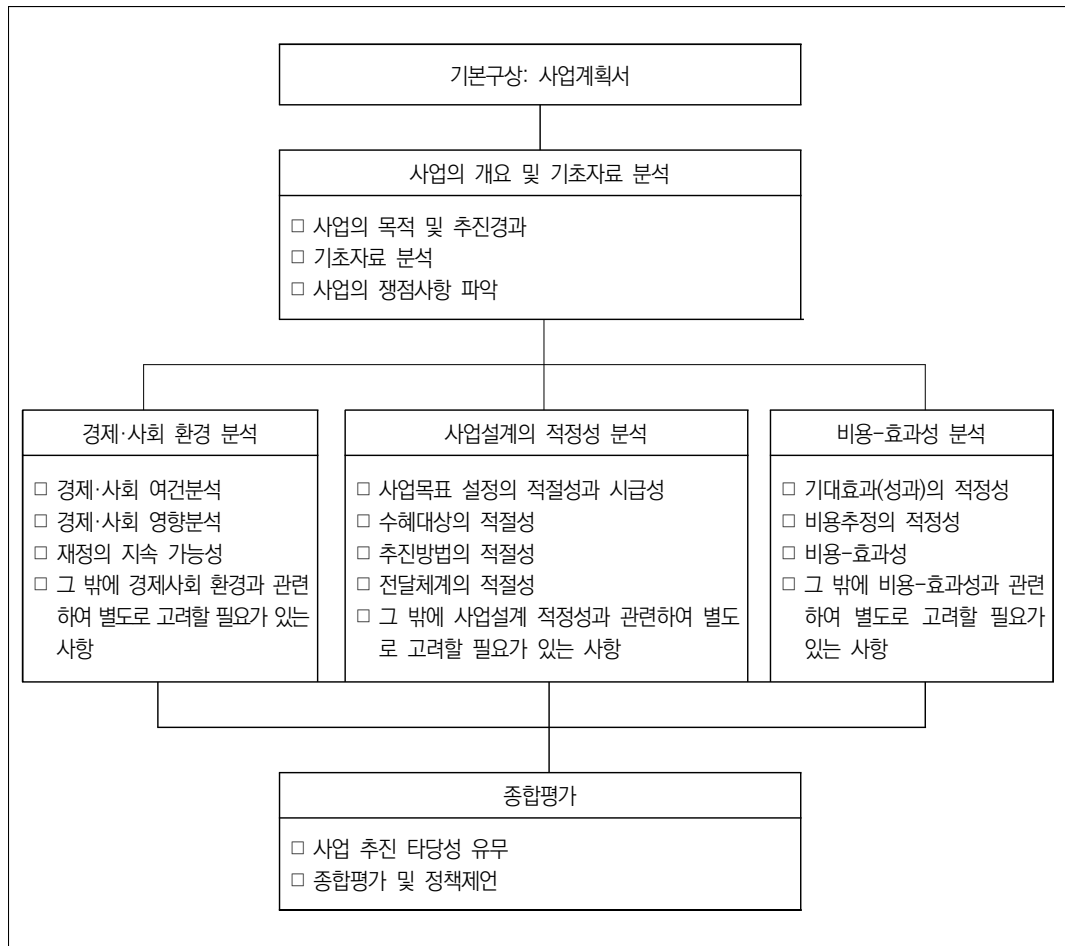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

- (이용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를 받은 임산부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추가 지급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유효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3.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종합평가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2]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II. 기초자료 분석

1.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었고 2005년 9월 1일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이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동 사업이 반영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확장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범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추진전략을 제시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은 첫 번째 전략인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 해당하며, 영역별 핵심 과제인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 진행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법률은 기존 법률 내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목표인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연관되는 법률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제시함
-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2. 기초자료 검토

□ 출산 현황

○ 출산율

-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생아 수는 총 27만 2,400명이며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0.84명임
-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첫째아 출산연령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0.97명)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최하위를 기록

- 한국의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1.28명)·전남(1.15명)·강원(1.04명) 순으로 높고, 서울(0.64명)·부산(0.75명) 순으로 낮음

○ 출산모(母)의 연령별 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

- 2020년 기준으로 30대 초반이 79.0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 42.3명, 20대 후반 30.6명

- 출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1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모든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에 공통적으로 작용함

○ 출산순위별 출생

- 2020년 기준으로 첫째아는 15만 4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 4천명(-8.5%) 감소, 둘째아는 9만 6천명, 셋째아 이상은 2만 3천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만 3천명(-11.7%), 3천명(-12.2%) 감소

- 출산 순위별 비증은 시점과 관계없이 첫째아가 항상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

- 200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는 2000년대 27만 1,843건을 기준으로 2005~2007년과 2009~2011년 구간의 소폭의 상승세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여성 미혼율

- 주된 출산연령대인 30~40대 미혼여성인구 수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의 출산지원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 지원, 청년 지원 등 생애단계 및 지원대상별로 다양하게 추진

- 동 사업의 목적인 출산·양육부담 완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은 '임신 및 출산지원'과 '육아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 비용 지원 방식 정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편지원과 차등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임신·출산 지원

〈표 7〉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임신·출산 지원)

구분	지원방식	보편 지원 (소득 무관)	선별 지원 (소득 차등, 특정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현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해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육아지원

〈표 8〉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육아 지원)

구분	지원방식	보편 지원 (소득 무관)	선별 지원 (소득 차등, 특정 대상)
육아 지원	현금	아동수당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시간제 보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자녀장려금 지급
	바우처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경감 및 감면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전기요금 감액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일·가정 양립 지원

〈표 9〉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일·가정 양립 지원)

구분	지원방식	보편 지원 (소득 무관)	선별 지원 (소득 차등, 특정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현금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감면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5.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건수 및 예산

-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사업은 총 2,283건으로, 생애단계별로 출산 789건, 육아 638건, 임신 437건 순이며, 출산지원정책이 임신, 출산, 육아 단계에 집중되어 지원
- 2020년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총 예산은 8,00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2020년 기준 3,793억원으로 출산단계에서의 총예산인 5,362억 원에서 70%를 차지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 2020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은 총 199건으로 육아 단계에 66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산 단계가 48건으로 많음
- 출산지원정책 예산규모는 3,960억원으로, 출산단계에서 2,584억의 규모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단계가 1,055억으로 큼
- 지원방법별로 구분하면, 서비스 및 교육홍보가 나란히 53건으로 지원방법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금이 4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 2020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지원 건수는 총 2,084건으로 출산 단계에 741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단계가 572건으로 많음
- 출산지원정책 예산규모는 4,046억원으로, 출산 단계에서 2,777억의 규모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단계가 1,034억으로 큼
- 지원방법별로 구분하면 현금이 592건으로 지원방법 중에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가 552건을 차지함

3. 유사사례 검토

□ 중앙정부

〈표 10〉 유사사업 비교(중앙정부)

구분	근거	내용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4조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후) 10만원 지급
보육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34조의3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 영유아가 속한 반(0~5세반)에 따라 보육료는 차이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있는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영아수당('22~)	「아동수당법」 개정안 제4조 제5항	아동수당 외에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월 50만원* 추가 지급 * 복지부(안):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15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정리함

□ 지방자치단체(출산지원금 지원정책)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과 동시에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2020년을 기준으로, 광역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시행 중(82.4%)이며, 기초는 226개 시군구 중 219개 시군구가 시행 중(96.9%)

○ 광역지방자치단체

- 2020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시행 중(82.4%). 서울, 경기, 전북 3개의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 출생순위별 지원은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 10개 지역이고, 둘째아는 13개, 셋째아 이상 14개 지역이 지원 중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는 2020년 기준 1,606억원으로, 2019년 1,100억원보다 46.0% 증가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20년을 기준으로 226개 시군구 중 2020년 96.9%(219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인천, 대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함
-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 177개, 둘째 204개, 셋째 215개, 넷째 이상 218개 지역으로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많으며, 최근 들어 지원대상이 첫째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는 2020년 2,215억원으로 2019년 기준 1,725억원 보다 28.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매년 20% 정도씩 증가함

□ 해외 사례

- 해외의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원하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국가들도 존재함

○ 지급방식

- 대부분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분할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함
- 싱가포르의 출산 후 18개월까지 총 5회에 나누어 분할지급을 하고 있으며, 지급 회차마다 지원금액 수준도 다름

- 룩셈부르크는 산전, 출산, 산후 단계로 나누어서 총 3회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각 단계마다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
- 리투아니아는 출생아당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만 한하여 0세부터 2세까지 월 €160씩 지급하며 수당적 성격의 분할금으로 지원
- 이탈리아는 출산지원금을 1년간 월마다 분할하여 지원
- 소득수준
 - 대부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하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체코, 폴란드, 아일랜드는 일정 소득수준 충족 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소득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가짐
- 출생순위
 - 출생순위 및 다태아 출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1명의 출생아의 지원 금액보다 더 높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4.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 경제사회 환경에 관한 주요 쟁점
 -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과의 중복문제
 - 중앙정부 사업 중에서 양육부담 경감이 목적인 아동수당 등의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영아수당 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 무엇보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유사성 및 중복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97%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 중
 - 중앙정부 개입의 적절성 여부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과 사업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중복되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

- 중앙정부 차원의 바우처 지원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와 더불어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과의 조정을 통해 지역적 편차를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구구조 및 출산율 변동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요소 변동의 위험성 검토
 - 본 사업의 경우 재정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타 유사한 법정지출의 확대가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사업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주요 쟁점

- 고소득층의 수혜대상 적절성 여부
 - 수혜대상자인 (예비)부모가 고소득층일 경우에도 여전히 바우처 지급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출생아에 대한 동일 지원의 적정성 여부
 -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가구의 추가적인 부담은 주로 출산용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
 - 현재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 출산지원금과의 조정이 불충분할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임
 - 그러나 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는 다자녀 출산에 따른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임
- 추진방법의 적절성
 - 현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방식으로서 바우처 지급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카드사용 모니터링 등 운영비, 경상비 등 행정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바우처의 사용범위
 - 바우처 사용의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용처 제한에 대한 정책설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
- 기존정책과의 정책조합성 검토

□ 비용-효과성에 관한 주요 쟁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가 양육비 부담 완화이며 사업의 기대효과로 출산율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설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과지표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 추가 발생 가능한 비용과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 변화 가능성

- 총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비용으로 전담 콜센터 운영, 윈스톱 창구 마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출생아 수 변화로 인한 총사업비 변화 가능성 존재

○ 사업의 효과성

- 본 사업의 목표인 출산 및 양육부담 개선 효과와 출산율 및 출산의향 개선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 금액의 적정성

- 바우처 지급액으로 책정된 200만원이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애 초기 의료서비스 및 양육비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
- 본 사업 외에 기존 양육비 지원정책과 영아수당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III. 경제사회 환경 분석

1. 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사회 문제 파악의 적절성

-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는 등 인구 구조의 악화로 인한 부양비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초저출산 문제의 지속적인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구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과의 중복 문제

-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사업과 신규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사업 목표와 수혜대상을 고려할 때 성격이 매우 유사한 사업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정책 및 다양한 현물서비스도 사업의 실질적 목표와 수혜대상이 유사한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정책과는 유사성이 매우 큼
 - 바우처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1년 내에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나누어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과는 실질적으로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함
-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성) 유사 중복사업으로 보다 주요하게 주목하여야 할 것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사업임
 - 동 사업은 현재 233개의 지자체(광역지자체 14개, 기초지자체 219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장려금과 직접적인 중복성을 가지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정책 중 재정지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출산축하금의 성격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적인 성격이 많음
 -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은 226개 지자체 중 103개 지자체(46%)가 1년 이상에 걸친 분할금의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초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이 인구유입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사함
 - 중앙정부 차원의 축하 바우처 사업의 도입과 함께 중복적인 지자체의 출산축하장려금은 조정 및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정부 개입의 적절성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이나 출산순위에 관계없는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함
 -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

산을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역 간 인구이동효과로 인해 출산을 제고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지급액 수준도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첫째아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적어 출산을 제고효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자체 출산지원금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출산지원금 정책이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 개입이 지역 간 편차와 출생순위 간 편차를 줄이지 못함

□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 경제성장 수준과 소득 수준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재정투자가 해외 국가와 비교하여 높지는 않은 편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현금성 수당이 발달하고 있는 해외 국가 사례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동 사업과 같은 현금성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직접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2. 경제사회 영향분석

□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

- 출산 직후 200만원의 축하 바우처 지급을 통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과 신규 도입되는 영아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정책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추가적 기여도가 작을 수 있음

□ 사회적 의견수렴의 충분성

- (예비 부모) 자녀 양육에 있어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7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물품 구입비용만 해도 4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적정금액에 있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지원대상인 만 0세에서 인식되는 적정금액이 47.8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종합하자면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지원 확대, 지원시기 및 지원방식 측면에서 예비 부모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 가능
- (지방자치단체) 2021년 2월 23일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2021년 6월 11일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영아수당, 첫 만남이용권) 지자체 정책 추진 협의회 제1차 회의 이후 후속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지자체 소요예산(’22년) 및 출산지원금 지급계획 조사’(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873, 2021. 7. 7. 및 3783, 2021. 9. 1.) 추진
 - 그러나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국비보조비율 설정과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이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협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국회 토론회(2021. 6. 10.)에서 아동 건강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을 고려한 생애초기 집중투자 및 부모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이 주요의견으로 제시됨

3. 재정의 지속가능성

□ 향후 재정부담 검토

- 영유아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출 소요액이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측면은 있으나,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법정지출의 수혜대상이 되는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단년도 재정부담은 전체 중앙정부 영유아 지원 부문의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전체 영유아지원부문 재정지출의 상승률(2019~2020년도) 약 12%를 감안할 때 재정부담의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음

□ 안정적 재원조달 가능성

-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정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 지방비 부담분이 자체 사업비의 축소로 상쇄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음

-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약 3,823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동 사업이 평균 보조율 약 47%를 가정하였을 때 2022년 지방비 부담예상액이 약 2,602억원임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강화로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 안전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순증함
 - 2022년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2단계 재정분권이 예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증가, 추가 세수실적으로 인한 지방교부세분 증가 등이 예상됨
-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 현재의 출산율 추세를 놓고 보았을 때,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출산장려금의 지급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소요가 증가하겠으나, 현재 통계청 인구 저위수준의 재정소요 전망에서 중위수준으로의 전망치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도 있음

IV.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계획상 사업목표의 명확성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을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만족도’로 제시할 뿐임
 - 사업목표의 명확화와 구체화 필요성
 - (1)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2)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개의 사업목적은 사업목표로 명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는 구체화된

- 사업목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사업목표-성과지표 간 위계는 비전과 미션을 고려하여 인과 경로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의 달성 가능성 측면을 검토
-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 지역 간 출산지원금 차등을 완화하고 지방의 출산지원금 정책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의도하면서도 출산지원금의 지역 간 차이 자체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지자체 출산지원정책과의 조정과 정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차등 완화라는 사업목적은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그 자체로는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중앙정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영아수당 및 지자체의 별도 장려금 및 수당성 지원금 등의 지원규모 전체를 합산하여 보았을 때,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기여하는 경제적 부담의 완화 부분이 적정인가 아니면 과다한가의 문제를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첫 번째 전략인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 해당하며, 영역별 핵심 과제인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 반영되어 있음
- 이에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수혜대상의 적절성

□ 수혜대상의 명확성

-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수혜대상은 전반적으로 볼 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명확하게 설정됨
- 다만 지원대상인 영유아의 직접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인을 영유아의 보호자로 정함

□ 수요에 대한 검토

- 동 사업은 출생아, 즉 출생아 보호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서 수요의 문제는 크지 않음
 - 자녀 양육에 있어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78.9%에 달하고 아동 출산 시 필요 물품 구입비용만 해도 4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어야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점에서 출산지원금 200만원의 지원은 수요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음
 - 지원 시기에 있어서는 양육수당 적정금액이 0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사용기한을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 외 수혜 가능성

- 동 사업은 사업의 수혜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업대상 외 수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도덕적 해이, 다자녀 가구, 고소득층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덕적 해이) 유흥·사행업소 등에 대한 제한 외에는 용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수당의 용도를 제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부모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그러나 사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구매에 바우처를 사용하더라도 대다수의 가구에서 연 200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에서 출산과 관련된 육아용품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출산

관련 물품구입비 금액 등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양육과 소비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양육부담을 경감한다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원됨에 따라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 가구의 수입유모차, 고급분유 등 사치재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효과나 혹은 이를 통한 출산을 제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에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수혜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

3. 추진방법의 적절성

□ 추진방법 설계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수혜대상이 보편적으로 설계된 것은 수혜대상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을 피하면서 고소득층에게도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계층의 한계점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바우처의 사용 용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구 소비선택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 추진주체 역할의 명확성

-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시군구 및 금융기관 등 추진주체와 추진체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함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조율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은 여전히 부족함
 - 동 사업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수당과 보육료 지원과 같은 서비스 제공의 중간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현금성 수당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아동수당에 준하는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이 일견 타당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사업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조정 필요성을 근거로 볼 때 아동수당에 대한 보조율보다는 낮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할 근거가 있다고 보임

□ 정책조합의 가능성

- 영유아라는 동일한 수혜대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 정책목표를 가진 가족정책과 출산정책이 겹치고 있는 실정
 - 동 사업은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과 동일한 수혜대상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학령기 아동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임
 -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가족정책 외에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정책 및 보육시책 등이 중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의 중복성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고 판단됨
-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취업모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지원이며, 보다 최근 들어서는 전업모들의 복지 욕구에도 매우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효과가 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으로서도 주요한 현금성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시계에서의 가구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기존 가족정책의 틀하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의 추가적 양육부담 완화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중앙과 지방의 책임과 역할을 잘 분담하여 가족정책과 출산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

4. 전달체계의 적절성

□ 전달체계의 명확성

-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명확히 수립되어 있음
- 다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과 시군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시 읍면동과 시군구 간 업무분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 접근의 용이성

- 동 사업은 지원방식이 바우처이나 유흥·사행업소 등에 대한 제한 외에는 용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수요자 접근은 대체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지원 신청 측면에서 수요자 접근과 관련한 전달체계가 유사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미신청이 발생한 바 있어, 동 사업 역시 미신청 가구의 미신청 사유와 특성을 분석하여 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집행기구의 적절성

- 집행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출생신고 장소인 읍면동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신청과 접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행기구의 적절성 측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 6월 11일 개최된 ‘지자체 재정부담 협의회 1차회의 결과 보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021. 6. 11.)에 따르면,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도입에 따른 추가인력, 전담콜센터, 출산·보육 관련 윈스톱 창구의 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었음
 - 이에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방안 마련이 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V. 비용 효과성 분석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기대효과의 명확성

-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동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의 명확성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동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 효과, 장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아동건강 개선 효과, 인적자본 축적 효과와 같은 정책의 결과(outcome) 혹은 성과(performance)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output)의 성격이 강함

- 동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

- 동 사업의 사업목표인 양육부담 완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일-가정 양립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하는 유배우자 출산율 제고로 식별할 수 있음

-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출산율 제고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온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과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특성상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간 인구이동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추상적으로 본다면 ‘만족’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성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는 엄밀한 측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대상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비전-미션-사업목적-사업목표-성과지표 간 위계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투입-산출-결과(성과)의 인과 경로라는 논리모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출산율 증가, 아동건강 발달, 인적자본 축적과 같이 효과 발생의 경로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한 변수를 그대로 단기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 사업의 효과 식별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성과지표의 설정, 측정에 있어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추계의 적절성

○ 분석 개요

-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라는 지원단가는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정한 405만원의 아동물품 구입비용에 비추어 본다면, 출산 직후 필요한 아동물품 구입에 따른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출산에 지원되는 금액은 산정된 200만원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 단가뿐 아니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양육비 분석에 있어 2019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

- 2019년 기준 0세 아동에게 월별 53.8만원, 총 645.6만원의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2019년의 양육비 지출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도 0세 아동의 평균적인 총양육비는 700만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 양육비 수준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본 사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출산·보육비 지원 정책만으로도 평균적인 가구의 0세 아동 보육비를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 아동 특성별 양육비 차이

- (성별)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출생순서) 첫째의 양육비용이 둘째나 셋째보다 20~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경제적 특성별 양육비 차이

-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매달 8.3만원을 더 지출

하며, 교육/보육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가구소득)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양육비용 차이는 월 평균 21.5만원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며, 교육/보육비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거주지역별 양육비 차이

- (도시/읍면) 양육비 지출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세부 지출항목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보육비를 2.5만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비수도권) 양육비 지출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세부 지출항목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비수도권에 비해 5.1만원 더 많으며, 비수도권에서 보건의료비와 보험료를 수도권보다 각각 1만원과 3.4만원 더 지출하고 있음

○ 회귀분석을 통한 양육비 결정요인 분석

- 아동의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함

○ 본 사업의 출산지원금은 양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와 반대로 평균 양육비 지출 자체가 적은 둘째아와 셋째아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많은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중복 및 과대 지급의 우려가 큼

□ 추가 발생가능 비용 검토

○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가능성

- 국비보조율 상향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는 총사업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자체로 국고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총사업비 구성의 변동 요인에 해당함

○ 차등보조율 적용의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경우 총사업비 자체와 국비-지방비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으로 볼 때 총사업비 자체에 대해서는 미미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율을 변화시킴

○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

- 전담 콜센터 운영, 출산·보육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이 사업비에 반영되는 경우 등 사업의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 변화

○ 정책효과의 내생성(endogeneity)

-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따른 출산율 제고효과가 사업대상자를 증가시킴에 따른 내생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하고 약 50%의 가입기를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합계출산율이 약 0.02~0.0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김미곤 외, 2019)에 따르면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상승 요인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예측오차 문제

-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할 수 있는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져 기존의 인구추계에 따라 상정된 총사업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

3. 비용 대비 효과성

□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효과

○ 분석자료

- 재정패널 1~12차 조사 자료

○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25%임을 고려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금액 중 50만원을 보육비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는 가구 예산에서 50만원의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

○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보육비 부담이 50만원 감소하면 가구의 다른 소비지출이 43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성년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 200만원 수준의 첫 만남 바우처는 약 2%p의 추가 출산 확률 증가, 최대 0.2명의 자녀 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러나 한계효과가 크지 않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지급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만남 바우처제도의 시행이 의미 있는 출산을 상생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추가 출산을 결정하거나 자녀 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중요한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음

-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정책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도입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도입 목적 달성과 더불어 어느 정도 추가 출산 확률 증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함

□ 인적자본 형성 효과

- 분석자료
 -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
- 한국형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 척도(K-ASQ):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 K-ASQ 각 척도의 평균 원점수와 비교했을 때 추정치의 크기가 평균 원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통하여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 행동평가척도(CBCL): 아동의 정서문제, 불안문제, 발달문제, 과잉행동
 - 출산지원금이 아동의 유아기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있음
 -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지원금의 정서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척도(REVT): 수용 어휘력, 표현 어휘력
 - (수용 어휘력)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낮은 소득분위에서 언어능력 향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표현 어휘력) 소득분위별로 추정하였을 때 아동에 대한 지출과 표현 어휘력 점수 간 양(+)의 상관성은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추정결과들은 아동에 대한 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성과 대비 비용

- 기존 양육비 지원정책과 영아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액이 과다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0세 아동의 월별 평균 양육비 지출이 53.8만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미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양육관련 공적이전지출로 충당되고 있음

〈표 11〉 0세 아동출산·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혜 현황

(단위: %, 만원, 명)

	출산장려금 (총액)	양육수당 (월)	아동수당 (월)	기타수당 (월)	보육료 지원(월)	육아휴직 급여(월)
수혜비율	0.61	0.92	0.93	0.03	0.06	0.08
수혜금액 (수혜자만)	82.5	20	10	57.8	42.6	95.2
수혜금액 (비수혜자 포함)	50.2	18.4	9.3	1.8	2.5	7.8
표본아동 수	291	291	291	291	291	291

주: 1. 2019년 5월 이전 출생한 0세 아동으로 한정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출산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총양육비 지출, 특히 보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보육비의 증가는 대체적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1만원의 추가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이 보육비에 미치는 한계적인 효과(marginal effects)는 총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할 수 있어, 지자체로부터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추가적으로 본 사업의 바우처를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금이 양육비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보다 작아질 수 있음

□ 비용-효과적 대안 검토

-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이 미치는 한계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수혜하고 있는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기대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V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77.3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82.8점, 비용-효과성 분석은 78.3점으로,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 도출

〈표 12〉 평가자별 종합의견

구 분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종합 집계
A. 원안 추진			√		√				
B. 대안 추진	√	√		√		√	√	√	√
C. 사업재기획									

- 사업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

〈표 13〉 분과위 총평

1. 경제·사회 환경 분석

-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 국고보조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를 지속하여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
 - 이해관계주체(기초·광역지자체)와 구체적인 사업설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2.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바우처 활용조건*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
 - * 바우처 사용기한(1년), 잔여금액 소멸여부, 양육자의 책임성 확보방안 등
- 추가적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적정 지원대상·지원금액 등을 고민할 필요
 -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검토, 유사 출산지원등과의 통합조정여부 검토 등

3. 비용-효과성 분석

- 사업목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
 - * 아동의 발달상태 관련 지표, 가구의 경제여건 관련 지표, 부모의 삶의 만족도, 육아휴직 활용도 등
- ※ 추가적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정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검토

2. 정책제언

- 유사사업 조정과 국고보조율 설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의 조정 문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과 중복성이 있어 동 사업의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의 조정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조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조정 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율)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피력된 바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과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가 더욱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바우처 사용조건의 보완
 - (바우처 유효기간과 미사용금액의 문제)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데 미사용금액이 발생할 경우 잔여금액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바우처 사용에 따른 양육자 책임성 문제)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양육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육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목표와 밀접한 성과지표 설정
 - 동 사업의 사업목적[사업목표]은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설정하면서도 성과지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만족도’만 제시하고 있어,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사업추진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출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사업내용의 보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혹은 시행 예정인 유사 출산지원정책 및 가족정책 중에서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한 유사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의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사업, 육아휴직 제도를 출산지원정책 및 가족정책의 일환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영아수당 역시 시행 예정에 있는 상황임
- 동 사업의 효과성을 비용-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효과와 추가적인 출산지원정책의 한계효과 체감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 III 장 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 IV 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 V 장 비용-효과성 분석

제 VI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I.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2018년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에서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서는 출산정책의 목표를 출산을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 양육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용·시간·돌봄 지원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표 I-1〉). 이러한 방향성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¹⁾는 비용 지원 사업에 해당하며 초기 육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초기 양육비용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계획에서 ‘아동가구의 소득 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추진 과제로,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영아기 집중 투자로 첫 만남 꾸러미가 언급된다. 첫 만남 꾸러미의 내용은 기존의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으로 확대 및 개편하는 것으로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계획을 추진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법적근거로 제시하면서 1조 1,821억원의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21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동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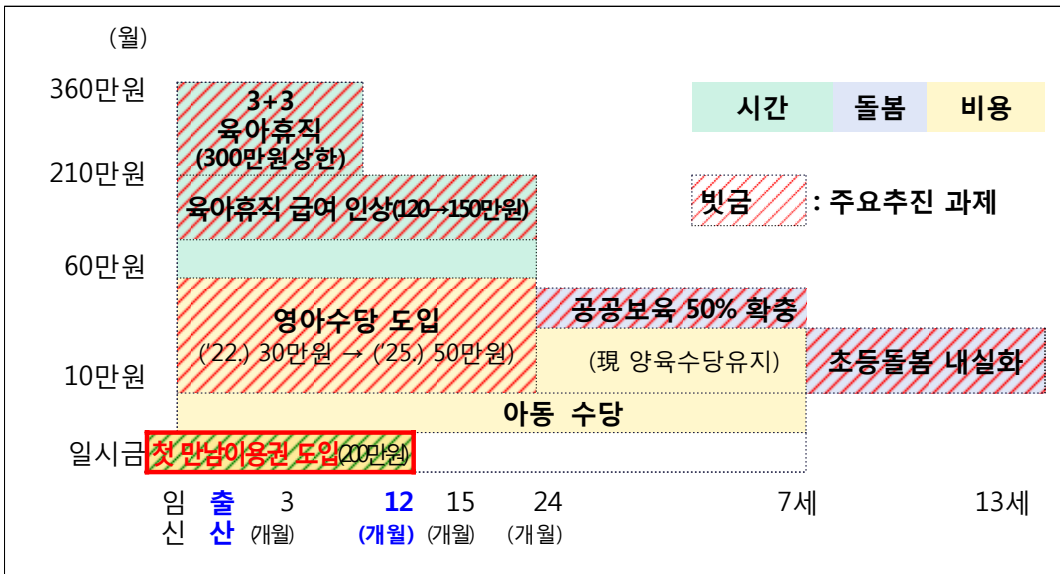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명칭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사업설명회(2021. 6. 21.) 이후 본 사업명은 ‘첫 만남 이용권’으로 변경되었다. 본 보고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초 요구서를 기준으로 동 사업을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으로 지칭하며,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용어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의미한다.

〈표 1-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구분	현황	문제점	기본계획(안)	기대효과
시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도입('88, 무급), 급여('01) 도입·확대 ▶ 근로시간 단축 도입('07)·확대 ▶ 가족돌봄휴직·휴가 휴직('12)·휴가('20)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기반 낮은 소득대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화되지 못한 활용 (임금근로자 한정) ■ 기업규모별 활용 격차 ■ 남성의 낮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보장 ▶ 육아휴직 3+3 ▶ 영아수당 도입 → 부모의 0~1세 돌봄시간에 대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이용가능한 육아휴직으로 보편화,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 확보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도입('09)·확대('13) → 가정양육 비용지원 ▶ 아동수당 도입('18)·확대('19) → 경제적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분명한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성, 비정합성으로 효율성 저조 → 아동수당 중심 효율적 제도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수당 도입 → 0~1세 보육료·양육수당 통합 ▶ 첫 만남 이용권 도입 → 신생아 대상 바우처로 초기 양육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초기 육아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가정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육 중심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미설치 지역 다수 ■ 이용가능한 서비스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 연간 200개반 확대 ▶ 아이돌보미 지원 강화 ▶ 지역단위 돌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육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확충
	시설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양적 확대 → 국공립 40%(~'21년) ▶ 무상보육 시행('12, '13) → 보육의 사회화 ▶ 보육체계개편('20. 3) → 기본·연장보육 구분,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민간인프라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의 이용 불편 ■ 낮은 서비스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지속 확충 → 국공립 50%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수요 반영, 연장보육 강화 등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제출자료

[그림 1-1] 시간, 돌봄서비스, 비용측면에서 제도 개선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2.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통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주요 목적을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사업의 기대효과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기대효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외 자녀 보육 관련 서비스, 지역 상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신·출생 이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과제로 ‘아동 출생 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이 반영된 것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표 1-2〉 사업의 추진근거

	내 용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영아기 집중투자 (첫 만남 꾸러미) 기존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2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60만 →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사항) * 다태아 100만 → 140만원, 분만취약지는 20만원 추가지원 -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200만원* 신규 지급 * 지자체 보조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도입과정 지속 협의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p. 80.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근거로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서영석 등 21인의 의원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 만남 바우처를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현재(2021년 7월)는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신규사업에 해당하며,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규모에 의하여 2021년 4월 30일 2021년 1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부처 사업설명회 진행 및 질의사항 요청 및 회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비슷한 시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신청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에 동 사업의 2022년 소요예산인 2,260억원(국비)을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는 재정부담 보조사업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²⁾는 보조율 조정(기준: 30(서울)/50(서울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법률 제17892호)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1항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외 지역) → 조정: 50(서울)/70(서울 외))을 중점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에 202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인 행복e음의 과제로 포함되어 개발 추진을 협의하였다.

2021년 6월에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17개의 시·도 회의를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표 1-3〉 사업의 추진경위

일시	세부내용
2020.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 반영
2021. 0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첫 만남 이용권 재량지급규정) 발의(서영석 의원), 소위 계류 중 *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원 대상 대면 설명 지속 실시 등 근거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노력('20. 6.)
2021. 0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2021. 04.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 신청
2021. 05.	▲(기재부) '22년 2,260억원(국비) 반영한 부처안 제출(5. 27.) ▲(행안부) 지방재정부담 보조사업 협의 요청(5. 12. 복지부) → 지방재정부담심의회(총리소속) 보조율 조정(기존30/50→조정50/70) 중점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5. 28. 행안부)
2021. 05.	'2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업(행복e음)의 과제로 포함하여 개발추진 협의 완료(85백만원)
2021. 06.	지자체 의견 수렴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 마련 위한 17개 시·도 회의 추진

자료: 사업 추진경위에 대한 부처의 답변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하여 작성

나. 사업의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단위의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표 1-4〉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 강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금액 및 방식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지급
지급방식	지역화폐 등 지급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 근거 규정 반영 추진* * 조항 신설(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4항 신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처	유흥업소·사행 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일(결정 통지)로부터 1년까지 사용
전달체계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 → (시군구) 대상자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6.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중위³⁾ 수준으로 바우처 지원대상인 출생아 수를 예측하여,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본 사업은 2022년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며, 향후 4년(2022~2025년)간의 재정지출 총액은 2조 5,433억원으로 국비 1조 1,821억원, 지방비 1조 3,612억원이 소요된다.

3)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수준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처 사업설명회(2021. 6. 21.) 이후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출생아 수를 저위추계로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이에 따르면 예산 규모(4년간 총사업비)가 기존 2조 5,432억원에서 2조 914억원으로 감소한다.

〈표 I-5〉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790억원	2,902억원	3,013억원	3,116억원	11,821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787억원	2,899억원	3,013억원	3,113억원	-
① 출생아 수 ¹⁾	300천명	312천명	324천명	335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²⁾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³⁾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3,213억원	3,341억원	3,470억원	3,588억원	13,612억원
계(1+2)	6,003억원	6,243억원	6,483억원	6,704억원	25,433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적용

2) 평균보조율 47%(서울 30%, 지방 50%)

3) 민간위탁(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조: 바우처 운영관리비(인건비 및 사업홍보비)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재원분담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로 평균 약 47%의 국고를 보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는데, 재원분담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요예산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금,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운영 관리비, 보건복지부의 사업관리 및 지원비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표 I-6〉과 같다.

변경된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263억원	2,372억원	2,484억원	2,604억원	9,723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260억원	2,369억원	2,481억원	2,601억원	-
① 출생아 수 ¹⁾	243천명	255천명	267천명	280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2,602억원	2,731억원	2,859억원	2,999억원	11,191억원
계(1+2)	4,865억원	5,103억원	5,343억원	5,603억원	20,914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저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7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표 1-6〉 소요예산 산출근거

- 2022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2,790억원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근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2,787억원)+바우처 운영 관리비(2.5억원)+사업관리 및 지원(0.6억원))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 2,787억원
 - 2백만원×30만명('22년 장래인구추계 중위)×약 47%(평균보조율)=2,787억원
 - 보조율 평균 약 47%(서울 30%, 지방 50%)
 - 분담을 관련 지자체 협의 필요
 - 바우처 운영 관리비: 2.5억원
 - 인건비(4,600천원×3인×12개월=165백만원) 및 사업홍보 등 운영비(80백만원)
 (인건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 나급 단가 적용)
 (사회보장정보원 집행: 바우처 이용대상자에 대한 문자안내,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업추진비 및 자산 취득비 등)
 - 사업관리 및 지원: 0.6억원
 - (보건복지부 집행: 수송비, 여비, 업추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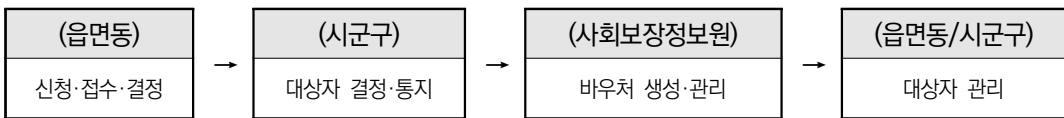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

다. 사업의 추진체계

동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집행 방안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의 신청·접수·지원을 결정하며, 대상자를 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e음 등 시스템 운영(바우처 생성·관리),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달체계는 읍면동에서 이용자의 신청·접수·결정을 하여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결정 및 통지를 한다. 그 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를 생성 및 관리를 하고,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관리한다.

[그림 1-2]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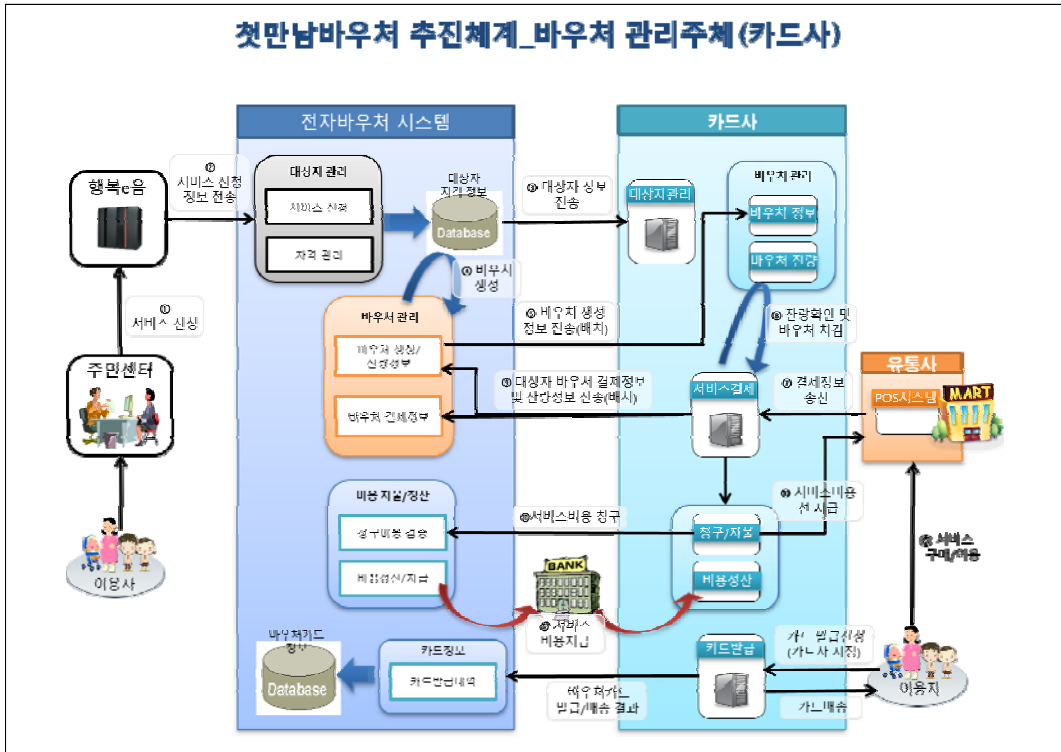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

이용자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를 받은 임산부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

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시군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를 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 생성 및 대상자 정보를 카드사에 전송, 비용 지불 및 지급, 정산 등의 바우처를 관리한다.

[그림 1-3]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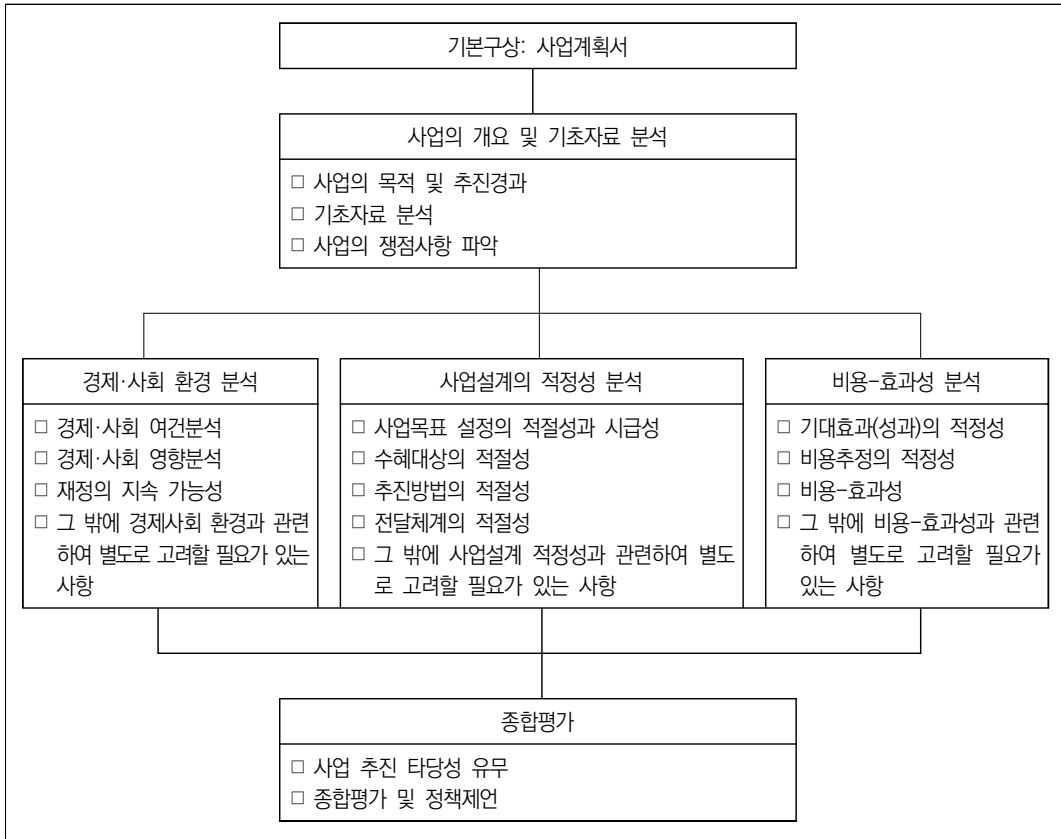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부처 질의사항 답변자료」, 제출자료

3.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본 조사에서는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종합평가 절차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4]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통보」(타당성심사과-337, 2021. 4. 30.)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 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이며, 이를 토대로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의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조사 대상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 경위,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본 사업의 기초자료 분석은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상위계획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동 사업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초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조사 쟁점이 도출되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치적 여건을 부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되는 조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설계의 적정성이나 비용-효과성 추정에 대한 분석은 기존 자료 및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로부터 송부되는 자료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기초자료 생산이 어려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자료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며, 사업수행 주체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및 사업부문별 표준지침, 각종 고시자료와 함께 사업수행주체로부터 송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2) 경제·사회 환경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 항목에서는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문제가 적절히 파악되었는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사한 내용의 민간·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업이 존재하는지, 정부의 개입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대한 변동 위험성을 검토한다.

3)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항목에서는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정부의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토대로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혜대상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업목표·수혜대상을 고려하여 추진 방법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사업추진 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었는지, 동일한 분야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추진방법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수요자 접근이 용이한 전달체계가 구성되었는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전달체계의 적절성을 분석한다.

4) 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에서는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성을 분석한다.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지,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또한 비용추계가 적절한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을 포함했는지,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을 검토하여 비용추정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과성, 성과 대비 비용의 적정성, 제시된 사업 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 등을 검토하여 비용-효과성을 분석한다.

5)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종합평가에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업의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아울러 종합결론에 대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조사의 한계점과 향후 본 조사대상 사업의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사항을 제언한다.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

가. 상위계획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었고 2005년 9월 1일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동 사업이 반영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 틀을 구축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국가책임의 보육 실현, 임신 및 출산 지원의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2011~), 무상보육 실시(2013~) 등이 반영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 및 비혼의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서 일자리 및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등의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반영되었다. 20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의 마련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전제적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가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확장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범위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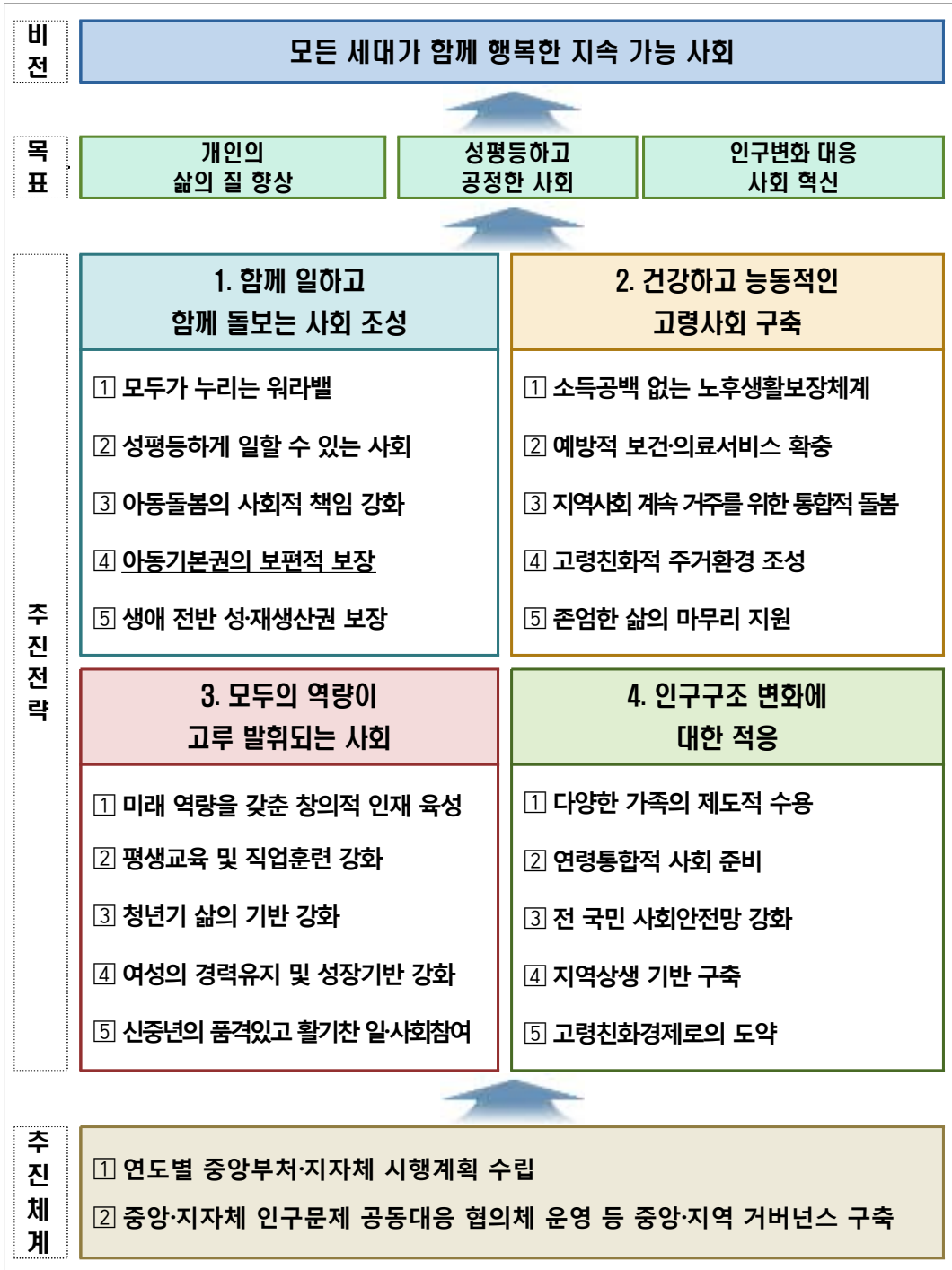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의 개개인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네 가지의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은 첫 번째 전략인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 해당하며, 영역별 핵심 과제인 ‘4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 반영되어 있다.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서는 기존의 가족중심의 정책이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아동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아동을 개별적인 권리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인식하고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아기 집중투자가 제시되면서 ‘첫 만남 꾸러미’가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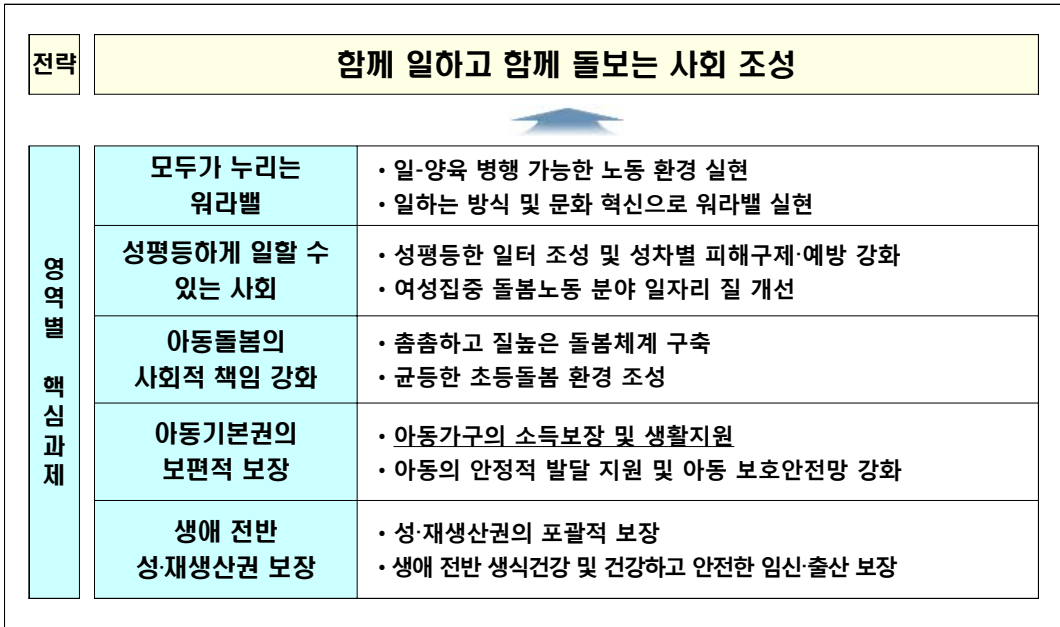
‘첫 만남 꾸러미’는 기존의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으로 확대 및 개편(2022년~)하는 계획이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상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림 11-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p. 38.

[그림 11-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영역별 핵심 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12., p. 48.

나. 관련 법률 검토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 진행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법률은 기존 법률 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목표인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연관되는 법률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경제적 부담의 경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항목은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항에 해당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등 20인, 2021. 3. 17.)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1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서영석 의원 등 20인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 최근에는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200만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대상·방법·시기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2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T1Y0J3K1H1J1I6I3U5B4T2N1I3G1, 검색일자: 2021. 7. 12.

나) 진행 현황

서영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3)」은 2021년 3월 17일 발의되어,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4월 26일에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계류 중인 상태이다.

다)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2021. 6.) 내용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소위 주요심사 내용(2021. 5. 21.)
 -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칠 필요
- 검토의견
 -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첫째,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협조 필요
 - 둘째, 각 지자체별로 실시 중인 출산지원금 정책과 유사하므로, 지원체계의 연계·조정·통합 방안 논의 필요
 - 셋째, 지급대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수정의견(부칙: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반영)
 - 시행일 조정
(개정안) 공포한 날 → (수정의견) 2022년 1월 1일
 - 적용례 신설
(신 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의견
 -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20. 12. 15.)된 것으로, 2022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다만 2022년 이후 출생아동에 대한 첫 만남 이용권 안정적 지급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변경 필요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2021. 6.)」, 제출자료

2. 기초자료 검토

가. 출산 현황

1) 출산율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출생아 수는 총 27만 2,4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9년 출생아 수 30만 2,676명에 비하여 3만 276명 감소(10% 감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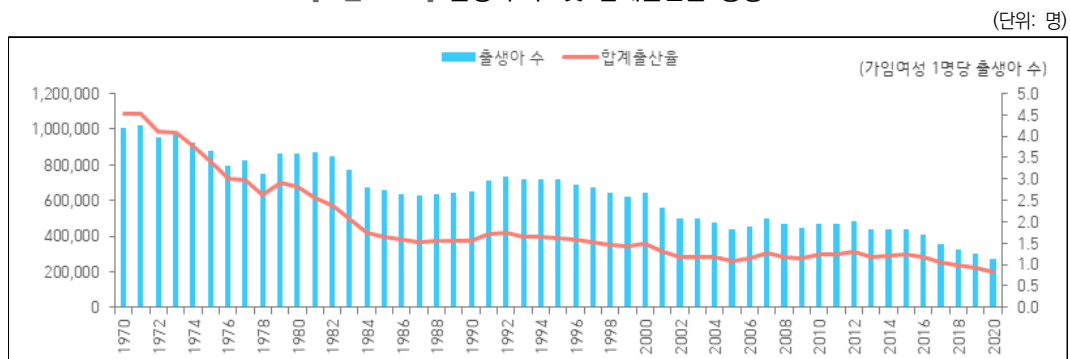
수준이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한 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가임기간, 만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2020년 기준 0.84명으로 2019년보다 0.07명 감소(8.5% 감소)하였으며, 인구 1천명에 대한 1년 동안의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2020년 기준 5.3명으로 2019년보다 0.6명 감소(10.2% 감소)하였다. 지난 50년 동안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을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을 기점으로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현재(2020년 기준)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II-1〉 출생아 수 및 출산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증감률(%)
출생아 수 (천명)	471.3	484.6	436.5	435.5	438.4	406.2	357.8	326.8	302.7	272.4	-30.3	-10%
합계출산율 (여성 1명당 명)	1.24	1.23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08	-8.5%
조출생률 (인구 1천명당 명)	9.4	9.6	8.6	8.6	8.6	7.9	7.0	6.4	5.9	5.3	-0.6	-10.2%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통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2011~2020)」.

[그림 II-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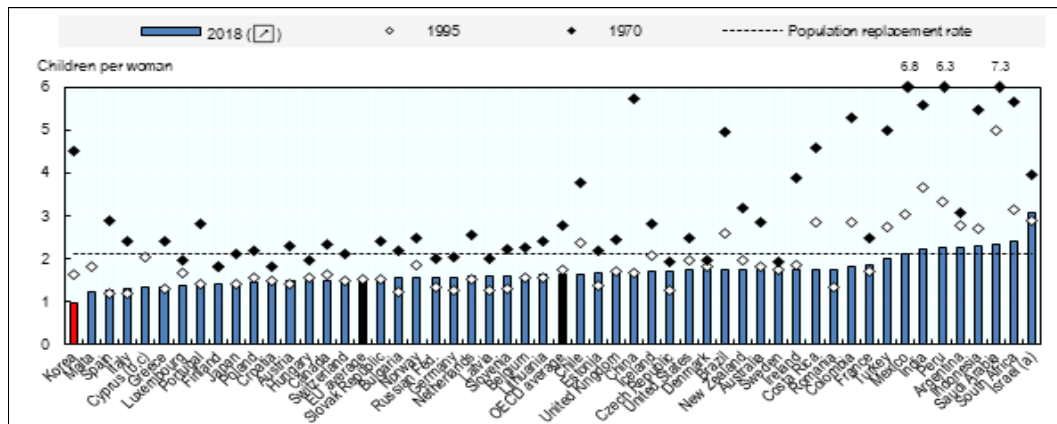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통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1970~2020)」.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전반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당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8명이지만 합계출산율 최대 7.3명, 최소 1.9명으로 국가 간 편차가 컸다. 이후 1995년에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합계출산율 최대 5명, 최소 1.2명으로 그 편차가 점차 좁혀져 갔으며, 합계출산율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로 가장 최근인 2018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며, 최대 3.1명 최소 0.97명으로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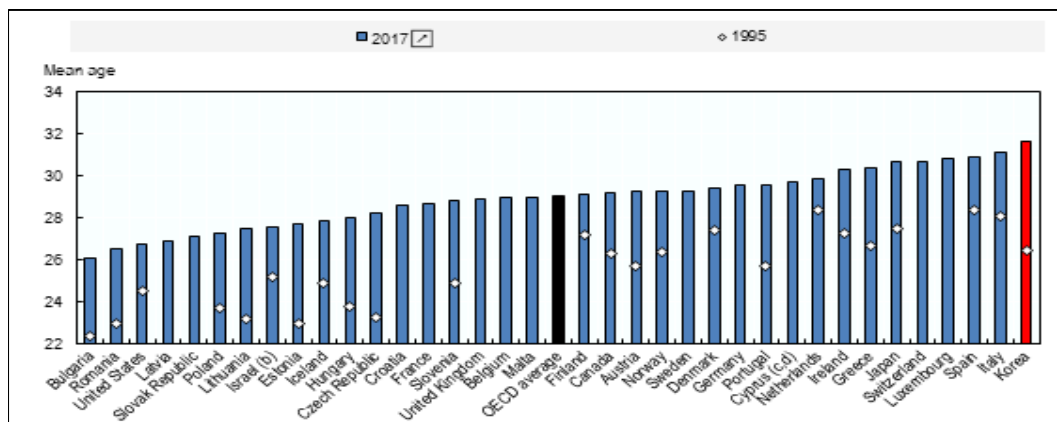
[그림 11-4] OECD 합계출산율 동향



자료: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rates(2018),"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자: 2021. 7. 14.

또한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연령 동향은 1995년 기준 OECD 평균 25.6세로, 최대 연령은 28.4세, 최소 연령은 22.4세이다. 이후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연령의 평균은 29.1세로, 최대 연령은 31.6세, 최소 연령은 26.1세로 첫째아 출산연령의 평균 연령이 20년 동안 약 3.5세 상승하였다.

[그림 11-5] OECD 첫째아 출산연령 동향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2017),"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자: 2021. 7. 14.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첫째아 출산연령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0.97명)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며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첫째아 출산연령의 평균 29.1세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36.1세로 가장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18) 및 첫째아 출산연령(2017)

(단위: 가입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세)

국가	합계 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국가	합계 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국가	합계 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이스라엘	3.09	27.6	영국	1.68	28.9	헝가리	1.49	28.0
멕시코	2.13	-	에스토니아	1.67	27.7	오스트리아	1.48	29.3
터키	1.99	-	칠레	1.65	-	폴란드	1.44	27.3
프랑스	1.84	28.7	리투아니아	1.63	27.5	일본	1.42	30.7
콜롬비아	1.81	-	벨기에	1.61	29.0	핀란드	1.41	29.1
아일랜드	1.75	30.3	슬로베니아	1.61	28.8	포르투갈	1.41	29.6
스웨덴	1.75	29.3	라트비아	1.60	26.9	룩셈부르크	1.38	30.8
호주	1.74	-	네덜란드	1.59	29.9	그리스	1.35	30.4
뉴질랜드	1.74	-	독일	1.57	29.6	이탈리아	1.29	31.1
덴마크	1.73	29.4	노르웨이	1.56	29.3	스페인	1.26	30.9
미국	1.73	26.8	슬로바키아	1.54	27.1	한국	0.98	31.6
체코	1.71	28.2	스위스	1.52	30.7	OECD 평균	1.63	29.1
아이슬란드	1.71	27.9	캐나다	1.50	29.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rates 2018;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2017),"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검색일자: 2021. 7. 14.

한국의 시도별 출생을 비교하자면 합계출산율은 세종(1.28명)·전남(1.15명)·강원(1.04명) 순으로 높고, 서울(0.64명)·부산(0.75명) 순으로 낮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전년 보다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대구(-13.3%)·세종(-13.1%)·인천(-11.8%) 순으로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는 경기(7만 8천 명)·서울(4만 7천 명) 순으로 많으나,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고, 대구(-15.3%)·인천(-13.3%)·경남(-12.5%) 순으로 감소하였다.

〈표 II-3〉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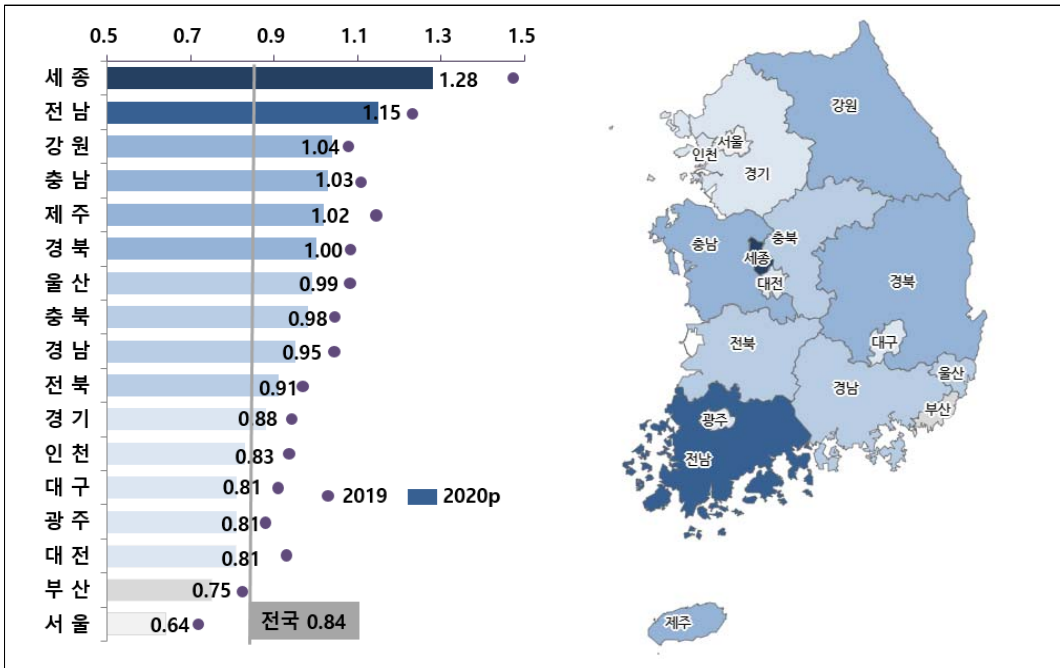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2019	2020p	증감	증감률	2019	2020p	증감	증감률
전 국	302.7	272.4	-30.3	-10.0	0.92	0.84	-0.08	-8.8
특·광역시	130.6	114.6	-16.0	-12.2	0.82	0.74	-0.08	-6.1
서울	53.7	47.4	-6.2	-11.6	0.72	0.64	-0.08	-10.5
부산	17.0	15.1	-2.0	-11.6	0.83	0.75	-0.08	-9.6
대구	13.2	11.2	-2.0	-15.3	0.93	0.81	-0.12	-13.3
인천	18.5	16.0	-2.5	-13.3	0.94	0.83	-0.11	-11.8
광주	8.4	7.3	-1.0	-12.5	0.91	0.81	-0.1	-11.2
대전	8.4	7.5	-0.9	-11.1	0.88	0.81	-0.07	-8.8
울산	7.5	6.6	-0.9	-12.1	1.08	0.99	-0.09	-9.0
세종	3.8	3.5	-0.3	-9.1	1.47	1.28	-0.19	-13.1
도 지역	172.1	157.8	-14.3	-8.3	1.01	0.94	-0.07	-5.8
경기	83.2	77.8	-5.4	-6.5	0.94	0.88	-0.06	-6.9
강원	8.3	7.8	-0.4	-5.4	1.08	1.04	-0.04	-4.2
충북	9.3	8.6	-0.7	-7.8	1.05	0.98	-0.07	-6.4
충남	13.2	11.9	-1.3	-9.7	1.11	1.03	-0.08	-7.5
전북	9.0	8.2	-0.8	-8.9	0.97	0.91	-0.06	-6.3
전남	10.8	9.7	-1.1	-10.1	1.23	1.15	-0.08	-7.1
경북	14.5	12.9	-1.6	-11.0	1.09	1.00	-0.09	-7.8
경남	19.3	16.8	-2.4	-12.5	1.05	0.95	-0.1	-9.6
제주	4.5	4.0	-0.5	-11.4	1.15	1.02	-0.13	-10.9

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1.

[그림 II-6] 시도별 합계 출산율 비교

(단위: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1.

2) 출산모(母)의 연령별 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

출산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시점과 관계없이 25~39세 사이의 출산율이 모든 연령대의 평균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30대 초반(30~34세) 대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여 준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현재 2020년까지의 동향은 15세부터 34세까지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2017년 이후 35세부터 39세까지의 출산율은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소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20년 기준으로는 30대 초반이 79.0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2.3명, 20대 후반이 30.6명 순이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출산율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30대 초반(-7.2명), 20대 후반(-5.1명) 순으로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표 II-4〉 출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증감률
15~19세	1.8	1.8	1.7	1.6	1.4	1.3	1.0	0.9	0.8	0.7	-0.1	-13.0
20~24세	16.4	16.0	14.0	13.1	12.5	11.5	9.6	8.2	7.1	6.1	-1.0	-14.0
25~29세	78.4	77.4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6	-5.1	-14.0
30~34세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91.4	86.2	79.0	-7.2	-8.0
35~39세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2.3	-2.7	-6.0
40~44세	4.6	4.9	4.8	5.2	5.6	5.9	6.0	6.4	7.0	7.1	0.1	1.0
45~49세	0.2	0.2	0.1	0.1	0.2	0.2	0.2	0.2	0.2	0.2	0.0	0.0

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1.

출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1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모든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첫째아는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 순이다. 첫째·둘째·셋째아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1세 상승하였다. 또한 출산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 초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30대 초반 출산모의 출생아 수는 1만 2천명 감소하였고, 30대 후반 출산모의 출생아 수도 9천명 감소하였다. 반면 고령(35세 이상)의 출산모 비중은 33.8%로 전년보다 0.4%p 증가하였다.

〈표 II-5〉 출산모의 평균 출산연령 및 연령별 출생아 수

(단위: 세, 천 명,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평균 출산 연령	계 ¹⁾	31.4	31.6	31.8	32.0	32.2	32.4	32.6	32.8	33.0	33.1	0.1
	첫째아	30.2	30.5	30.7	31.0	31.2	31.4	31.6	31.9	32.2	32.3	0.1
	둘째아	32.2	32.4	32.6	32.8	33.0	33.2	33.4	33.6	33.8	33.9	0.1
	셋째아	34.1	34.2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0.1
	넷째아 이상	35.9	35.9	35.9	35.9	35.9	36.1	36.1	36.7	36.4	36.5	0.1
출생아 수	계 ²⁾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4	-30.3
	19세 이하	3.0	2.9	2.8	2.5	2.2	1.9	1.5	1.3	1.1	0.9	-0.2
	20~24세	24.6	24.6	22.1	21.2	20.5	19.1	15.8	13.3	11.3	9.6	-1.7
	25~29세	137.0	127.2	102.8	96.2	94.6	85.0	74.0	65.0	57.8	50.6	-7.2
	30~34세	221.4	239.2	220.3	221.1	216.3	193.0	161.0	143.1	131.3	119.0	-12.3
	35~39세	74.2	79.0	77.2	82.2	92.1	94.3	92.6	91.1	87.3	78.3	-8.9
	40~44세	10.1	11.1	10.7	11.5	12.1	12.3	12.2	12.4	13.2	13.5	0.2
	45세 이상	0.5	0.4	0.3	0.3	0.3	0.4	0.4	0.4	0.4	0.3	-0.1

〈표 II-5〉의 계속

(단위: 세, 천 명,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 ¹⁾	18.0	18.7	20.2	21.6	23.9	26.4	29.4	31.8	33.4	33.8	0.4

주: 1) 모의 연령 미상 제외
2) 모의 연령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1.

3) 출산 순위별 출생

201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전체 출생아 수는 2016년대까지 40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들어서 30만명 대, 그리고 현재 2020년 20만명 대로 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마찬가지로 출산순위별로도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는 첫째아는 15만 4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 4천명(-8.5%) 감소하였으며, 둘째아는 9만 6천명, 셋째아 이상은 2만 3천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만 3천명(-11.7%), 3천명(-12.2%) 감소하였다.

〈표 II-6〉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	증감률
전 체 ¹⁾	470.2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4	-30.3	-10.0
첫째아	235.5	239.6	248.9	224.8	225.4	228.6	212.9	187.9	176.9	168.5	154.1	-14.4	-8.5
둘째아	181.8	179.0	184.0	165.7	165.3	166.1	152.7	133.9	119.7	108.4	95.7	-12.7	-11.7
셋째아 이상	49.9	51.6	50.6	45.2	43.7	42.4	39.6	35.0	28.2	25.7	22.5	-3.1	-12.2

주: 1) 출산 순위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1.

출산 순위별 비중은 시점과 관계없이 첫째아가 항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아는 201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둘째아와 셋째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흐름에 있다. 2020년 기준으로는 첫째아의 비중은 56.6%로 전년보다 0.9%p 증가하였으며, 둘째아의 비중은 35.1%로 전년보다 0.7%p 감소하였고,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8.3%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다.

〈표 II-7〉 출산 순위별 비중

(단위: %, %p)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증감
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첫째아	50.4	51.0	51.5	51.6	51.9	52.3	52.5	52.7	54.5	55.7	56.6	0.9
둘째아	38.9	38.1	38.1	38.0	38.1	38.0	37.7	37.5	36.9	35.8	35.1	-0.7
셋째아 이상	10.7	11.0	10.5	10.4	10.1	9.7	9.8	9.8	8.7	8.5	8.3	-0.2

주: 1) 출산 순위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1.

4)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

200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는 2000년대 27만 1,843건을 기준으로 2005~2007년과 2009~2011년 구간의 소폭의 상승세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이후로는 혼인 건수가 10만건 대로 돌입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는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는 16만 6,990건이다.

〈표 II-8〉 초혼부부의 혼인 건수(200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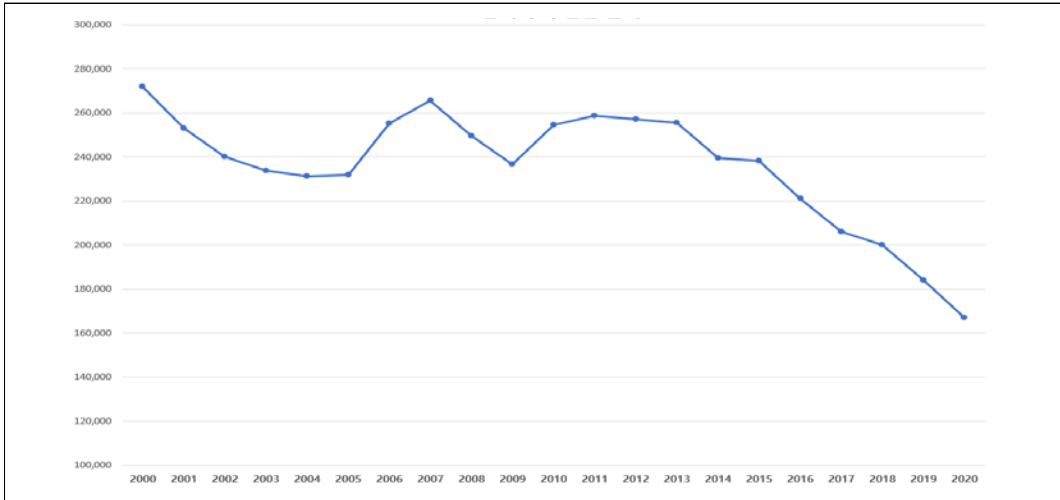
(단위: 건수)

연도	건수	연도	건수
2000	271,843	2011	258,637
2001	252,931	2012	257,003
2002	239,977	2013	255,554
2003	233,854	2014	239,427
2004	231,257	2015	238,275
2005	232,048	2016	221,143
2006	255,197	2017	206,095
2007	265,530	2018	199,997
2008	249,425	2019	183,962
2009	236,677	2020	166,990
2010	254,630		

자료: 통계청, 「초혼부부의 혼인(2000~2020)」.

[그림 11-7] 초혼부부의 혼인건수

(단위: 건 수)



자료: 통계청, 「초혼부부의 혼인(2000~2020)」.

5) 여성 미혼율

2015년 기준 연령별로 여성의 미혼율은 20~24세 97%(152만 4,989명), 25~29세 77%(111만 7,085명), 30~34세 38%(65만 8,748명), 35~39세 19%(35만 5,681명), 40세~44세 11%(23만 4,941명), 45~49세 6%(13만 4,677명)이다. 주된 출산연령대인 30~40대 미혼 여성인구 수의 흐름을 보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중에서 2000년대를 기점으로 5년을 단위로 대략 30만명 정도씩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는 30~40대 미혼 인구 수 100만명 대로 진입하였다.

〈표 11-9〉 여성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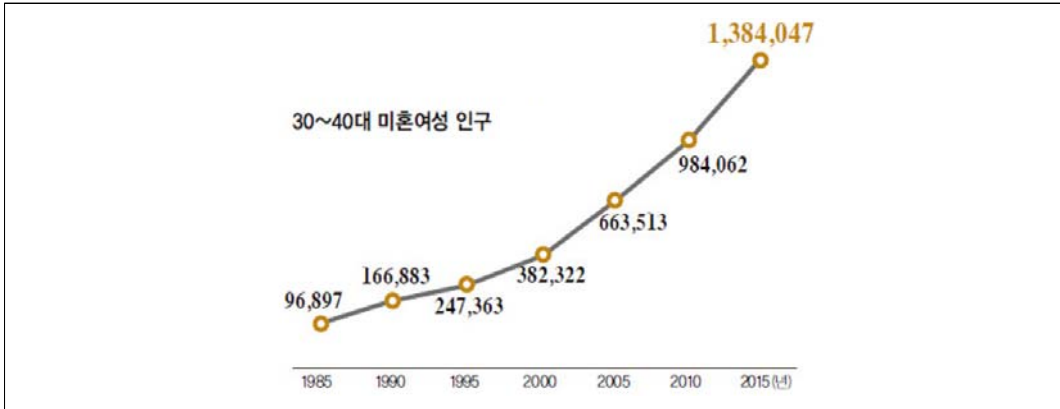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령별	2015년		
	여성의 수	미혼 여성 수	미혼율
20~24세	1,575,210	1,524,989	97
25~29세	1,444,639	1,117,085	77
30~34세	1,755,390	658,748	38
35~39세	1,853,464	355,681	19
40~44세	2,070,416	234,941	11
45~49세	2,115,940	134,677	6

자료: 통계청,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2015)」.

[그림 II-8] 30~40대 미혼 여성 인구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김효정, 「30~40대 미혼여성 138만명의 그늘」, 『조선일보』, 2017. 9. 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699, 검색일자: 2021. 7. 27. 재인용.

나.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의 출산지원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다자녀지원, 청년지원 등 생애단계 및 지원대상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임신·출산지원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16건, 그 외 고용노동부 및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각각 1건으로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육아지원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 20건, 교육부 2건, 여성가족부 3건, 기획재정부 1건, 산업통상자원부가 1건으로 임신·출산 단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지원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16건, 그 외 여성가족부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담당하는 사업 1건이 있다. 일·가정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다자녀가정지원은 국토교통부 8건, 산업통상자원부 3건, 그 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이 각각 1건으로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가정지원은 5건 모두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표 II-10〉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

구분	출산지원정책	담당 부처
임신·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표 II-10〉의 계속

구분	출산지원정책		담당 부처
임신·출산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국민행복카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복지부
	영양 플러스 사업		보건복지부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임신 상담 제도		보건복지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규)		농림축산 식품부
	해산비용지원	기초생활 보장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육아지원	아동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원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		보건복지부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환아관리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보건복지부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II-10〉의 계속

구분	출산지원정책		담당 부처
육아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어린이 불소 도포		보건복지부
	자녀장려금 지급		기획재정부
	전기요금 감액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운영		교육부
	다함께돌봄사업		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지원	태아검진시간 허용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	
유산사산휴가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 혜택		고용노동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직장 어린이집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지자체	
가족돌봄휴가(신규)		고용노동부	

〈표 II-10〉의 계속

구분	출산지원정책		담당 부처
다자녀가정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 공급제도	국토교통부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지원	국토교통부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국토교통부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3자녀 이상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산림청
		철도운임 할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자녀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청년가정지원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국토교통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함

동 사업의 목적인 출산·양육부담 완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은 ‘임신 및 출산지원’과 ‘육아지원’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 비용 지원 방식 정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보편지원과 차등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지원

동 사업의 목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와 수혜대상인 출생아(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중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선별하여 주로 임신·

출산지원 단계의 정책을 분류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주로 보건 및 의료비 지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과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은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 비용,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해산비용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 산모만을 대상으로 특정 대상만을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1〉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임신·출산지원)

구분	지원방식	보편 지원 (소득 무관)	선별 지원 (소득 차등, 특정 대상)
임신·출산지원	현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해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및 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함

임신·출산지원정책은 난임부부, 임신부, 출산모를 대상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난임가정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시술비 지원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해산비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는 임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였다.

출산가정의 양육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시간 선택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기존 최소 344천원, 최대 3,119천원에서 최소 356천원, 최대 4,712천원으로 확대), 지원대상 기준도 확대(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였다. 또한

다태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을 지원한다.

2) 육아지원

본 사업의 목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와 수혜대상인 출생아(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중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선별하여 육아지원 단계의 정책을 분류하였다.

육아지원은 영유아의 진료비와 아동의 양육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보육료지원 및 유아학비지원은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의 진료비는 비용을 경감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선별적 지원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다자녀가정만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되고 있다. 또한 아동돌봄서비스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유아학비의 경우에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유아학비에서 교육과정비가 추가 지원이 된다.

〈표 II-12〉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육아지원)

구분	지원방식	보편 지원 (소득 무관)	선별 지원 (소득 차등, 특정 대상)
육아지원	현금	아동수당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시간제 보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자녀장려금 지급
	바우처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서비스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지원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경감 및 감면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전기요금 감액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함

육아지원 정책은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동수당은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연령은 만 6세(0~71개월)에서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연장하였다. 보육료, 유아학비는 지원단가가 3~5세 대상으로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통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가)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은 지원은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금 입금이 원칙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로 신청이 가능하다.

나)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등록 장애아 만 12세 이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단가는 만 0세의 경우 47만원, 만 1세의 경우 41만 4천원, 만 2세의 경우 34만 3천원, 만 3~5세의 경우 24만원(방과후과정비 7만 8천원 추가 지원)을 지원해 준다. 만 3~5세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0세반·장애아 3천원)를 지원해 준다.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웹/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미이용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및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단가는 0~11개월의 경우 20만원, 12~23개월의 경우 15만원 지원, 24~35개월의 경우 1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경우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참고로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 기준은 상이하다.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웹/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라)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정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제공 및 보육료 일부 지원, 월 80시간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시간제 보육료 시간당 4천원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3천원)한다. 신청 방법은 전화(1661-9361)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으로 신청하며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당일 예약은 전화(1661-9361) 및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가능하다.

마)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생후 4~71개월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 권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및 구강검진 3회(18, 42, 54개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으며,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하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및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1세 미만(생후 1년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경감(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 10%, 의원 5%)하는 사업이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는 생후 28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입원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이다.

사)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를 대상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해 준다. 공단 신청(등록)일로 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서류 작성, 인근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또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또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 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하며,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혹은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24개월 동안 영아별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 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영아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 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사업·종교인에 해당하며 소득 있는 거주자 중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 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단가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지급액 이 상이하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기간에 ARS 전화, 손택스(모바 일앱), 홈택스,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차) 아이돌봄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서비스를, 생후 3개월~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질병 감염 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

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이 차등 지원되며, 2020년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을 지원하며 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혹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하여 아이돌봄센터를 신청하면 되며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3) 일·가정 양립지원

동 사업의 목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와 수혜대상인 출생아(영유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중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선별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단계의 정책을 분류하였다.

일·가정 양립지원은 육아기의 근로자의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하여 시간지원 정책과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에서는 소득수준 및 특정 대상과 관계없이 대부분 보편적인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표 II-13〉 중앙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유형별 정리(일·가정 양립지원)

구분	지원방식	보편 지원(소득 무관)	선별 지원(소득 차등, 특정 대상)
일·가정 양립지원	현금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감면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함

일·가정 양립지원은 육아기 근로자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지원 정책과 비용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유급이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은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또한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가족

돌봄휴가가 최대 10일로 변경되었다. 출산전후휴가는 정부지원금의 상한액이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산전후, 유·사산휴가 급여도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일·가정 양립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육아휴직이 있는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첫 3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9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의 경우에는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일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지급(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하며, 한 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한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분류 기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사업은 생애단계별, 지급방식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생애단계별로는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으로 7단계로 구분된다. 결혼 전 단계에서는 만남, 건강검진, 그리고 주택지원 등의 사업을, 결혼 단계에서는 결혼 준비, 결혼식 그리고 신혼여행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 전 단계에서는 건강검진, 산전검사, 난임부부 지원 등의 임신준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신 단계에서는 영양 보조제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등의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 단계에서는 산후조리원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 등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단계에 대한 지원을, 육아 단계에서는 자녀의 건강 및 교육 등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 가족 단계에서는 인구교육 및 일가정 양립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출산단계에 해당한다.

〈표 II-14〉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생애단계별 분류

구분	내용
결혼 전	결혼 목적의 만남, 미혼남녀 건강검진, 청년 주택지원 등
결혼	결혼준비(예: 예비부부교육, 주택마련 등), 결혼식, 신혼여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임신 전	임신 전 또는 임신준비 단계에 지원하는 사업 (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한방, 검사비 등), 산전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등)
임신	임신부터 출산 전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 요가 및 마사지 등)
출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단계(출산 후 3개월 되는 시기)까지 지원하는 사업 (예: 산후조리원비 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선물,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사진촬영 등)
육아	산후조리 종료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는 사업 (단,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제외)
가족	저출산 및 인구교육 및 캠페인, 출산 및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홍보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지급방식별로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와 같이 구분된다. 이 중에서 본 사업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바우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 사용처에서 구매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이 지급된다는 관점에서 현금 및 현금성에 가까운 지원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II-1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지원방법별 분류

지원방법	내용
현금	현금 지원 예: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양육비, 육아수당, 육아지원금, 신생아양육비 등 출산비용 임신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입학축하금, 돌축하금, 입양축하금, 생일축하금, 교복비, 장학금, 의료비, 교재비, 산후조리비, 한양재비용, 검사비, 교통비, 간식비, 도서비 등 대출이자 지원
상품권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표 II-15〉의 계속

지원방법	내용
현금성	보험료 지원, 이용료 감면 예: 출생아(신생아) 건강보험료, 임신부 공영주차장료 할인 또는 감면, 임신부 물품구입비 할인혜택(카드), 다자녀할인카드, 상하수도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 검사비 감면 등
현물	물품 직접 지급 예: 출산축하선물(용품), 영유아 안전키트(안전용품), 영양제(엽산제 및 철분제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기저귀, 유아의자, 도서(북스타트) 등
바우처(이용권)	바우처(예: 산모신상아도우미 사업 등), 쿠폰(예: 초음파 쿠폰,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각종 풍진검사쿠폰, 교환권, 백일사진촬영권 등)
서비스	출산용품(유축기), 카시트,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도우미 지원, 양·한방 시술, 무료검사, 무료 예방접종, 무료 진료, 결혼식장, 아기등록 및 출생증명서 발급, 축하카드 등
인프라 구축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등 확충
교육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마사지, 육아교실, 임신부교실, 부모교육, 요가교실, 영유아 건강교실, 저출산 및 인구교육 등
홍보	책자 배포, 행사, 축제, 캠페인, 토론회, 포럼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앞서 생애단계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다음과 같다. 「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사업은 총 2,283건으로, 전년인 2019년의 2,278건보다 5건이 증가하였다. 생애단계별로 출산 789건, 육아 638건, 임신 437건 순이며, 출산지원 정책이 임신, 출산, 육아 단계에 집중되어 지원되고 있었다.

2020년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총 예산은 8,006억원으로 2019년 대비 2,014억원이 증가했다. 세부 단계별로는 출산 단계의 2020년 사업 예산은 5,36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223억원이 증가하면서 생애단계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육아 단계의 예산은 2019년 대비 634억원이 증가하여 두 번째로 큰 증가를 보였다. 전체 출산지원정책 예산 대비 각 단계의 비중 역시 출산 단계가 67.0%, 육아 단계가 26.1%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2020년 기준 3,793억원으로 출산 단계에서의 총예산인 5,362억원에서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산 단계의 예산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16〉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결혼 전	2,212	0.4	4,522	0.6	2,310	0.2
결혼	12,305	2.1	16,304	2.0	3,999	-
임신 전	6,247	1.0	9,845	1.2	3,598	0.2
임신	13,946	2.3	20,009	2.5	6,063	0.2
출산	413,870	69.1	536,214	67.0	122,344	△2.1
출산지원금	282,105	47.1	379,367	47.4	97,262	0.3
육아	145,640	24.3	209,056	26.1	63,416	1.8
가족	4,998	0.8	4,724	0.6	△274	△0.2
계	599,219	100.0	800,674	100.0	201,456	-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2020년도를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한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은 총 199건으로 육아 단계에 66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산 단계가 48건으로 많다. 출산지원정책 예산 규모는 3,960억원으로, 출산 단계에서 2,584억의 규모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단계가 1,055억으로 크다. 지원방법별로 구분하면, 서비스 및 교육 홍보가 나란히 53건으로 지원 방법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금이 4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비스는 생애 단계 중 육아 단계에서, 교육 홍보는 가족 단계에서, 그리고 현금은 출산 단계에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II-1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2020)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전체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전체	4	3,098	7	9,993	16	6,955	21	8,581	48	258,439	66	105,593	37	3,388	199	396,047
현금 ¹⁾	1	3,000	3	9,890	3	916	1	985	24	163,098	13	21,051	-	-	45	198,940
상품권 ²⁾	-	-	-	-	-	-	-	-	2	43,200	-	-	-	-	2	43,200
현금성 ³⁾	-	-	-	-	-	-	4	1,547	2	150	14	2,577	-	-	20	4,274
현물	-	-	-	-	1	180	1	90	3	7,509	2	243	-	-	7	8,022

〈표 II-17〉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전체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바우처		-		-	1	900	2	442	8	36,643		-		-	11	37,985
서비스	3	98	3	83	11	4,959	9	5,364	8	4,779	16	7,315	3	367	53	22,965
인프라		-		-		-		-	1	3,060	7	73,839		-	8	76,899
교육 홍보		-	1	20		-	4	153		-	14	568	34	3,021	53	3,762

주: 1) 현금: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현금 대신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3) 현금성: 할인카드, 유아 건강보험 등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의 사업의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하여 작성

2020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지원 건수는 총 2,084건으로 출산 단계에 741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단계가 572건으로 많다. 출산지원정책 예산 규모는 4,046억원으로, 출산 단계에서 2,777억의 규모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단계가 1,034억으로 크다. 지원방법별로 구분하면, 현금이 592건으로 지원방법 중에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가 552건을 차지하였다. 현금은 생애단계 중 출산 단계에서, 서비스는 육아 단계에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II-1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2020)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전체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전체	27	1,424	70	6,311	140	2,890	416	11,428	741	277,775	572	103,463	118	1,336	2,084	404,627
현금	6	1,083	44	6,015	33	1,225	29	2,261	355	232,070	122	53,884	3	164	592	296,702
상품권	0	-	1	50	0	-	1	1,500	24	8,462	5	484	0	-	31	10,496
현금성	0	-	0	-	0	-	17	21	8	97	132	11,266	0	-	157	11,384
현물	0	-	1	-	14	187	83	2,663	115	5,195	52	1,196	0	-	265	9,241
바우처	1	34	0	-	5	166	52	1,493	75	22,497	14	1,324	0	-	147	25,514
서비스	18	294	18	102	83	1,298	111	2,344	150	3,200	170	29,804	2	98	552	37,139
인프라	0	-	0	-	0	-	0	-	2	6,193	3	4,568	0	-	5	10,761
교육 홍보	2	13	6	145	5	14	123	1,146	12	61	74	937	113	1,074	335	3,390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하여 작성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주요 사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출산지원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 단계에서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신규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인천광역시 및 대전 서구는 결혼식 지원 및 예비부부 교육과정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결혼 단계에서는 신혼부부의 거주에 관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결혼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임신 단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출산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에 있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임신부 도서택배 서비스, 임신체험복 대여사업 및 굿바이 임신출산 우울증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신 단계에서 필요한 물품 지원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출산 단계에서는 출산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산모 및 유사산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강원 양구군은 고위험산모 발굴 및 관리, 응급산모 택시 운영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 단계에서 광주광역시는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특별시에는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 중구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서울 서대문구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돌봄, 전북 익산시에서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 및 공동 육아방을 운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19〉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주요 사례

단계	단위	시도	사업명	지원내용	2020년 수혜인원	2020년 예산
결혼	광역	부산	신혼부부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	일정 가구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1억원 대출, 대출이자 2.8% 지원	1,000명	30억원 (신규)
		인천	작은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 20쌍 대상 사진 촬영, 예식장 세팅 지원	40명	73백만원 (신규)
	기초	대전 서구	결혼예비학교 운영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대상 교육과정 운영	100명	12백만원 (신규)

〈표 II-19〉의 계속

단계	단위	시도	사업명	지원내용	2020년 수혜인원	2020년 예산
임신	광역	전북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취약지 거주 임산부(임신 10주 ~ 분만) 산전 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급	1,380명	985백만원
	기초	강원 원주시	임산부 도서택배 서비스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 장애인 다문화 등 가정에 도서관 자료 무료 배달	600가구	4백만원
		충북 제천시	임신체험복 대여사업	임산부 배우자에게 1회 5일간 임신체험복 대여	30명	1백만원 (신규)
		전남 장성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산부인과 이동검진 지원	200명	-
		부산 남구	굿바이 임신출산 우울증	임신 20주 ~ 출산 후 30일 이내 임산부 우울증 선별검사 및 개별상담	300명	1백만원
출산	기초	전북 전주시	산후건강관리지원 (의료비)	산모 및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임산부 대상 산후 치료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2만원/1인)	2,340명	468백만원 (신규)
		강원 양구군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산모 발굴 및 관리, 응급산모 안심택시 운영 등	-	50백만원
육아	광역	광주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병원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1일 4~8시간)	600명	350백만원 (신규)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6~12세 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 제공	-	602억원
	기초	서울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5,000명	12억원 (신규)
		서울 서대문구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돌봄	초등 1~4학년 교육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60명	12백만원
		광주 동구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미취학 아동 및 부모 대상 북카페, 놀이시설,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2,000 세대	60백만원 (신규)
전북 익산시	우리 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0~12세 아동 초등돌봄교실 및 공동 육아방 운영	50명	88백만원 (신규)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질의 및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개요(2021)」, 제출자료

3. 유사사례 검토

가. 국내 사례

1) 중앙정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본 사업과 수혜대상이 유사하며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2022년 신규 도입을 목표로 하는 영아수당과도 성격이 비슷하다.

〈표 II-20〉 유사사업 비교(중앙정부)

구분	근거	내용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4조	•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이후) 10만원 지급
보육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34조의3	•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 영유아가 속한 반 (0~5세반)에 따라 보육료는 차이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있는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영아수당('22~)	「아동수당법」 개정안 제4조 제5항	• 아동수당 외에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월 50만원* 추가 지급 * 복지부(안):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15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그림 II-9]에서는 현행 시점과 2022년 이후 신규 도입되는 출산·양육비용 지원정책을 보여준다. 현행 기준으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출생아의 연령대(0세)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자면, 시설 미이용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월 20만원, 아동수당은 10만원으로 1년간 총 360만원이 지원된다((20만원+10만원)×12개월).

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월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지원으로 1년간 총 720만원이 지원된다((50만원+10만원)×12개월).

한편 2022년 이후를 기준으로 0세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자면 시설 미이용에 경우 영아수당 월 30만원,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첫 만남 바우처 일시금 200만원으로 총 680만원이 지급된다((30만원+10만원)×12개월+200만원). 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영아수당 월 5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 만남 바우처 일시금 200만원으로 1년간 총 920만원이 지원된다((50만원+10만원)×12개월+200만원)).

정리하자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대상이 되는 출생아(0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일시금 지원이라는 방식에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출산·양육비용 지원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II-9] 중앙정부 출산·양육비용 지원 정책

(단위: 만원)

현행				2022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 20 월 15 월 10			보육	시설미이용	영아수당	현금 월 30 → 월 50 (’22년)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 1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지원 월 50 월 50 월 28~36				시설이용		바우처 (보육료) 월 5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 28 ~ 월 36
아동수당		아동수당 월 10			아동수당		아동수당 월 10			
출산지원금		정부지원 부재			출산지원금		첫 만남 바우처 일시금 200			

* 20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제출자료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과 함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며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2020년을 기준으로, 광역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시행 중(82.4%)이며, 기초는 226개 시군구 중 219개 시군구가 시행 중(96.9%)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출산 시 현금 및 바우처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현황은 2020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시행 중(82.4%) 서울, 경기, 전북 3개의 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 10개 지역이고, 둘째아는 13개, 셋째아 이상 14개 지역이 지원 중이다. 2019년과 비교하여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만 9개에서 10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첫째아 지원 지역은 58.8%, 둘째아 76.5%, 셋째아 이상 82.4%를 차지한다.

〈표 II-21〉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9~2020년

(단위: 개, %)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2020	10	58.8	13	76.5	14	82.4	14	82.4	14	82.4
2019	9	52.9	13	76.5	14	82.4	14	82.4	14	82.4
전체	17	100.0	17	100.0	17	100.0	17	100.0	17	100.0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17개 광역 및 시도청(2019, 2020),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구간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첫째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 구간이 5건으로 절반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의 금액 구간이 각각 28.6%(4건)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다.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33.3%(5건)를 보이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각각 26.7%(4건)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50만원 미만은 첫째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졌으며, 50만원 이상의 금액 구간은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그 분포도 높아졌다. 즉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액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강원도의 경우에는 첫째아부터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1,440만원(분할)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금액 중에서 가장 높았다.

〈표 II-22〉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구간 비교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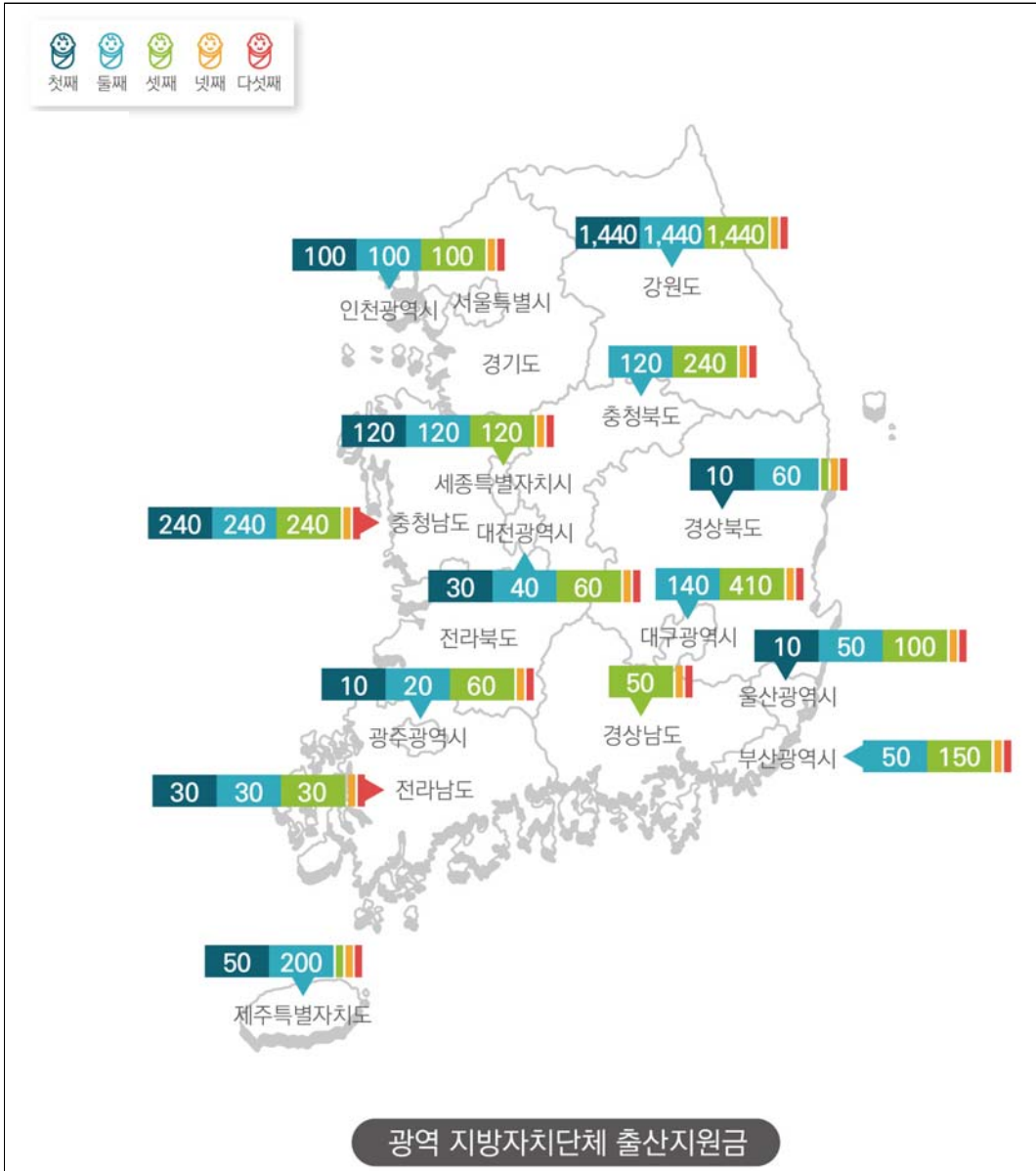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50만원 미만	5	50.0	4	28.6	1	6.7	1	6.7	1	6.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	10.0	3	21.4	5	33.3	5	33.3	5	3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	20.0	4	28.6	4	26.7	4	26.7	4	26.7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	10.0	2	14.3	4	26.7	4	26.7	4	26.7
500만원 이상	1	10.0	1	7.1	1	6.7	1	6.7	1	6.7
계	10	100.0	14	100.0	15	100.0	15	100.0	15	100.0

주: 1.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으로 총 2개의 사업을 실시하며,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 II-21〉에서 제시한 2020년 출생순위별 총사업 수와 상이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II-1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

(단위: 만원)



- 주: 1. 서울, 경기, 전북 등 출산지원금 미지급 지역은 출산지원금 미제시
- 2. 출산순위별 동일 금액 지급 시 상위 출산순위만 지원금액 제시, 나머지는 색상(띠)로 제시
- 3. 2개 이상 사업 추진하는 경우 출산순위별 지원금액 합산한 금액 제시. 예를 들어,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10만원 지급 시 셋째까지 지원금액 제시, 넷째 이상은 색상(띠)로 제시
- 4.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동일 지원금액 지급 시 셋째까지만 제시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1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는 2020년 기준 1,606억원으로 2019년 1,100억원보다 46.0% 증가하였다. 강원, 충남, 광주, 대전 순으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강원은 수혜인원 증가, 충남은 지원대상이 출생월 이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표 11-23〉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 2018~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
전체	83,004	110,059	160,659	46.0
서울	-	-	-	-
부산	7,200	6,500	5,900	-9.2
대구	14,618	12,669	14,755	16.5
인천	20,413	19,972	19,062	-4.6
광주	1,641	1,494	1,900	27.2
대전	1,566	2,998	3,708	23.7
울산	3,218	2,134	2,540	19.0
세종	4,320	4,620	4,620	0.0
경기	-	-	-	
강원	-	15,153	45,580	200.8
충북	10,380	8,334	8,509	2.1
충남	2,848	20,142	37,368	85.5
전북	-	-	-	
전남	3,359	3,256	3,570	9.6
경북	6,060	5,394	5,900	9.4
경남	1,550	1,450	1,040	-28.3
제주	5,831	5,943	6,207	4.4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14.

나)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020년을 기준으로 226개 시군구 중 2020년 96.9%(219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인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든 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 177개, 둘째 204개, 셋째 215개, 넷째 이상 218개 지역이다.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많으며, 최근 들어 지원대상이 첫째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내 시군구 전체가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내 전체 시군구가 셋째아 이상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표 11-24〉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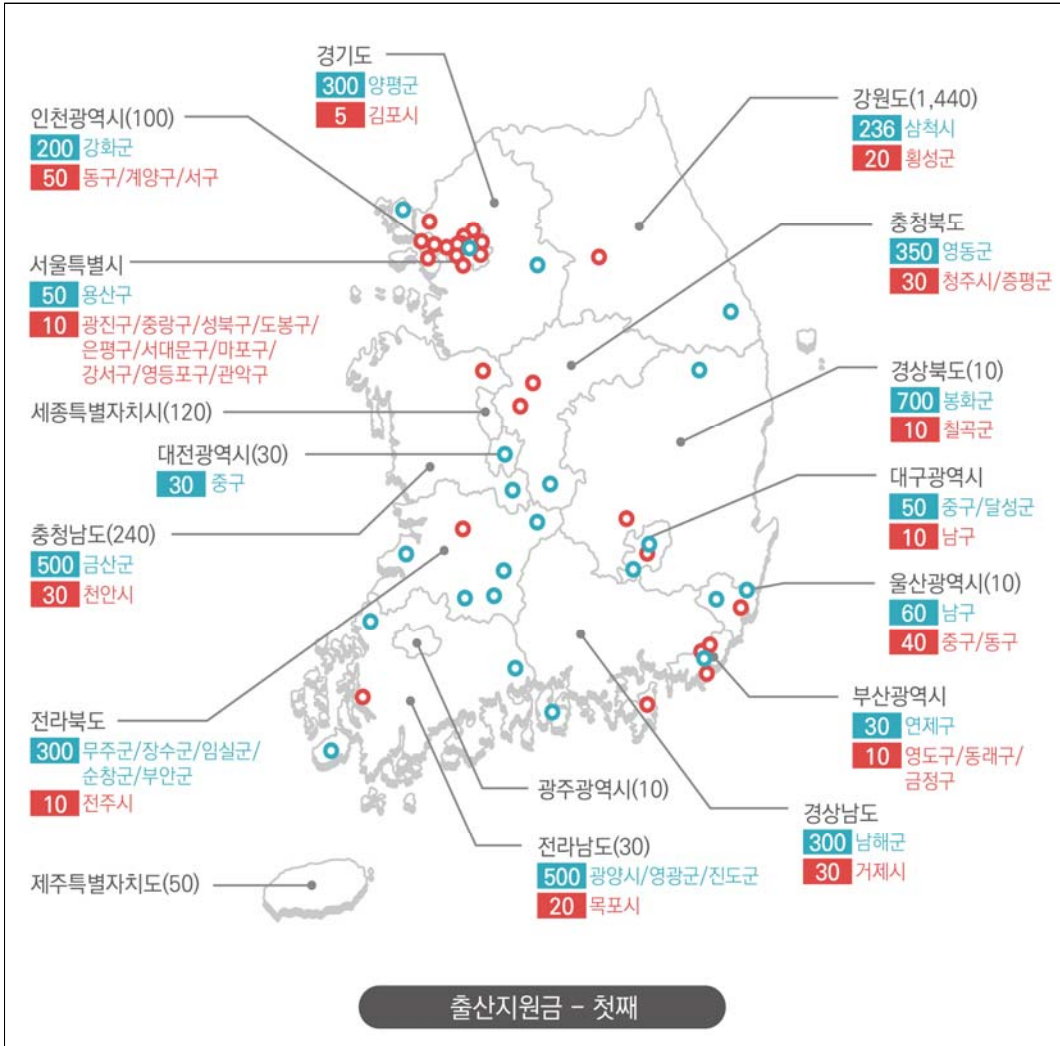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지방자치단체 수					지원 비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전체	177	204	215	218	218	78.3	90.3	95.1	96.5	96.5
서울	19	25	25	25	25	76.0	100.0	100.0	100.0	100.0
부산	6	15	16	16	16	37.5	93.8	100.0	100.0	100.0
대구	3	2	2	3	3	37.5	25.0	25.0	37.5	37.5
인천	5	8	9	9	9	50.0	80.0	90.0	90.0	90.0
광주	-	1	5	5	5	0.0	20.0	100.0	100.0	100.0
대전	1	2	3	3	3	20.0	40.0	60.0	60.0	60.0
울산	5	5	5	5	5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19	28	31	31	31	61.3	90.3	100.0	100.0	100.0
강원	17	17	18	18	18	94.4	94.4	100.0	100.0	100.0
충북	11	9	9	11	11	100.0	63.6	81.8	100.0	100.0
충남	14	15	15	15	15	93.3	100.0	100.0	100.0	100.0
전북	14	14	14	14	14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남	22	22	22	22	22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북	23	23	23	23	23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남	18	18	18	18	18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21.

[그림 II-11]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첫째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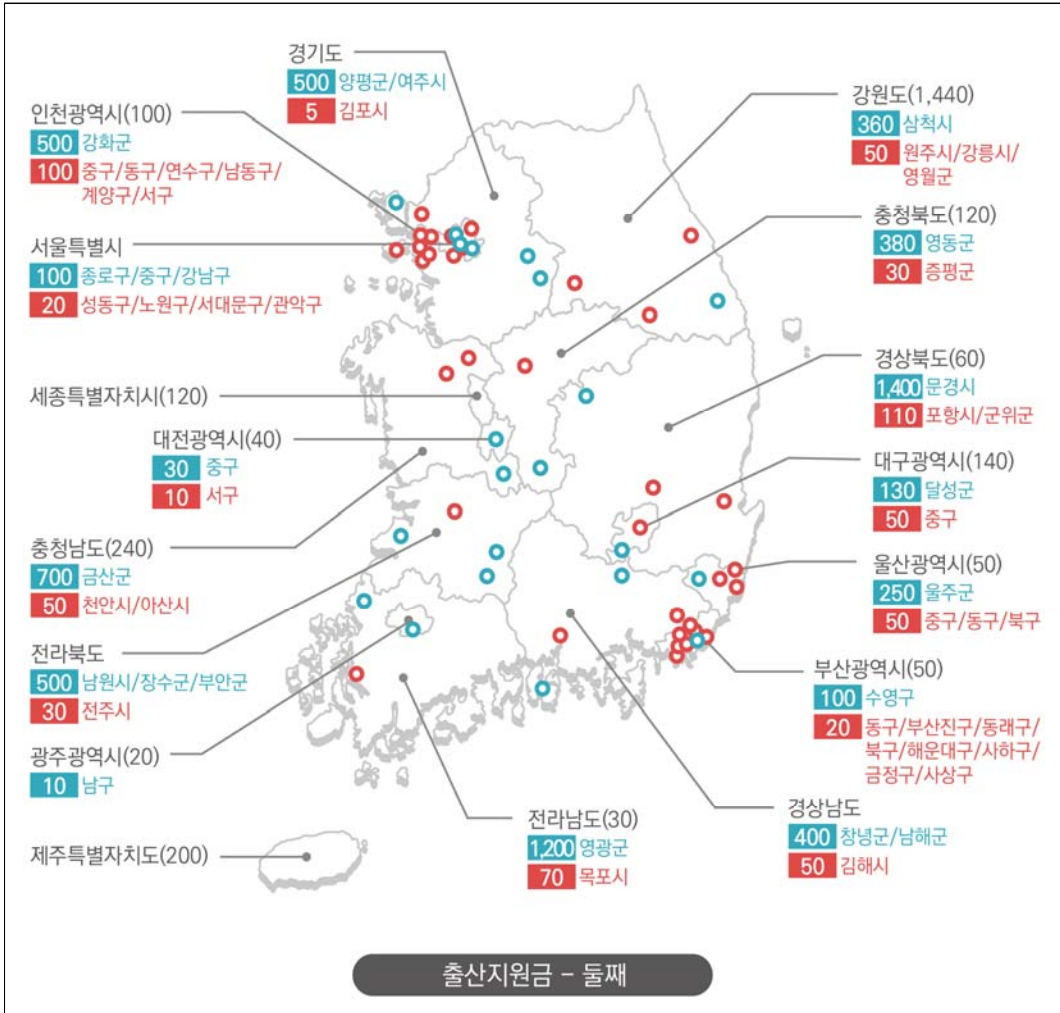


주: 1. 시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 최소, 최대 지원 지역을 의미함(최소: 빨강, 최대 파랑).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24.

[그림 II-12]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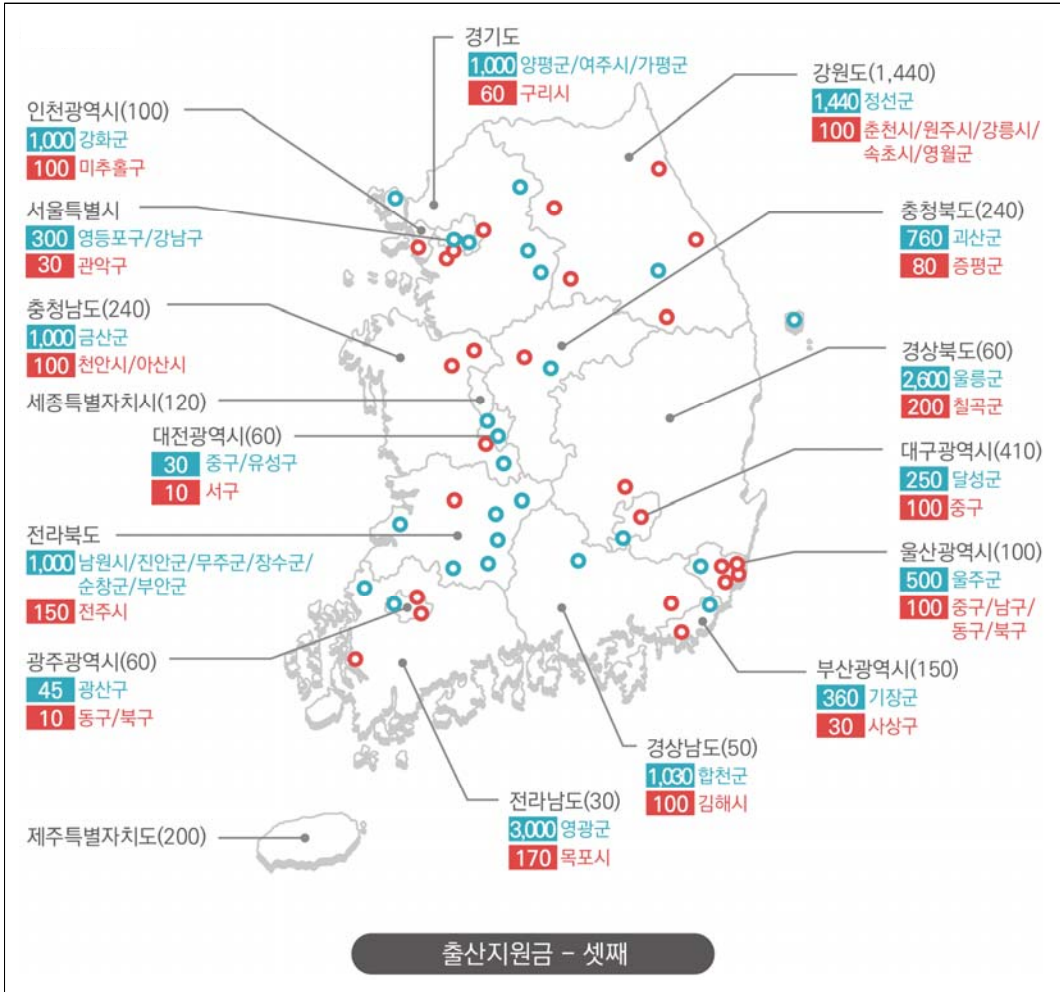
(단위: 만원)



주: 1. 시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 최소, 최대 지원 지역을 의미함(최소: 빨강, 최대 파랑).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25.

[그림 II-13]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출산지원금(셋째아)

(단위: 만원)



주: 1. 시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지원금 최소, 최대 지원 지역을 의미함(최소: 빨강, 최대 파랑).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2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재정 규모는 2020년 2,215억원이다. 2019년 기준 1,725억원보다 28.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매년 20% 정도씩 증가해 왔다. 광주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전년도보다 출산지원금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였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동래구, 연제구 등에서 지원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예산이 2019년 27억원에서 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3.0% 증가하였으며, 인천, 충남, 경북 3개 지역은 각각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지원 단가 인상 또는 지원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하여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20년), 서구('19년 하반기)는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계양구, 용진군 등은 지원대상을 첫째로 확대하였다. 충남 홍성군, 예산군은 지원단가를 크게 인상하고, 천안시는 지원대상을 첫째로 확대하였다.

〈표 II-25〉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재정 규모: 2018~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
전체	143,967	172,595	221,582	28.4
서울	11,695	12,361	17,241	39.5
부산	2,901	2,795	4,276	53.0
대구	2,467	2,778	3,055	10.0
인천	4,132	7,331	11,138	51.9
광주	492	351	372	6.0
대전	205	393	507	29.0
울산	3,767	5,026	6,225	23.9
경기	35,073	46,168	55,721	20.7
강원	6,048	6,333	7,609	20.1
충북	4,086	5,441	6,707	23.3
충남	7,805	8,637	12,654	46.5
전북	7,940	10,638	12,145	14.2
전남	21,383	24,465	27,953	14.3
경북	22,916	23,359	33,344	42.7
경남	13,057	16,520	22,635	37.0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p. 323.

나. 해외 사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사업계획서)에서 본 사업과 유사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로 제시한 국가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를 조사하였다. 해외의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수

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출생순위별로 차등지원하는 국가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소수의 국가들만이 분할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출산 후 18개월까지 총 5회에 나누어 분할지급을 하고 있으며, 지급 회차마다 지원금액 수준도 달랐다. 첫 출산일을 기준으로 18개월로 갈수록 점점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룩셈부르크는 산전, 출산, 산후 단계로 나누어서 총 3회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각 단계마다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출생아당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다태아(쌍둥이)의 경우에만 0세부터 2세까지 월 €160씩 지급하며 수당적 성격의 분할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출산지원금을 1년간 월마다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외의 국가들은 모두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국가는 조사국가들 중에서 6개국이며, 그 외의 국가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체코, 폴란드, 아일랜드는 일정 소득수준 충족 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소득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출생순위 및 다태아 출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싱가포르, 벨기에(브뤼셀 지역),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체코, 스페인, 이스라엘이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출생아 1명의 지원 금액보다 더 높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벨기에(브뤼셀 지역), 슬로바키아, 체코, 이스라엘은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출산지원금은 첫째아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표 II-26〉 해외의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 유형별 정리

보편 지원				차등 지원 (소득 기준)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일본	일시금	- 출생아당 40.4만엔	- 병원에 직접 지급 - 차액은 수령 가능	영국	일시금	- 출생아당 £500	- 저소득층 가구 대상

〈표 II-26〉의 계속

보편 지원				차등 지원 (소득 기준)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싱가포르	분할금	- 첫째·둘째아 출산 시 8천달러 지급 -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만달러 지급	- 총 5회에 분할하여 지급	프랑스	일시금	- 출생아당 € 953.03	- 외벌이가정 연간 소득 € 32,455 미만 -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 - 연간 소득 € 42,892 미만
핀란드	일시금	- 출생아당 1) 비과세 현금급여 € 170 또는 2) 출산용품		이탈리아	분할금	- 최저수준: € 1,920 - ISEE € 7,000 초과 € 40,000 미만 소득수준: € 1,440 - ISEE € 40,000 초과 수준: € 960	- ISEE(equivalent economic situation indicator)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1년간 월마다 분할 지급
벨기에	일시금	- 플랑드르 (Flanders): 출생아당 € 1,144.44 - 왈로니아 (Wallonia): 출생아당 € 1,122.00 - 브뤼셀 (Brussels): 첫째아 € 1,122 둘째아 € 510	- 지역마다 출산지원금 금액이 다름 - 브뤼셀(Brussels) 지역은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체코	일시금	- 첫째아 CZK 13,000 (€ 495) - 둘째아 CZK 10,000 (€ 381)	- 최저생활비의 2.7배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
헝가리	일시금	- 출생아당 최저 노 령연금의 225% HUF64,125 (€ 195) - 쌍둥이 경우 자녀당 최저 노령연금의 300% HUF85,500 (€ 261)		폴란드	일시금	- 출생아당 PLN 1,000 (€ 219)	- 1인당 소득 PLN 1,922(€ 422) 이하 일 경우

〈표 II-26〉의 계속

보편 지원				차등 지원 (소득 기준)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룩셈부르크	분할금	- 출생아당 € 1,740.09	- 산전, 출산, 산후 단계로 나누어 총 3회에 분할하여 지급(1회당 € 580.03)	아일랜드	일시금	- 출생아당 € 10.16	- 주당 수입이 가족 규모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하를 충족할 경우
스위스	일시금	- 출생아당 최소 CHF 1,000 (€ 921) ~ 최대 CHF 3,000 (€ 2,763)으로 주마다 다름	-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금 없음 - 주정부(canton) 차원 에서 9개 주에서 지급				
에스토니아	일시금	- 출생아당 € 320 - 세쌍둥이 이상: 출생아당 € 1,000					
슬로바키아	일시금	- 셋째아까지: € 829.86 - 넷째아 이후: € 151.37 - 다태아 출산 시 아동당 € 75.69 추가 지급	-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	
리투아니아	일시금 · 분할금	- 출생아 당 € 440 일시금 - 다태아 경우: 월 € 160씩 24개월 지급	- 0~2세에 대해 다태아 수당 지급				
슬로베니아	일시금	- € 350					
스페인	일시금	- 다태아 출산의 경우 2명 € 3,800 3명 € 7,600 4명 € 11,400	- 대가족 및 한부모 가정, 장애산모의 경우 € 1,000				

〈표 II-26〉의 계속

보편 지원				차등 지원 (소득 기준)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국가	지원 방법	지원금	비고
이스라엘	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1,778 NIS, - 둘째아 800 NIS, - 셋째아 이상 533 NIS - 다태아 경우 · 쌍둥이 8,888 NIS, · 세쌍둥이 13,332 NIS · 그 이상의 경우 1명의 출생아당 4,444 NIS씩 추가 지원 	- 출산순위별 차등 지원			-	

자료: European Commission 및 Missoc, 각 국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진이 재정리함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출산지원금 지원 단가 및 방식에 관하여 국가별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국가마다 지원금액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국가는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1) 일본⁴⁾

일본에서는 가정의 출산비용준비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임신 4개월 이상 시 42만엔(한화 약 429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시정촌)별 금액 상이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차액은 수령 가능하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으로 지급되던 정책이 현재는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발전되었으며, 지급대상은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혹은 피부양자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위기로 인식되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일시금의 급여 수준이 점차 인상되어 왔다. 1994년 30만엔, 2006년 35만엔, 2009년

4) 도남희·최정원·박은영·김병철(2019),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p. 64~65.

38만엔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현재의 급여 수준은 아동 1명의 정상 분만(임신 85일 이상)의 경우 출산육아일시금이 40.4만엔, 여기에 산과의료보상 제도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1.6만엔의 보험료를 가산하여 총 42만엔이다. 다태아출산의 경우는 '42만엔 × 출산아동수분'이 지급된다.

2009년 10월부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보험에서 출산육아일시금을 (피보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피보험자는 출산 시 실제발생비용과 40.4만엔의 차액만 부담하고, 실제 발생비용이 40.4만엔보다 적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그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한다.

2) 영국⁵⁾

영국에서는 첫 자녀 또는 쌍둥이/다태아를 출산예정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500 (한화 약 78만원)를 지원하는 슈어 스타트 임신부 보조금 정책이 실행 중이다. 저소득자로서 임신부 또는 배우자가 저소득 보조금, 구직수당, 연금 공제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11주 전부터 출산 후 6개월 사이에 출산보조금을 신청하면 아이 한 명당 £500를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가정의 첫 아이를 대상으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에 이미 아이가 있으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6세 이하의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 중일 경우에는, 다태아(쌍태아)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을 처음 시작할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저소득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1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을 하거나 대리부모가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5)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sure-start-maternity-grant>, 검색일자: 2021. 7. 12.

3) 싱가포르⁶⁾

싱가포르에서는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된 부부의 출생아가 싱가포르의 시민일 경우, 첫째·둘째아 출산 시 8천달러(한화 약 673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만달러(한화 약 841만원)를 지급(5회 분할 지급)한다.

싱가포르

- 첫째·둘째아 출산 시 8천달러 지급
 - 1회) 출생신고 및 가입일로부터 7~10일 이내: 3천달러
 - 2회) 출산 후 6개월: 1,500달러
 - 3회) 출산 후 12개월: 1,500달러
 - 4회) 출산 후 15개월: 1천달러
 - 5회) 출산 후 18개월: 1천달러

-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만달러 지급
 - 1회) 출생신고 및 가입일로부터 7~10일 이내: 4천달러
 - 2회) 출산 후 6개월: 2천달러
 - 3회) 출산 후 12개월: 2천달러
 - 4회) 출산 후 15개월: 1천달러
 - 5회) 출산 후 18개월: 1천달러

자료: 싱가포르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CDA>, 검색일자: 2021. 7. 12.

4) 이탈리아⁷⁾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또는 입양 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출산지원금은 이탈리아 국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EU 국가 국민과 비EU 국가 국민

6) 싱가포르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홈페이지,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CDA>, 검색일자: 2021. 7. 12.

7) 이유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육아 정책」, 『EBS뉴스』, 2021. 6. 15.,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20471898/N>, 검색일자: 2021. 7. 12.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최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는 12개월에 €1,920(한화 약 2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월마다 €160를 지급한다. 소득 상태를 계산할 수 있는 The Equivalent Economic Status Index(ISEE) 계산을 기준으로 €7천을 초과하고 €4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득수준에 있는 가정은 €1,440(한화 약 195만원), 매월 €120를 지급한다. €4만이 넘는 소득수준의 가구에는 €960(한화 약 130만원), 월 €80를 지급하고 있다.

5) 핀란드⁸⁾

핀란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인 켈라(kela)에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복지수당을 책임지고 있는데, 핀란드의 모든 임신부에게 출산 전에 육아 필수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출산 패키지인 엄마상자를 제공한다. 모든 예비 엄마들은 켈라에서 지급하는 엄마상자와 비과세 현금 €170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엄마상자는 아이의 성별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상자를 받는다. 신생아를 위한 열 벌의 옷과 보온담요, 장갑, 장난감, 온도계, 손톱가위, 기저귀, 동화책 등이 기본으로 들어 있고, 콘돔, 속옷 세트 같은 엄마를 위한 물품도 담겨 있다.

6) 벨기에⁹⁾

벨기에는 2016년 기준 전체 출생의 4분의 1 정도가 외국 산모에게서 발생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편이다. 지원 조건은 부모 중 한 사람은 벨기에에서 태어나 출생 전 10년 동안 최소 5년 동안 거주했어야 한다. 벨기에는 유럽 국가를 통틀어서 출산지원금이 가장 관대한 편인데, 첫 번째 자녀의 경우 €1,200 이상, 다음 자녀의 경우 €930 이상의 출생보조금을 지원한다. 플랑드르(Flanders), 왈로니아(Wallonia), 브뤼셀(Brussels) 지역마다 그

8) 이유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육아정책연구소, pp. 21~23;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9&langId=en&intPageId=4514>, 검색일자: 2021. 7. 26.

9) Expatica, <https://www.expatica.com/be/healthcare/womens-health/having-a-baby-in-belgium-100241/#Pregnancy-childbirth>, 검색일자: 2021. 7. 27.; 플랑드르(Flanders):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en/benefits-Groeipakket/birth-benefit>, 검색일자: 2021. 7. 27.; 왈로니아(Wallonia): Parentia, <https://www.parentia.be/en-WA/maternity-allowance>, 검색일자: 2021. 7. 27.; 브뤼셀(Brussels): Famiris.brussels, <https://famiris.brussels/nl/faq/hoe-zit-het-precies-met-de-geboortepremie>, 검색일자: 2021. 7. 27.

금액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은 보험과 사회복지의 지원으로 모든 임신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플랑드르(Flanders) 지역은 출생아 1명당 €1,144.44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쌍둥이 및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각 자녀에 대해 €1,144.44씩 지원받는다. 왈로니아(Wallonia) 지역은 출생아 1명당 €1,122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산할 경우에는 임신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뤼셀(Brussels) 지역은 첫 출생아의 경우 €1,122, 두 번째 출생아의 경우에는 €510를 지원받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1명당 동일하게 €1,122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임신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180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

7) 헝가리¹⁰⁾

헝가리는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양부모, 보호자, 출산모 사망 시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최소 4회의 산전 건강검진을 받거나(조산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입양 또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받아야 한다. 지원 단가는 최저노령연금의 225%(HUF6만 4,125), 쌍둥이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최저노령연금의 300%(HUF8만 5,50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8) 룩셈부르크¹¹⁾

룩셈부르크는 임신, 출산, 만 2세까지의 자녀의 육아기간 동안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건강검진을 모두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건강검진은 임신부가 최소한 5번의 산과 및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첫 번째 검진은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소속 국가에서 출산혜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룩셈부르크의 고용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10)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13&langId=en&intPageId=4575>, 검색일자: 2021. 8. 1.; Csalad, <https://csalad.hu/tamogatások/anyasági-tamogatás>, 검색일자: 2021. 8. 1.

11)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0&langId=en&intPageId=4675>, 검색일자: 2021. 8. 1.; Guichet,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famille/parents/allocation-naissance/allocation-naissance.html>, 검색일자: 2021. 8. 1.

출산지원금은 산전, 출산, 산후 단계로 나누어 총 3회에 걸쳐 지급되는데, 각 단계당 €580.03씩 지원받으며 이를 합산하면 총 €1,740.09이다. 산전 단계와 출산 단계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산후 단계는 자녀가 2세 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산전 단계의 지원금은 아이를 출산 시 출산 단계의 지원금과 동시에 받거나, 혹은 마지막 산전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에 받을 수도 있다.

9) 아일랜드¹²⁾

아일랜드는 의료 카드 소지자(medical card holder)를 대상으로 아일랜드의 Health Service Executive(HSE)에서 출생아당 €10.16를 현금 지원한다. 의료카드는 주당 수입이 가족 규모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금 수입, 저축, 투자 및 재산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의료카드 역시 HSE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0) 스위스¹³⁾

스위스는 연방(Federal)정부 수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없고, 주(Canton)정부 수준에서 출산지원금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스위스에서는 9개 주가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및 입양 지원금은 한 아이당 일시금 지원이 원칙이다. 입양의 경우 친부모는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부모는 입양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거나, 어머니가 스위스 영주권이 없으며 일시적으로만 스위스에 머물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원 단가는 주에 따라서 출생아당 CHF1천(€921)에서 CHF3천(€2,763) 사이의 금액을 지원한다. 총 9개 주 중에서 8개 주는 입양 아동에 경우 입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1) 에스토니아¹⁴⁾

에스토니아에서는 아이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생아당 €320를 일시금으로

12) Citizensinformation,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health/medical_cards_and_gp_visit_cards/medical_card.html, 검색일자: 2021. 8. 1.

13)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 InterNations, <https://www.internations.org/go/moving-to-switzerland/working/its-all-about-family-extra-benefits-in-switzerland>, 검색일자: 2021. 8. 1.

14)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 Ministry of Social Affairs, <https://www.sm.ee/en/family-benefits-0>, 검색일자: 2021. 8. 1.

지원한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출생아당 €1천를 지원한다. 입양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입양아당 €320를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단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입양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12) 슬로바키아¹⁵⁾

슬로바키아는 아이를 출산하고,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출산모 및 아이의 아버지가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산모가 임신 4개월부터 출산까지 산부인과 전문의의 예방검진을 월 1회씩 받지 않거나, 출산 후 의사의 적절한 지시 없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슬로바키아는 출생순위별로 차등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첫째아부터 셋째아 경우에는 출생아당 €829.86씩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151.37씩 지급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에 €75.69씩 추가 지급된다.

13) 리투아니아¹⁶⁾

리투아니아는 부모(혹은 양부모) 중 한명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하고 리투아니아 거주자로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아(입양아도 포함)당 €440(=11×BSB)씩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한 아이당 월 €160(=4×BSB)씩 지급하며 출생부터 2세까지 지원된다. 이때 BSB란 Basic Social Benefit을 의미하며 리투아니아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월 €40로 지정하였다.

14) 프랑스¹⁷⁾

프랑스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이 일정 상한 수준을 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만 출산

15)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 IOM MIGRATION INFORMATION CENTRE, <https://www.mic.iom.sk/en/social-issues/social-support-benefits/430-childbirth-allowance-2.html>, 검색일자: 2021. 8. 1.

16)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 Renkuosilietuva, <https://www.renkuosilietuva.lt/en/lumpsum-child-benefit-payable-for-each-new-born-child-/>, 검색일자: 2021. 8. 1.

17) CLEISS,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검색일자: 2021. 8. 2.

지원금을 지원한다. 소득의 상한가는 가족 내 자녀의 수와 태어날 아이의 수에 따라 달라 지는데 소득의 상한가는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일 때 더 높아진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9년 가정의 연간소득은 한 명의 출생아를 기대하고 있는 외벌이가정의 경우에는 €3만 2,45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4만 2,89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아당 €953.03씩 지급하며, 20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906.05를 지급한다. 어머니는 임신 후 첫 14주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15) 체코¹⁸⁾

체코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비(family Living Minimum)의 2.7배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두 부모가 존재하고 한 명의 출생아를 기대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소득수준의 상한가는 CZK2만 817(=2.7× CZK7,710)이며, 한부모가정에 한 명의 출생아를 기대할 경우 소득수준의 상한가는 CZK1만 3,176(=2.7×CZK4,880)이다. 아이의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조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출생아 친부모의 출산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의 단가는 첫째아의 경우 CZK1만 3천(€495), 둘째아의 경우에는 CZK1만(€381)의 수준으로 지급한다.

16) 폴란드¹⁹⁾

폴란드는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10주차부터 의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센터에 건강검진 내역서를 제출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특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만 출산지원금이 지원되는데, 가정의 한 사람당 소득이 PLN1,922(€422) 수준 이하인 가정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출생아당 PLN1천(€219)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18)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6&langId=en&intPageId=4471>, 검색일자: 2021. 8. 2.;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2021)).

19)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4&langId=en&intPageId=4718>, 검색일자: 2021. 8. 2.; Migrapolis, <https://www.migrapolis.pl/en/thematic-section/child-in-poland/family-benefits-after-the-child%E2%80%99s-birth>, 검색일자: 21.08.02.

17) 슬로베니아²⁰⁾

부모 중 한 명이 슬로베니아에 영구 또는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용품 구매를 위한 €350의 출산지원금을 일시금(현금)으로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일 60일 전에 신청하거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양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 스페인²¹⁾

스페인인 다태아 출산을 통한 출생아 혹은 입양아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적으로 스페인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2명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혹은 2명의 입양아) €3,800, 3명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혹은 3명의 입양아) €7,600, 4명 이상의 다태아(혹은 4명 이상의 입양아)의 경우 €1만 1,400를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대가족이거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1천의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19) 이스라엘²²⁾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순위별 차등적으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아는 1,778NIS, 둘째아는 800NIS, 셋째아 이상은 533NIS 수준으로 지원한다.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는 8,888NIS, 세쌍둥이는 1만 3,332NIS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1명의 출생아당 4,444NIS씩 추가 지원한다. 임신 22주차 이후 사산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지원금이 지급된다.

20)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8&langId=en&intPageId=4773>, 검색일자: 2021. 8. 2.; InfoTujci, <https://infotujci.si/en/integration-into-slovenian-society/marriage-birth-and-parenting/birth-of-a-child/>, 검색일자: 2021. 8. 2.

21)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9&langId=en&intPageId=4790>, 검색일자: 2021. 8. 4.; SeguridadSocial, <https://www.seg-social.es/wps/portal/wss/internet/Trabajadores/PrestacionesPensionesTrabajadores/10967/33761#33760>, 검색일자: 2021. 8. 4.

22) Kol Zchut, https://www.kolzchut.org.il/en/Maternity_Grant, 검색일자: 2021. 8. 4.

4.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가. 경제사회 환경에 관한 주요 쟁점

첫째,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과의 중복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혜대상이 동일하며 양육부담 경감이 목적인 유사사업으로는 아동수당,²³⁾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²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²⁵⁾이 있고, 육아휴직 등과도 수혜의 연관성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영아수당 지원사업과도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의미에서는 유사한 사업이며, 바우처가 현금의 형태로 일시금이 아니라 12개월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된다고 하면 영아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바우처의 영아수당적인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유사성 및 중복성이 매우 높다. 현재 97%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동일한 성격인데, 중앙정부의 축하 바우처 지급과 지자체의 기존 출산지원금을 중복 수혜 가능하게 하여 지역별 편차를 더욱 가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축하 바우처 도입과 더불어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통합 및 조정에 대한 정책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개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과 사업이 유사하며 수혜대상이 중복된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추가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출생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지자체 사업과의 조정이 불충분할 경우 지역적 편차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바우처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와 더불어 지자체 기존 사업과의 조정을 통해 지역적 편차를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2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본 사업의 사업대상인 12개월 미만 아동(만0세반)에게는 2021년 기준 기본보육 48만 4천원, 야간 48만 4천원, 24시 72만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

25)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미이용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본 사업의 사업대상인 12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보육료 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 불가)

셋째, 인구구조 및 출산을 변동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의 위험성 검토가 요구되는데, 본 사업의 경우 재정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타 유사한 법정지출의 확대가 전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 사업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주요 쟁점

첫째, 본 사업의 수혜대상은 전국의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예비)부모가 고소득층일 경우에도 여전히 바우처 지급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소득발생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고급재 소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책 목표와는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출생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가구의 추가적인 부담은 주로 출산용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둘째아나 셋째아의 경우 작아지게 된다. 둘째아 이상의 자녀에 대한 평균적인 양육비 부담도 첫째아보다는 작게 분석되고 있는 것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 출산지원금과의 조정이 불충분할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출산을 제고효과 측면에서는 다자녀 출산에 따른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셋째, 본 사업은 일시금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방식으로서 바우처 지급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카드사용 모니터링 등 운영비, 경상비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현금 지급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바우처의 사용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바우처의 이용 가능한 범위는 출생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관리(마사지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정도로 최대한 포괄적으로 범위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우려하여 산후조리원 지원은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바우처 사용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바우처 사용의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로도 모한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용처 제한에 대한 정책설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 정책과의 정책조합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비용-효과성에 관한 주요 쟁점

동 사업은 축하 바우처 지급 시점에 출산율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의 편익과 비용 대비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지표 수립이 어렵고 비용 대비 정책효과성을 명확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정책성 분석을 토대로 정책설계에 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의 효과성과 비용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추진 계획서상에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사업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서 제시하였다. 성과지표의 정량적 수립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정책목표가 양육비 부담 완화이며 사업의 기대효과로 출산율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설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과지표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추가로 발생 가능한 비용과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총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비용으로 전담 콜센터 운영, 원스톱 창구 마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출생아 수 변화로 인한 총사업비 변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본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사업의 목표인 출산 및 양육부담 개선 효과와 출산율 및 출산의향 개선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이 일시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자녀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가구소비 증가에 따른 가계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목표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출산가구의 양육부담 해소는 근본적으로 초저출산 시대의 출산율 제고와 출산의향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에 의거하기 때문에 출산율 및 출산의향 개선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지급액으로 책정된 200만원이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애 초기 의료서비스 및 양육비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본 사업 외에 기존 양육비 지원정책과 영아수당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Ⅲ. 경제사회 환경 분석

1. 경제사회 여건 분석

가. 경제·사회 문제 파악의 적절성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을 경험하는 등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는 등 인구구조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양비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성장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구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유사사업 및 관련 사업과의 중복 문제

동 사업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유인의 제공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가족정책으로서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사업과 신규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사업 목표와 수혜대상을 고려할 때 성격이 매우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정책 및 다양한 현물서비스도 사업의 실질적 목표와 수혜대상이 유사한 사업이다. 특히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정책과는 유사성이 매우 크다. 바우처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1년 내에 소진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나누어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과는 실질적으로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바우처를 일시금이 아니라 12개월 월 단위로 분할하여 쓰도록 한다면 월 약 17만원을 지급하는 0세아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사업이다. 0세아에 대한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1년 일시불로 지급한다면 360만원의 축하 바우처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비용추계 부문에 수록하였듯이, 동 사업으로 인한 가구의 추가 양육부담 완화는 한계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정책의 수혜대상이 주로 0~5세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완화보다 0세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유사중복사업으로 보다 주요하게 주목하여야 할 것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사업이다. 동 사업은 현재 233개의 지자체(광역지자체 14개, 기초 지자체 219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장려금과 직접적인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경기, 전북을 제외한 14개 지자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19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자녀 수의 증가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증가하는 다자녀 유인구조를 가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첫째 아에게는 200만원 미만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히 출산아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셋째아 이상부터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개)

구분	출산지원금 정책 시행 중인 지자체 수	전체 지자체 수
광역	14	17
기초	219	226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약 3,822억원이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이 약 1,606억원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약 830억원 대비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의 출산지원금 예산이 약 456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152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원도의 경우 첫째아 이상에게 1,44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48개월간 나누어 지급하고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일시금 성격의 출산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다. 충남도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37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으며, 2018년 예산액 28억원 대비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의 출산지원금 역시 강원도와 유사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키움수당 240만원을 24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성격의 출산장려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오히려 영아수당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 중 재정지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출산축하금의 성격보다는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적인 성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광역자치단체	83,004	110,059	160,659
기초자치단체	143,967	172,595	221,582
총계	226,971	282,654	382,241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226개 지자체 중 103개 지자체(46%)가 1년 이상에 걸친 분할금의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 일부는 첫째아나 둘째아 등 지원금 수준이 낮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커짐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재정상의 이유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분할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대체로 2~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향이 크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강원 정선군, 전남 진도군, 충남 금산군, 충남 보령시 등)도 있다. 이렇듯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영유아 수도 적은 군지역이 많은데, 이는 이들 지역의 출산지원금이 인구유입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된다.

〈표 III-3〉 출산지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액

(단위: 만원, 개, 백만원)

분류		광역			기초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첫째	출산지원금액(만원)	10	1,440	136	5	100	104
	건수	3	1	-	1	1	-
	예산평균(백만원)	3,447	45,580	10,711	510	1,410	969
둘째	출산지원금액(만원)	20	1,440	174	5	1,400	192
	건수	2	1	-	1	1	-
	예산평균(백만원)	1,875	45,580	10,711	510	1,597	969
셋째	출산지원금액(만원)	30	1,440	217	10	3,000	413
	건수	1	1	-	4	1	-
	예산평균(백만원)	3,570	45,580	10,711	53	2,491	969
넷째	출산지원금액(만원)	30	1,440	217	10	3,000	573
	건수	1	1	-	4	2	-
	예산평균(백만원)	3,570	45,580	10,711	53	2,044	969
다섯째	출산지원금액(만원)	30	1,440	217	10	3,000	658
	건수	1	1	-	4	6	-
	예산평균(백만원)	3,570	45,580	10,711	53	1,431	969

주: 1. 평균항목의 출산지원금액(만원)은 해당 출생순위별 출생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평균액을 의미하며, 예산평균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예산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2020. 5.)」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분할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분할되어 지급되는 것은 축하금의 성격이 크고, 1년 이상의 기간 혹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것은 출산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수당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54%의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일시금 혹은 분할금이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부 분할 지급되는 축하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46%의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수당적 성격이 강하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의 경우 54% 기초지자체의 축하금 성격의 출산지원금과 직접적으로 수혜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축하 바우처 사업의 도입과 함께 중복적인 지자체의 출산축하장려금은 조정 및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아동수당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하면서 동경도가 자체로 수행하던 아동수당제도가 정비된 사례가 있다.

〈표 III-4〉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급유형별 현황

구분		광역		기초		전국
일시금		10		99		109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3	5	11	56	61
	수당적 분할금	2		45		
일시금+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0	0	20	75	75
	수당적 분할금			55		

주: 1. 동일한 시군구에서 두 가지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는 곳이 있음. 총 12곳(대구광역시, 강원 삼척시, 경남 밀양시, 경남 합천군, 경북 구미시, 경북 군위군, 경북 안동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이 해당하며, 대부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의 사업명으로 일시금 지급방식과 분할금 지급방식으로 사업을 나누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충북옥천의 경우는 출산축하상품권(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 분할금은 1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될 경우 수당적 분할금으로, 1년 이하 혹은 12회 이하(기한을 파악할 수 없고 지급 횟수만 표기된 지자체의 경우) 지급일 경우 일시금적 분할금으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2020. 5.)」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III-5〉 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수와 비중

(단위: 개, %)

구분	일시금 ¹⁾	분할금 ²⁾	일시금+분할금 ³⁾	계
계	41 (16.9)	55 (22.6)	72 (29.6)	168 (69.1)
광역	1 (5.9)	4 (23.5)	-	5 (29.4)
기초	40 (17.7)	51 (22.6)	72 (31.9)	163 (72.1)

주: 1. 비율=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수/전체 지방자치단체 수

1) 일시금은 1회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2) 분할금은 출산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3) 일시금+분할금은 1회의 일시금 지급과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금지원 방식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2020. 5.)」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III-6〉 출생순위별 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건 수 및 평균 예산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200만원 이상 지자체 평균 예산 (2020)	출산지원금 지원 지자체 평균 예산 (2020)
전체 (광역+기초)	52 (21.4)	94 (38.7)	138 (56.8)	162 (66.7)	168 (69.1)	1,777	1,567
광역	2 (11.8)	3 (17.6)	5 (29.4)	5 (29.4)	5 (29.4)	22,114	10,711
기초	50 (22.1)	91 (40.3)	133 (58.8)	157 (69.5)	163 (72.1)	1,154	969

주: 1. 비율=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수/전체 지방자치단체 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2020. 5.)」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Ⅲ-7〉 2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액

(단위: 만원, 개, 백만원)

분류		광역			기초		
		최소	최대	평균 ¹⁾	최소	최대	평균 ¹⁾
첫째	출산지원금액(만원)	50	1,440	346	10	700	157
	건수	1	1	-	8	1	-
	예산평균(백만원) ²⁾	6,207	45,580	22,114	720	1,410	1,154
둘째	출산지원금액(만원)	120	1,440	424	20	1,400	269
	건수	2	1	-	1	1	-
	예산평균(백만원) ²⁾	21,414	45,580	22,114	144	1,596	1,154
셋째	출산지원금액(만원)	200	1,440	496	45	3,000	567
	건수	1	1	-	1	1	-
	예산평균(백만원) ²⁾	6,207	45,580	22,114	197	2,491	1,154
넷째	출산지원금액(만원)	200	1,440	496	100	3,000	778
	건수	1	1	-	4	2	-
	예산평균(백만원) ²⁾	6,207	45,580	22,114	1,929	4,087	1,154
다섯째	출산지원금액(만원)	200	1,440	496	200	3,000	899
	건수	1	1	-	14	6	-
	예산평균(백만원) ²⁾	6,207	45,580	22,114	1,175	1,431	1,154

주: 1) 평균 항목의 출산지원금액(만원)은 해당 출생순위별 출생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평균액을 의미

2) 예산평균(백만원)은 20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예산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2020. 5.)」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 정부 개입의 적절성

지자체 수준의 출산장려금 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출산축하장려금은 출산을 제고라는 정책목표와 동시에 출산율과 무관하게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수혜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특히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의 출산장려금(기초지자체의 46%)은 출산을 제고보다는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지역 간 인구이동 효과 등으로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출산율 제고효과 측면에서는 지역적 편차가 있는 출산장려금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

려금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 지자체 중 219개 기초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고, 특히 첫째아에 대한 지원금액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131개 기초지자체(지자체의 58%)에서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은 50만원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43개 지자체에서는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자치구 지역에서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출생 순서별로 출산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다자녀 유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다수 존재하지만 이 경우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III-8〉 출산지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액

(단위: 만원, 개, 백만원)

분류		광역			기초		
		최소	최대	평균 ¹⁾	최소	최대	평균 ¹⁾
첫째	출산지원금액(만원)	10	1,440	136	5	100	104
	건수	3	1	-	1	1	-
	예산평균(백만원) ²⁾	3,447	45,580	10,711	510	1,410	969
둘째	출산지원금액(만원)	20	1,440	174	5	1,400	192
	건수	2	1	-	1	1	-
	예산평균(백만원) ²⁾	1,875	45,580	10,711	510	1,597	969
셋째	출산지원금액(만원)	30	1,440	217	10	3,000	413
	건수	1	1	-	4	1	-
	예산평균(백만원) ²⁾	3,570	45,580	10,711	53	2,491	969
넷째	출산지원금액(만원)	30	1,440	217	10	3,000	573
	건수	1	1	-	4	2	-
	예산평균(백만원) ²⁾	3,570	45,580	10,711	53	2,044	969
다섯째	출산지원금액(만원)	30	1,440	217	10	3,000	658
	건수	1	1	-	4	6	-
	예산평균(백만원) ²⁾	3,570	45,580	10,711	53	1,431	969

주: 1) 평균항목의 출산지원금액(만원)은 해당 출생순위별 출생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평균액을 의미

2) 예산평균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예산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2020. 5.)」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출산장려금의 출산순위별 출산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출산장려금 효과가 첫째아의 경우 크게 나타난다거나, 둘째아 이상의 경우 크게 나타난다는 등 혼재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전의 연구들은 출생순위가 증가할수록 출산효과가 크다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김미곤 외(2019)에 의하면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효과는 첫째아 출산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둘째아·셋째아로 가면서 출산율 제고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200만원을 넘어야 유배우자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50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첫째아 출산이 증가하며, 둘째 자녀의 출산은 250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어야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셋째아의 출산은 300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어야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아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지원금액이 적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9〉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저자	분석결과
허만형·이정철 (2011)	• 둘째 출생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책효과가 큼
박창우·송헌재(2014)	•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 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석환(2014)	•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의 효과 분석 결과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에만 지원 전보다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보다 큼 • 광역자치단체도 유사하게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보다 출산율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김미곤 외(2019)	• 유배우 여성의 출생순위별 출산율에는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첫째에서 셋째 이상으로 갈수록) 출산지원금의 효과의 크기가 감소함. 즉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이도훈 외(2020)	• 첫째에서 셋째 이상으로 갈수록 보다 출산지원금 정책의 영향이 큼 • 첫째아부터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출산율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둘째아 또는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연구진 작성

현재 주로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역 간 인구이동효과로 인해 출산율 제고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지급액 수준도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첫째아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어 출산율 제고효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역이나 출산순위에 관계없는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동시에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자체 출산지원금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정책이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 개입이 지역 간 편차와 출생순위 간 편차를 줄이지 못하고, 현재의 지역 간 편차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이 들어왔을 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출산지원금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작을 수 있기에, 지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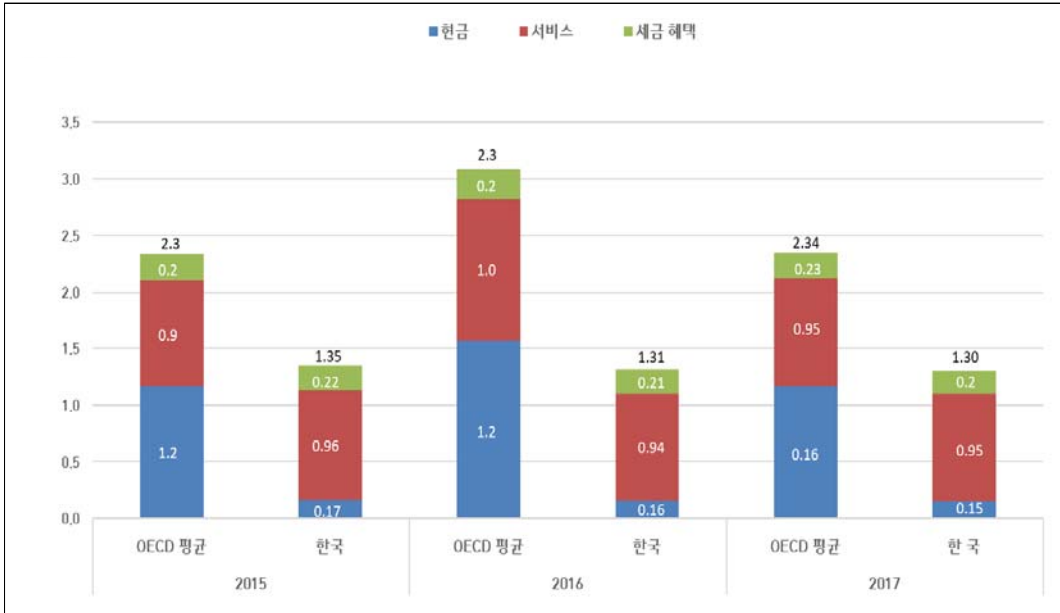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구조의 심각한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직면하여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의 평균 2.34%(2017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1.3%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성장 수준과 소득수준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재정투자가 해외 국가와 비교하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가족정책 중에서도 현물서비스 수준은 이미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도달하고 있고, 세제혜택도 OECD 회원국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특히 현금성 지원이 국제 비교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지출 중 현금지원은 1.16%, 서비스지원은 0.95%, 세제지원은 0.23%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지원은 0.15%, 서비스지원은 0.95%, 세제지원은 0.2%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복지정책은 각각 그 국가가 처한 고유한 상황과 역사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현저하게 그 발달 단계가 다를 수 있기 있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와 직접적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현금성 수당이 발달하고 있는 해외 사례의 존재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동 사업과 같은 현금성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직접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1] OECD(평균)와 한국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교(2015~2017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Public_spending_on_family_benefits"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III-10>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지출 현황(2017)

(단위: GDP 대비 %)

국가	현금	서비스	세금 혜택	계
France	1.42	1.46	0.72	3.60
Hungary	1.61	1.12	0.74	3.47
Denmark	1.32	2.08	0.00	3.40
Sweden	1.24	2.15	0.00	3.40
Norway	1.27	1.97	0.11	3.35
Luxembourg	2.35	0.94	0.00	3.30
Iceland	0.91	2.36	0.00	3.27
United Kingdom	2.12	1.12	0.00	3.23
Germany	1.08	1.25	0.84	3.17
Belgium	1.71	1.02	0.42	3.15
Estonia	2.02	0.81	0.17	3.00
Poland	2.00	0.61	0.38	2.99
Czech Republic	1.44	0.54	0.94	2.92
Finland	1.23	1.64	0.00	2.87

〈표 III-10〉의 계속

(단위: GDP 대비 %)

국가	현금	서비스	세금 혜택	계
Israel (a)	1.13	1.12	0.39	2.64
Austria	1.88	0.70	0.03	2.62
Italy	1.35	0.63	0.48	2.47
New Zealand	1.27	1.19	0.00	2.46
Switzerland	1.25	0.57	0.50	2.32
Latvia	1.35	0.87	0.01	2.23
Australia	1.40	0.70	0.00	2.10
Lithuania	0.86	0.91	0.31	2.08
Slovak Republic	1.12	0.58	0.32	2.01
Slovenia	1.18	0.66	0.00	1.85
Netherlands	0.85	0.64	0.35	1.84
Japan	0.65	0.93	0.20	1.79
Canada	1.43	0.23	0.11	1.77
Chile	0.73	1.05	0.00	1.77
Portugal	0.76	0.44	0.49	1.69
Colombia	0.34	1.32	0.00	1.66
Greece	1.30	0.32	0.00	1.62
Ireland	1.20	0.36	0.06	1.62
Spain	0.51	0.68	0.12	1.31
Korea	0.15	0.95	0.20	1.30
United States	0.07	0.56	0.46	1.08
Mexico	0.34	0.54	0.00	0.88
Turkey	0.22	0.26	0.01	0.49
OECD	1.16	0.95	0.23	2.34

자료: OECD, "Public_spending_on_family_benefits,"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검색일자: 2021. 7. 26.

2. 경제사회 영향 분석

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

동 사업은 출산 직후 200만원의 축하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동시에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과 신규 도입되는 영아수당,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정책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추가적 기여도가 작을 수 있음은 비용-효과성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현상은 매우 복잡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만혼화, 비혼화 등의 사회적 현상과 함께 혼인율이 급감하는 등 유배우자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초혼연령 상승에 의한 초산연령 상승 등으로 유배우자의 출산율 또한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40~44세 여성의 비혼율도 2015년 기준 11.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혼인건수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어, 2020년 혼인건수는 18만건에 그치고 있다.

즉 출산율 저하의 물리적 원인은 첫째, 혼인의 저하 및 만혼화 등 유배우자율의 감소와 둘째, 이미 결혼한 유배우자의 출산율 감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두 가지 측면, 즉 혼인율 감소로 인한 유배우자율의 감소와 유배우자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혼인율 감소는 구직의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정책설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면 유배우자의 출산율 감소는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소득과 관련된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유배우자의 출산율 제고 해결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기타 가족정책과 더불어 자녀 양육부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인율 감소 저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기존 문헌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과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다.

〈표 III-11〉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에 대한 기존 문헌

구분	저자(연도)	분석대상	분석결과
효과 있음	이명석·김근세·김대건 (2012)	230개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시계열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음
	이충환·신준섭 (2013)	181명의 지자체 공무원의 소속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중에 경제적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음 • 경제적 지원 정책 중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이석환 (2014)	230개의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회귀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의 효과 분석결과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제고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도 유사하게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보다 출산율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됨
	이병호·박민근 (2017)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귀분석결과 출산장려금은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음 •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난다면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도훈 외 (2020)	225개의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수준의 증가폭을 약 0.02정도의 미약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기존의 유배우, 유아녀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초기에 도입할수록(도입 시점), 지원금 규모가 클수록(지원금 규모), 첫째아부터 지급할수록(출생아 순서별 지원방식), 분할지급 혹은 분할과 일시금의 혼합 방식을 취할수록(지급방식) 출산율 제고 효과가 증대함 •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출산지원금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
	김미곤 외 (2019)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출산지원금 100만원 증가는 유배우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약 42~60명 증가시킴 • 둘째, 유배우 여성의 출생순위별 출산율에는 출생순위가 내려갈수록(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수록) 출산지원금의 효과의 크기가 감소함 • 셋째,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의 규모 차이는 일부 가임기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넷째,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어야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금액이 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때 효과가 가파르게 상승함 • 다섯째,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됨 •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위별 분석결과 출산지원금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중상위 소득계층의 출산율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미침

〈표 III-11〉의 계속

구분	저자(연도)	분석대상	분석결과
효과 없음	석호원 (2011)	서울시 25개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분석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자녀양육비용 및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 제고 및 육아시설 확충, 그리고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이 주 출산연령인 20대 중·후반과 30대의 출산율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민곤·천지은 (2016)	서울시 25개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인 자치구별 소득수준,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수준, 의료시설수준 등의 변수들이 출산율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안정혜·유동우 (2019)	71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회귀 분석결과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을 고려하면 소득효과 보다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 정책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설정한 보육시설 수, 여성 임시·일용 근로자 수와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가 둘째 출생아 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유진·김상헌·김나영 (2020)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인당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이 1인당 출산장려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호용 (2020)	호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결과 출산장려금 도입 여부와 출산장려금 평균 지원액은 조출생률(지역별 출생아 수/지역별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출산장려금이 출생률에 미치는 효과의 상당 부분이 정책의 직접적 효과라기보다는 사회경제학적 변수 혹은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 추세에서 비롯되고 있었음
	허만형 (2020)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세 유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구 단위의 출산장려금 효과는 거의 없고, 시 단위는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에 이르기까지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남. 군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함

나. 사회적 의견수렴의 충분성

그동안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동 사업에서 사회적 의견수렴 범위는 크게 (1)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예비 부모 (2) 재원부담, 사업조정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일선 전달체계에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3)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문가 의견수렴은 2021년 6월 10일 개최된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건강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을 고려한 생애초기 집중투자 및 부모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이 주요의견으로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영아기집중투자 국회토론회 결과 보고(2021. 6. 11.)」 제출자료). 이하에서는 예비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예비 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소비지출 조사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먼저 20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금액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 양육에 있어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7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III-12〉),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물품 구입비용만 해도 4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III-13〉). 관련하여 “(연도고정효과가 통제되는 경우)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어야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는 연구도 있다(김미곤 외, 2019: 297).

〈표 III-12〉 자녀 양육지원 부족 인식

(단위: 명, %)

구분	자녀 양육지원 부족 인식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계	
	N	비중	N	비중	N	비중	N	비중	N	비중
서비스지원 부족	481	31.4	821	53.6	203	13.3	27	1.8	1532	100.0
현금지원 부족	439	28.7	769	50.2	261	17.0	63	4.1	1532	100.0
시간지원 부족	670	43.7	664	43.3	162	10.6	36	2.4	1532	100.0
건강의료지원 부족	345	22.5	701	45.8	431	28.1	55	3.6	1532	100.0
육아인프라 부족	514	33.6	716	46.7	265	17.3	37	2.4	1532	100.0

자료: 김미곤 외,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2019, p. 384.

〈표 III-13〉 아동 물품 구입 비용

(단위: 원)

품목	추정가	추정합계
영아용 아기침대	400,000	4,050,000
침구	150,000	
포대기	100,000	
젓병 소독기	200,000	
젓병, 빨대컵, 분유케이스 등	200,000	
이유식 식기 및 용기세트	200,000	
옷장 및 서랍장	300,000	
유모차 및 관련 물품(레인커버, 파라솔 등)	1,300,000	
영아용 카시트	600,000	
아기띠 및 관련 물품(위머 등)	400,000	
아기식탁의자	200,00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조사 결과(2021)」, 제출자료

지원시기의 문제는 영아 연령별 지원금액에 대한 선호에 대한 검토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표 III-14〉에 따르면, 양육수당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감소하며 적정금액은 만 0세부터 3세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적정금액에 있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지원대상인 만 0세에서 인식되는 적정금액이 47.8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4〉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및 적정 금액

(단위: %(명), 점, 만원)

구분	만족도							적정 금액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평균	(수)
전체	6.9	23.6	32.7	34	2.7	100.0(1,013)	3.0	43.1	(319)
영유아 구분									
영아	3.6	25.5	33	35.3	3.1	100.0(863)	3.1	43.7	(245)
유아	20.6	15.8	31.4	28.6	2.8	100.0(145)	2.7	35.0	(51)
$\chi^2(df)$	75.0(4)***								
생활연령									
0세	2.1	18.8	32.5	44	2.5	100.0(413)	3.3	47.8	(86)

〈표 III-14〉의 계속

(단위: %(명), 점, 만원)

구분	만족도							적정 금액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평균	평균	(수)	
1세	3.7	25.2	35.4	32.8	2.9	100.0(346)	3.1	45.0	(98)	
2세	7.9	46.8	28.8	15.2	1.2	100.0(109)	2.6	37.2	(61)	
3세	16.6	13.7	37.3	28	4.3	100.0(54)	2.9	27.7	(16)	
4세	19.3	18.9	28.9	27.5	5.3	100.0(44)	2.8	40.8	(16)	
5세 이상	24.5	15.2	28.4	29.8	2	100.0(47)	2.7	35.5	(19)	
$\chi^2(df)$	142.8(20)***									
모취업 여부										
취업	12.1	18.8	33.6	33	2.4	100.0(212)	2.9	45.9	(80)	
휴직중	7.7	19.1	33.9	34.9	4.4	100.0(139)	3.1	39.5	(33)	
미취업	5	26.2	32.2	34.1	2.4	100.0(660)	3.0	42.5	(205)	
모부재 등	-	26.4	-	73.6	-	100.0(2)	3.5	20.0	(1)	
$\chi^2(df)$	21.2(1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6	32.2	36.5	26.2	1.5	100.0(45)	2.9	42.8	(19)	
200~249만원	4.8	28	35.1	30.5	1.6	100.0(76)	3.0	37.6	(26)	
250~299만원	1.3	30.8	39	28.9	-	100.0(100)	3.0	43.2	(33)	
300~349만원	7.7	24.5	32.5	32.4	3	100.0(193)	3.0	51.5	(63)	
350~399만원	3.3	24.9	29	40.4	2.3	100.0(118)	3.1	47.2	(33)	
400~499만원	5.9	24	25.1	41.8	3.3	100.0(171)	3.1	38.3	(52)	
500~599만원	7	18.4	40	31.9	2.8	100.0(133)	3.1	40.7	(35)	
600~699만원	5.7	19.6	34.8	34.4	5.4	100.0(59)	3.1	46.2	(16)	
700만원 이상	17.3	18	30	31.2	3.4	100.0(115)	2.9	37.9	(41)	
모름/무응답	-	31.9	31.9	36.2	-	100.0(3)	3	30.0	(1)	
$\chi^2(df)$	57.0(36)***									
2015년 조사	4.8	30.8	37.5	25.9	1.0	100.0(1,022)	2.9	33.4	(3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응답 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현재 받음'으로 응답한 경우임.

3.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2018. 11., pp. 611~612.

출산지원금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바우처나 현물보다는 현금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5〉). 동 사업은 지원방식을 바우처로 정하고 있으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유흥·사행업소 등에 대한 제한 외에는 용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당의 용도를 제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나타나 영아수당의 지원대상인 출산아동이 아닌 ‘수혜대상 외 수혜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평가항목에 살펴볼 바와 같이 양육과 소비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양육부담을 경감한다는 영아수당의 사업목적에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5〉 출산지원금 지원 시 선호 방법

(단위: 명, %)

구분	계(명)	비중	누적 %
현금	868	72.8	72.8
바우처나 현물	325	27.2	100.0
계	1,193	100.0	

자료: 김미곤 외,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2019, p. 394.

종합하자면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중앙정부를 통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원 확대, 지원시기 및 지원방식 측면에서 예비 부모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부분을 검토한다. 동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2021년 2월 23일 동 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비율을 협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회의가 있었으며 2021년 3월 19일부터 동년 4월 5일까지 동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327, 2021. 3. 19.)가 있었다. 이후 2021년 6월 11일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영아수당, 첫 만남이용권²⁶⁾) 지자체 정책추진 협의회 제1차 회의 이후 후속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지자체 소요예산(’22년) 및 출산지원금 지급계획 조사’(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873, 2021. 7. 7.)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

26)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의미한다.

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국비보조비율 설정과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출산지원금 추진에 따른 기존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조정이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지방비를 공제한 국비 1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비보조비율과 기존 사업 조정 문제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보조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면서 기존 출산지원금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과 사업에 대한 수요가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3.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향후 재정부담 검토

인구저위 가정하에 동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지출소요액은 2022년 약 2,264억원으로 2025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약 9,72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여 출산아 수가 인구전망치만큼 증가하지 않고 여전히 추세 하락할 때는 연단위 소요액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방정부 부담은 2022~2025년 4개년도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지원 부문의 중앙정부 총재정지출소요액은 2020년도 약 38.9조원으로, 2018년도 28.6조원에 비해 2년간 약 10조원 정도 증가하였다. 영유아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출 소요액이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측면은 있으나,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법정지출의 수혜대상이 되는 영유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단년도 재정부담은 전체 중앙정부 영유아지원 부문의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전체 영유아 지원 부문 재정지출의 상승률(2019~2020년도) 약 12%를 감안할 때 재정부담에의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6〉 변경된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263억원	2,372억원	2,484억원	2,604억원	9,723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260억원	2,369억원	2,481억원	2,601억원	-
① 출생아 수 ¹⁾	243천명	255천명	267천명	280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2,602억원	2,731억원	2,859억원	2,999억원	11,191억원
계(1+2)	4,865억원	5,103억원	5,343억원	5,603억원	20,914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저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III-17〉 영유아 지원 부분 재정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기준 보조율(%)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국비 [추경]	지방비 [추경]	국비 [추경]	지방비 [추경]	국비	지방비
【일반회계】		28,553,654 [28,628,990]	11,177,028 [11,196,549]	34,505,719 [34,748,926]	13,409,182 [13,599,288]	38,957,973	16,515,548
지역아동센터 지원	30/50	156,952	169,635	161,786 [165,691]	175,147 [179,448]	176,218	190,872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50	122,572	132,564	125,995	136,483	135,948	147,381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30/50	4,562	4,896	4,562	4,912	4,562	4,912
- 특수목적형 지원	30/50	2,379	2,531	2,379	2,531	2,552	2,531
- 토요일영 지원	30/50	2,074	2,305	2,074	2,305	2,074	2,305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0/50	23,495	25,304	24,906	26,944	27,208	29,542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30/50	1,520	1,651	1,520	1,651	1,520	1,651
-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운영	30/50	350	385	350	392	-	-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0/50	-	-	-	-	2,354	2,55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0/50	17,720	20,347	17,361	19,679	17,361	20,870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30/50	410	430	3,516	3,939	8,005	10,714

〈표 III-17〉의 계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기준 보조율(%)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국비 [추경]	지방비 [추경]	국비 [추경]	지방비 [추경]	국비	지방비
아동수당지급	50/70 ±차등보조10	707,838	256,840	2,161,685	804,057	2,282,774	793,312
- 아동수당 급여지급	50/70 ±차등보조10	699,984	252,849	2,161,185	803,810	2,282,274	793,064
- 아동수당 제도구축	50/70	6,748	3,445	-	-	-	-
- 지자체 사업지원비	50/70	1,106	546	500	247	500	248
영유아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25~45/55~75	3,257,470	1,582,753	3,405,282	1,692,446	3,416,221	1,614,28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5~45/55~75	1,089,137	556,085	892,330	463,795	815,717	405,91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선 50/70 주거지원 50/80	-	-	1,692	703	2,828	968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50/70	-	-	1,259	468	1,097	535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50/80	-	-	931	235	1,731	43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50/70 ±차등보조10	-	-	9,808	3,426	21,423	7,001
시간제 보육지원 -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지원	50	9,474	9,474	10,805	10,805	16,200	16,300
-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지원	50	9,474	9,474	10,805	10,805	16,200	16,200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50	150	150	100	100	100	10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0/50	4,196	5,127	4,442	5,030	5,377	6,316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20/50	2,757	2,947	2,758	2,949	2,845	3,041
- 상담전문요원	20/50	311	332	316	338	325	347
- 부모교육 지원	20/50	1,128	1,848	1,368	1,743	2,208	2,928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48	1,132	1,227	1,132	1,227	1,707	1,849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50	1,131	1,131	852	852	1,229	1,229
공공형어린이집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6.4	60,136	46,488	62,049	50,484	62,049	50,48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0~30/40~60	987,744 [997,788]	975,962 [985,886]	1,186,829	1,149,449	1,424,169	2,803,48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30/40~60	615,476	608,134	694,528	672,653	791,523	766,593

〈표 III-17〉의 계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기준 보조율(%)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국비 [추경]	지방비 [추경]	국비 [추경]	지방비 [추경]	국비	지방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30/40~60	356,945 [366,989]	352,687 [362,611]	476,838	461,819	612,456	593,166
- 어린이집 운영지원	10~30/40~60	15,323	15,140	15,463	14,976	20,190	19,55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50	11,846	13,724	9,506	10,969	7,921	8,912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30/50	6,130	7,073	5,111	5,836	4,985	5,603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0/50	5,136	5,970	2,749	3,260	2,350	2,666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30/50	580	681	1,646	1,873	586	643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50/80	6,376	2,027	9,007	3,050	7,989	2,819
- 영유아검진	50/80	1,110	365	1,357	467	1,488	463
- 의료급여 일반검진	50/80	5,266	1,662	7,650	2,583	6,501	2,356

자료: 보건복지부, 「주요과제별 예산통계: 영유아 지원」, 제출자료

나. 안정적 자원조달 가능성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지역 보조율 30%, 그 외지역 보조율 5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평균 보조율 약 47%수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영유아지원 부문 기타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다함께 돌봄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기준보조율이 30/50으로 분담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현물제공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금성 수당인 아동수당의 경우 기준보조율은 50/70으로 중앙정부의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대체로 현물성 사업이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대다수의 실질적인 사무를 지방이 제공하며, 수요예측 및 공급, 관리와 감독의 주체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 책임을 더욱 부여하는 동시에 자원분담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금성 수당의 경우는 지방의 역할이 현물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고, 전국적 기준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정

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14개 광역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1,607억원, 219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2,216억원으로 총지자체 출산장려금으로 약 3,823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평균 보조율 약 47%를 가정하였을 때 2022년 지방비 부담예상액이 약 2,602억원이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별로는 차이가 좀 있겠으나,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정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 지방비 부담분이 자체 사업비의 축소로 상쇄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표 III-1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전년 대비 증감
광역	83,004	110,059	160,659	46.0
기초	143,967	172,595	221,582	28.4
합계	226,971	282,654	382,241	35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 포함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2020년도 예산은 광역 약 3,961억원, 기초 4,046억원으로 총 8,007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강화로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순증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2022년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2단계 재정분권이 예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수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증가, 추가 세수실적으로 인한 지방교부세분 증가등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여력이 현 재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기능 이양 등으로 지방재정부담분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안)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분을 감안하더라도 약 3조 1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지원 현황과 예산

(단위: 백만원)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전체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광역	4	3,098	7	9,993	16	6,955	21	8,581	48	258,439	66	105,593	37	3,388	199	396,047
기초	27	1,424	70	6,311	140	2,890	416	11,428	741	277,775	572	103,463	118	1,336	2,084	404,627
합계	31	4,522	77	6,304	156	9,845	437	20,009	789	536,214	638	209,056	155	4,724	2,283	800,674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다.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현재의 출산율 추세를 놓고 보았을 때,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금의 지급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소요가 증가하겠으나, 현재 통계청 인구 저위수준의 재정소요 전망에서 중위수준으로의 전망치로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다. 김미곤 외(2019)에서는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하고 약 50%의 가임기를 혼인상태에서 보낸다고 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2~0.0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III-20〉 인구저위 기준 적용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263억원	2,372억원	2,484억원	2,604억원	9,723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260억원	2,369억원	2,481억원	2,601억원	-
① 출생아 수 ¹⁾	243천명	255천명	267천명	280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2,602억원	2,731억원	2,859억원	2,999억원	11,191억원
계(1+2)	4,865억원	5,103억원	5,343억원	5,603억원	20,914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저위)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설명자료(영아수당·첫 만남 이용권)」, 2021. 6., p. 7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

〈표 III-21〉 인구중위 기준 적용 총사업비(2022~20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 중앙정부(1)+(2)	2,790억원	2,902억원	3,013억원	3,116억원	11,821억원
(1) 지자체 보조 (①×②×③)	2,787억원	2,899억원	3,013억원	3,113억원	-
① 출생아 수 ¹⁾	300천명	312천명	324천명	335천명	
② 지원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③ 평균보조율 ²⁾	47%	47%	47%	47%	
(2) 민간위탁 보조 ³⁾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2. 지방정부	3,213억원	3,341억원	3,470억원	3,588억원	13,612억원
계(1+2)	6,003억원	6,243억원	6,483억원	6,704억원	25,433억원

주: 1)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적용

2) 평균보조율 47%(서울 30%, 지방 50%)

3) 민간위탁(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조: 바우처 운영관리비(인건비 및 사업홍보비)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IV.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가. 사업목표의 명확성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구체화된 사업목표(objectives)는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목표의 명확성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목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goals)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사업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업목적(goals)과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로부터 사업목표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을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만족도’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1)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2)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개의 사업목적은 사업목표로 명확하게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는 구체화된 사업목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사업목적 역시 출산을 제고, 아동발달 환경 조성과 같은 더욱 궁극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에서 제시된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고 있고 ‘만족’의 내용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목적-사업목표-성과지표 간 위계는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을 고려하여 인과 경로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성과지표의 적절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사업목표의 명확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의 달성 가능성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목

적은 (1)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2)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이라는 사업목적의 달성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은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국적 출산지원금 제공은 동 사업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지역 간 출산지원금 차등을 완화하고 지방의 출산지원금 정책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의도하면서도 출산지원금의 지역 간 차이 자체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의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 및 평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나아가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기존의 출산지원금 지원정책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조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 지자체 출산지원정책과의 조정과 정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차등 완화라는 사업목적의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있어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그 자체로는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아기 투자가 아동건강과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도 발견된다(Milligan & Stabile, 2009; 2011). 다만 기존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사업 및 육아휴직 급여, 영유아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지원, 영아수당 및 지자체의 별도 장려금 및 수당성 지원금 등의 지원규모 전체를 합산하여 보았을 때,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기여하는 경제적 부담의 완화부분이 적정한가 아니면 과다한가의 문제는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동 사업의 상위계획으로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2020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0. 12. 15.).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은 동 계획의 첫 번째 전략인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 해당하며, 영역별 핵심 과제인 ‘④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 반영되어 있다.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에서는 기존의 가족중심의 정책이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아동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아동을 개별적인 권리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인식하면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포함하는 ‘첫 만남 꾸러미’가 제시되고 있다. 이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자료 분석’의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수혜대상의 적절성

가. 수혜대상의 명확성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수혜대상은 전반적으로 볼 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명확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인 영유아의 직접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인을 영유아의 보호자로 정하고 있다. 이때 임신부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칙²⁷⁾으로 하며 임신부 사망에 따라 임신부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등이 카드를 발급받고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수요에 대한 검토

수혜대상 측면에서 볼 때 동 사업은 출생아 즉 출생아 보호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서 수요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사회적 의견수렴의 충분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비 부모들의 첫 만남 축하

27)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에는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한다.

바우처에 대한 선호가 동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자녀양육에 있어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78.9%에 달하고 아동 출산 시 필요 물품 구입비용만 해도 4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어야 유배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점에서 출산지원금 200만원의 지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시기에 있어서는 양육수당 적정금액이 0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사용기한을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사업대상 외 수혜 가능성

동 사업은 사업의 수혜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대상 외 수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지원방식을 바우처로 정하고 있으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유흥·사행업소 등에 대한 제한 외에는 용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강한 현금 지원의 성격으로 인해 수당의 용도를 제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부모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구매에 바우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가구에서 연 200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서 출산과 관련된 육아용품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출산 관련 물품구입비 금액 등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양육과 소비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양육부담을 경감한다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원됨에 따라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 가구의 수입유모차, 고급분유 등 사치재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들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효과나 혹은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에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수혜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미곤 외(2019)의 연구에서는 최상위 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여성의 출산율에는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추진방법의 적절성

가. 추진방법 설계의 적절성

고소득층의 경우 동 사업으로 인한 양육부담의 완화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출산유인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수혜대상이 보편적으로 설계된 것은 수혜대상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을 피하면서, 고소득층에게도 어느정도 출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계층의 한계점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바우처로 설계한 것은 현금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바우처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할 때는 사용처를 보다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육아용품에 한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및 전자상거래(상품권)를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으로, 사용처를 일반 가구의 소비재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현금지급방식과 보다 유사한 바우처 설계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존재한다.

즉 동 사업은 형태상으로는 현금지급과 다르지만 사용처의 제한이 적고 일반 가구 소비재에 대해 광범위한 사용처를 허용함으로써 가구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아 현금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바우처 지급으로 인한 효용성의 손실과 후생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다. 바우처의 정책목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증진인 경우는 바우처로 인한 후생손실과 효용성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우처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출산용품이나 출산 관련 서비스의 소비증진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의 지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하면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현금이나 현금성 바우처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용도가 많이 제한된 바우처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와 원하지 않는 소비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의견수렴 부분에서 제시하였듯이 영유아 부모의 인식 및 소비지출 조사 자료상에서도 부모들은 바우처나 현물보다 현금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동 사업은 바우처의 사용 용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구 소비선택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추진주체 역할의 명확성

국민행복카드 결제에 관한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시군구, 및 금융기관 등 추진주체와 추진체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조율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출산장려금정책들을 재조정하면서 재원분담의 연결고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에 대한 명확성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현금성 수당이나 전국적 기준(national minimum)의 복지사업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적 성격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지역 수요 파악에서부터, 사업의 집행과 관리까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 책무성과 자율성 강화와 함께 재원 부담도 지자체가 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현금성 수당이나 전국적 기준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유아와 관련된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도, 지역마다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동 사업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수당과 보육료 지원과 같은 서비스 제공의 중간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현금성 수당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아동수당에 준하는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이 일견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사업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조정 필요성을 근거로 볼 때 아동수당에 대한 보조율보다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출산지원금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협조와 조정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다. 정책조합의 가능성

동 사업은 기타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과 동일한 수혜대상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학령기 아동보다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데, 출산지원 정책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가족정책보다는 영유아라는 동일한 수혜대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 정책목표를 가진 가족정책과 출산정책이 겹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출산지원정책은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라던가 출산계획에 대한 출산유인을 주기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적인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동 사업에 따라 바우처가 지급되는 0세아를 놓고 보면 현재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지원되고 있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월 47만원(564만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이 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는 경우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취업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기준 월 120만원(1,44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경우 200만원이 이에 추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과 같은 세제혜택이나 분유, 기저귀 등 각종 지원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보편적 가구의 0세아에 대한 지원금액은 보육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연 1,244만원(월 103.7만원)이 되고, 보육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연 1,040만원(월 87만원)이며,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연 2,610만원(월 217.5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표 IV-1〉 영아기 지원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만원)

만 나이 사업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첫 만남바우처	16.7	200	-	-	-	-	-	-	-	-	-	-	-	-	-	-		
아동수당	10	12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영아수당	30	360	30	360	-	-	-	-	-	-	-	-	-	-	-	-		
보육료지원	47	564	41.4	496.8	34.3	411.6	24	288	24	288	24	288	-	-	-	-		
양육수당	20	240	15	18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10	120		
육아휴직 ¹⁾	상한	127.5	1,530	-	-	-	-	-	-	-	-	-	-	-	-	-		
	하한	70	840	-	-	-	-	-	-	-	-	-	-	-	-	-		
총계																		
1	육아휴직 + 보육료지원	상한	231.2	2,774	81.4	976.8	44.3	531.6	34	408	34	408	34	408	10	120	10	120
		하한	173.7	2,084	81.4	976.8	44.3	531.6	34	408	34	408	34	408	10	120	10	120
2	육아휴직 + 양육수당	상한	204.2	2,450	55	66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하한	146.7	1,760	55	66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3	보육료지원 ²⁾		103.7	1,244	81.4	976.8	44.3	531.6	34	408	34	408	34	408	10	120	10	120
4	양육수당 ³⁾		76.7	920	55	66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20	240

주: 1)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9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하며, 상한 월간 금액 계산 시 연간 총액(150만원×3개월+120만원×9개월)을 구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함

2) 육아휴직은 선택하지 않고, 보육료지원만 선택

3) 육아휴직은 선택하지 않고, 양육수당만 선택

자료: 연구진 작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취업모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지원이며, 보다 최근 들어서는 전업모들의 복지 욕구에도 매우 필요한 지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국제 비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족정책의 서비스 분야 정부지출은 OECD 평균과 유사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자기부담금이 해외 국가에서도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에 따른 공급 측 유인수요 등 보육서비스 이용상의 가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있어 왔고,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양육수당이 도입되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아동수당이 도입되기 이전, 아동수당의 축소판 대안으로서 도입된 측면도 일견 존재한다.

아동수당은 보육서비스 외에 자녀양육에 대한 가구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수당제 도이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효과가 있고 출산을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으로서도 주요한 현금성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시계에서 가구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존 가족정책의 틀하에서, 동사업의 추가적 양육부담 완화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신규 도입 예정인 0~1세 영아수당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일시금 성격의 출산축하금과 1~2년에 걸친 수당적 성격의 출산지원금을 이원화하여 지급하는 것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가족정책 외에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출산지원정책 및 보육시책 등이 중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의 중복성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고 판단된다. 중앙과 지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가르마를 잘 타서 가족정책과 출산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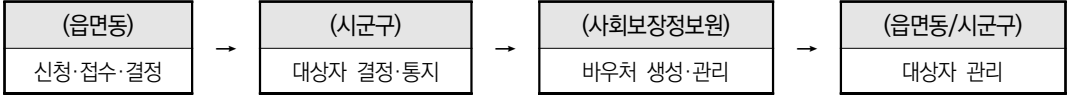
4. 전달체계의 적절성

가. 전달체계의 명확성

동 사업의 전달체계는 [그림 IV-1]에서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에서 이용자의 신청·접수·결정을 거친 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에 대상자 지급 결정 및 통지를 한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진행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 생성 및 대상자 정보를 카드사에 전송, 비용 지불 및 지급, 정산 등 바우처를 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생성 및 관리는 [그림 I-3]과 같이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카드사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의 전달체계는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를 받은 임신부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즉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V-1] 사업의 전달체계



주: [그림 1-2]과 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에비타당성조사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자료

그러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과 시군구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시 읍면동과 시군구 간 업무분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수요자 접근의 용이성

동 사업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은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이 바우처이나 유흥·사행업소 등에 대한 제한 외에는 용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금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수요자 접근은 대체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 측면에서 수요자 접근과 관련한 전달체계가 유사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미신청이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와 아동수당은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아동수당 미신청 현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수당 사업대상자는 약 263만 5천명인데 반해, 수혜자는 약 262만 5천명으로 사업대상자에 비해 수혜자가 약 1만명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출액 2,302,798백만원보다 세출예산 2,302,848백만원이 역시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582).²⁸⁾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2021년 1월 27일까지 3.8만명이 아동수당을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0

28) 자료 확인이 가능한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천명 단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2020년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보다 지출액이 적게 나타난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물론 아동수당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 회계연도에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1만명, 2021년 1월 27일 기준으로 약 3.8만명이 집계되는 점은 수요자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미신청 가구의 원인에 아동학대 등 위기아동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e아동행복 시스템에 아동수당 미신청 정보를 신규변수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서 역시 미신청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미신청 가구의 미신청 사유와 특성을 분석하여 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 집행기구의 적절성

본 사업의 집행에 있어 주요기관은 보건복지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집행 방안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대상자의 바우처 신청을 접수받고 지원을 결정하며 대상자를 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e음 등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민원 응대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생성 및 관리는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달체계의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집행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출생신고 장소인 읍면동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신청과 접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행기구의 적절성 측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1년 6월 11일 개최된 ‘지자체 재정부담 협의회 1차회의 결과 보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021. 6. 11.)에 따르면,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도입에 따른 추가인력, 전담콜센터, 출산·보육관련 윈스톱 창구의 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방안 마련이 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비용 - 효과성 분석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가. 기대효과의 명확성

사업계획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의료서비스 외 자녀 보육 관련 서비스, 지역 상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신·출생 전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목표의 명확성’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사업목적은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과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있다. 다만 전자의 사업 목적은 직접적인 기대효과라기보다는 후자의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기대효과는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동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의 명확성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동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 효과, 장기적으로 기대 가능한 아동 건강 개선 효과, 인적자본 축적 효과와 같은 정책의 결과(outcome) 혹은 성과(performance)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output)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동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

동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은 ‘기대효과의 명확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계획서에서 기대효과의 명확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검토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사업목표인 양육부담 완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식별함으로써 고찰할 수 있다. 아동건강과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의 물리적 원인은 (1) 유배우자율의 감소 (2) 유배우자 출산율의 감소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유배우자율과 유배우자의 출산율로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유배우자율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 및 가치관 변화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유배우자율 증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일-가정 양립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하는 유배우자 출산율 제고로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출산율 제고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온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데, 앞서 제시된 <표 III-11>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에 대한 기존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과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특성상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간 인구이동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산지원금을 일종의 선물로 인식하는 경우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김미곤 외, 2019: 396)과 이러한 (예비) 부모의 만족도가 출산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강한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명칭 및 홍보 역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성과지표의 적절성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본다면 ‘만족’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성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는 엄밀한 측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대상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사업이 기대효과로 설정하고 있는 양육부담 완화²⁹⁾에 대한 성과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뿐 아니라 출산을 제고, 아동건강 발달, 인적자본 축적과 같은 사업의 성과 및 기대효과로 볼 수 있는 변수들이 명확한 인과 경로를 통해 연결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객관성이 높은 정량지표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목표의 명확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전-미션-사업목적-사업목표-성과지표 간 위계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투입-산출-결과(성과)의 인과 경로라는 논리모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출산율 증가, 아동건강 발달, 인적자본 축적과 같이 효과 발생의 경로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한 변수를 그대로 단기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 식별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성과지표의 설정, 측정에 있어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³⁰⁾

2. 비용추정의 적정성

가. 비용추계의 적절성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비용구조는 제공되는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라는 단가와 당해 연도 출생아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산출방식 그 자체로는 복잡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지원 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총사업비의 적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라는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이라는 지원 단가는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정한 405만원의 아동 물품 구입비용(〈표 V-1〉)에 비추어 본다면, 출산 직후 필요한 아동 물품 구입에 따른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상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출산에 지원되는 금액은 산정된 200만원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 단가뿐 아니라 월 10만원의 아동

29) 다만 양육부담 완화 자체는 출산을 제고, 아동건강 발달, 인적자본 축적 등과 같은 사업의 성과에 이르는 투입 지표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0)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1년 6월 10일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수당,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단가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표 V-1〉 아동 물품 구입비용

(단위: 원)

품목	추정가	추정합계
영아용 아기침대	400,000	4,050,000
침구	150,000	
포대기	100,000	
젓병 소독기	200,000	
젓병, 빨대컵, 분유케이스 등	200,000	
이유식 식기 및 용기세트	200,000	
옷장 및 서랍장	300,000	
유모차 및 관련 물품(레인커버, 파라솔 등)	1,300,000	
영아용 카시트	600,000	
아기띠 및 관련 물품(워머 등)	400,000	
아기식탁의자	200,000	

주: 〈표 III-13〉과 동일함.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조사 결과(2021)」, 제출자료

이하에서는 본 사업에서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200만원의 바우처가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애 초기 의료서비스 및 양육비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분석하여 지원금액의 적절성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본 사업의 바우처는 출산 후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아동의 양육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히 정리하고, 2019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³¹⁾를 활용하여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과 양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아동·가구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V-2〉에서는 아동의 양육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먼저 각각의 연구에서 아동당 양육비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료와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총 양육비 산출 시 포함된 비목들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계산된 0세 아동당 월별 평균 양육

3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9 KICCE 소비실태조사」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함

비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의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 절에서 제시하는 모든 양육비용은 2019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서문희 외(2010)와 고제이 외(2015)는 가계의 소비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흔히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영유아 양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별 소비지출 자료로는 개별 아동의 양육비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영유아의 1인당 양육비는 영유아 관련 품목별 지출 총액을 영유아의 수로 나눈 값과 가구 공동지출 총액을 가구원의 수로 나눈 값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이 경우 양육비 계산에 어떠한 가구 공동지출 비목을 포함시킬지에 따라 양육비가 다르게 추정된다. 또한 해당 방법론에서는 아동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가계 통신비 등이 양육비 계산에 산입되어 양육비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 실제로 서문희 외(2010)는 0세 아동의 양육비를 96.2만원으로 추정하였지만, 같은 조사를 이용한 고제이 외(2015)는 이보다 적은 64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서 변수정 외(2020)와 최효미 외(2020)는 각각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와 「KICCE 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아동당 양육비를 계산하였다. 해당 조사들이 앞선 「가계동향조사」와 다른 점은 설문 대상자들이 양육비 지출 내역을 가구 단위가 아닌 자녀 단위로 응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별 소비지출 자료와 가구원 수를 기반으로 아동에 대한 지출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동당 양육비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효미 외(2020)가 사용한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설문 대상자는 항목별로 각 자녀당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지출액에 대해 응답한다. 세부 지출 항목에는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저축/보험)이 포함된다. 만약 가족식비와 같이 금액이 자녀별로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하게 된다. 아동의 총 월별 양육비용은 위 세부항목을 모두 합한 값에서 저축액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된다. 최효미 외(2020)는 2018년, 2019년, 2020년의 0세 아동당 양육비용을 각각 51.6만원, 51.2만원, 50.4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사용한 변수정 외(2020)도 이와 비슷하게 2018년의 0세 아동당 양육비용을 46.6만원으로 제시하였다.

〈표 V-2〉 아동 양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연구	분석 기간	분석자료 및 계산방법	총양육비 산출항목	0세 이혼당 월평균 양육비용
서문희 외 (2010)	2009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지출조사」 $\text{영유아1인당양육비} = \left(\frac{\text{영유아해당 품목 지출비}}{\text{영유아 수}} \right) + \left(\frac{\text{가족 공동 해당 품목 소비지출비}}{\text{가구원 수}} \right)$	1. 영유아 소비지출항목 총 13개 비목 - 분유, 이유식, 이혼내외, 이동외의, 이동화, 장난감, 유아용학습교재교구, 유치원 교육비,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보육료 2. 가계 소비지출 총 13개 비목 - 식료품·비주류, 주류·담배, 의료·신발, 주거·수도광열, 기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기타 지출, 자산이전	96.2만원 (가계동향조사) 123.1만원 (가계지출조사)
고제이 외 (2015)	2014	「가계동향조사」 $\text{영유아1인당양육비} = \left(\frac{\text{영유아해당 품목 지출비}}{\text{영유아 수}} \right) + \left(\frac{\text{가족 공동 해당 품목 소비지출비}}{\text{가구원 수}} \right)$	1. 영유아 자녀 소비지출 총 7개 비목 - 분유, 이유식, 이동용외의, 이동용내외, 이동용 운동화, 장난감, 보육료 2. 가구원 공동 소비지출 총 9개 비목 -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통신비,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	64만원 (공동소비지출 9개 비목 모두 포함) 40.3만원 (필수양육비) ¹⁾
변수정 외 (2020)	2018	「전국 출신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최근 3개월 평균 양육비 지출 금액 자녀별 응답	1. 영유아 자녀 소비지출 비목 - 어린이집 이용료, 돌봄비용, 기타비용(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용돈)	46.6만원 (0~1세)
최호미 외 (2020)	2018 ~ 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양육비용 자녀 응답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하게 함	1. 영유아 자녀 소비지출 비목 - 식비(외식비 포함), 기기/잡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 보험	51.6만원(2018) 51.2만원(2019) 50.4만원(2020)

주: 1) 필수양육비는 가족 공동 소비지출 비목 중 '식료품', '보건비만' 계산에 사용

자료: 연구진 작성

1)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용

본고에서는 최효미 외(2020)와 마찬가지로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평균 양육비용을 계산하였다.³²⁾ 특히 본 사업의 핵심인 0세 아동, 즉 월령(月齡)이 12개월 미만인 아동으로 한정하여 양육비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해당 조사는 아동의 생년월 자료는 존재하지만 설문이 완료된 정확한 날짜 정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진행된 6월과 7월 중 6월을 설문월로 간주하고 아동의 월령을 계산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마지막 달인 2018년 7월에 태어난 아동도 0세(0개월)로 간주한다. 즉 2018년 7월생~2019년 7월생이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0세 아동이 된다. 본고는 영유아 전반에 걸쳐 분석한 최효미 외(2020)와 달리 0세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비를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아동과 가구의 특성별로 0세 아동 양육비의 이질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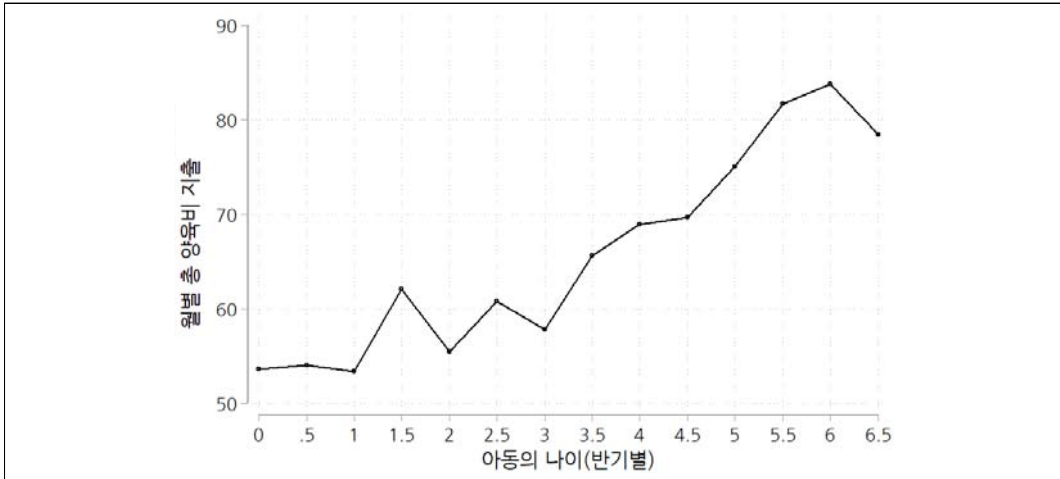
먼저 [그림 V-1]은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월별 양육비 지출을 나이별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양육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계산 시 12개월 단위의 연령(年齡) 아닌 6개월 단위의 반기별 나이를 사용하였다(0~5개월, 6~11개월, 12~17개월...). 본 그래프는 아동의 나이가 들수록 총양육비가 증가하는 것과, 아동 성장과정에서 0세 영아가 가장 적은 양육비용이 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0~5개월 아동과 6~11개월 아동의 평균 양육비는 각각 53.7만원과 54.0만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양육비 또한 증가하는데, 특히 3세를 기점으로 나이에 따른 양육비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6세 아동의 경우 0세 아동당 지출되는 금액에 1.5배에 달하는 80만원 가량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32) 2020년은 코로나19가 보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33) 또한 최효미 외(2020)는 2019년 출생아를 0세 아동으로 간주한 반면 본고에서는 2018년 7월생~2019년 7월생을 0세 아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V-1] 아동 나이별 총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표 V-3>은 세부 지출항목별로 아동 1인당 연령별 평균 양육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V-1]에서 확인했듯이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0세 아동의 월별 총양육비용은 53.8만원이다. 이 중 식비가 12.2만원으로, 0세 아동 총양육비의 가장 많은 비중(약 23%)을 차지하고 있다. 기기/집기(가구나 가전), 피복비(의류 및 신발이나 침구류)는 각각 3.6만원과 5.1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는 4.1만원으로 전체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해당 비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 중 교육/보육비는 8.5만원으로, 전체 양육비용의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보육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육비는 아동의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이는 연령 상승에 따른 총아동양육비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동이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필요경비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3세 이후로 보육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0세 아동의 여가 및 문화생활비로 6.8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서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완구, 여가용 도서(교재교구 제외), 가족여행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중 과반이 넘는 지출이 가족여행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가 및

문화생활비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0세 아동의 경우 교통비나 통신비에 사용하는 금액은 거의 없었다. 아울러 0세 아동의 개인유지비에는 기저귀 지출로 인해 다른 연령보다 많은 평균 6.7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는 총 9.4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 중 6.7만원은 보험료로 지출되고 있다.

종합해 볼 때, 2019년 기준 0세 아동에게 월별 53.8만원, 총 645.6만원의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2019년의 양육비 지출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도 0세 아동의 평균적인 총양육비는 700만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정부안대로 그대로 도입이 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1년 동안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으로만 총 720만원(월별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1년 동안 480만원(월별 40만원)을 받게 되는데, 영아수당 금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2025년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동일하게 72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기준으로 226개의 전체 기초 지자체 중 219개(96.9%)의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 수준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본 사업을 제외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출산·보육비 지원 정책만으로도 평균적인 가구의 0세 아동 보육비를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3〉 아동 연령별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아동당 월별 총양육비 지출	53.8	57.9	58.1	61.9	69.3	78.5	81
1. 식비	12.2	14	13.5	13.7	14.3	15.2	15.9
1-1. 외식비	1	2.5	3.2	3.7	3.7	4	4.4
3. 기기/집기	3.6	2.5	1.4	1.2	1.2	2	1.8
4. 피복비	5.1	5.1	5.3	5.3	5.3	5.7	5.6
5. 보건/의료비	4.1	3.9	3.3	2.8	2.8	2.9	2.8
6. 교육/보육비	8.5	11.5	13.6	19.6	26.1	31.5	34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6.8	8.8	10.6	10.2	10.9	11.8	11.3
7-1. 가족여행 등	3.9	4.1	4.5	4.3	5.4	5.5	6.1
7-2. 관람, 체험학습	0.2	0.6	1	1.4	1.3	1.5	1.5

〈표 V-3〉의 계속

(단위: 만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3. 완구	1.7	2.4	2.5	2.5	2.3	2.2	1.8
7-4. 도서구매	1	1.6	2.6	2.1	1.8	2.6	1.9
8. 교통비	0.1	0.3	0.2	0.2	0.4	0.5	0.4
9. 통신비	0	0	0	0	0.1	0.1	0.5
9-1. 휴대전화비	0	0	0	0	0.1	0	0.4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6.7	5	3.5	2.7	2.3	2.4	2.3
11. 금융상품	9.4	10.4	9.7	9.5	8.7	9.3	9.6
11-1. 저축	2.5	3.7	2.7	3.1	2.5	3	2.7
11-2. 보험	6.7	6.8	6.7	6.1	6	6.5	6.6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87	443.5	445	453.6	452.3	490	480.1
공적이전소득	55.6	37.7	31.5	29.4	27.3	25	16.8
표본아동 수	329	268	318	369	434	405	440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아동·가구 특성별 양육비용의 이질성

앞선 분석에서는 0세 아동의 평균적인 총양육비와 세부 항목별 양육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특성과 가구의 특성별로 상당히 이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만 계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하게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점에서 양육비용 지출의 이질성이 높게 나타날 경우 특정 가구에는 지원금이 과소지급되고 특정 가구에는 지원금이 과대 지급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아동의 특성(성별, 출생순서), 가구의 경제적 특성(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 거주지역(도시지역 여부와 수도권 여부)별로 0세 아동당 평균적인 육아비용 지출을 계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아동·가구의 특성이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가) 아동 특성별 양육비 차이

양육비는 성별이나 출생순서와 같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다. 이에 〈표 V-4〉

는 0세 남아와 여아의 양육비 차이를 살펴본다. (1)열과 (2)열은 각각 남아와 여아의 월평균 양육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3)열은 남아와 여아의 양육비용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4)열은 이러한 양육비용 차이의 t값을 보여줌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t값이 2보다 클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1)열이 (2)열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표 V-4〉에서 0세 남아와 여아에 지출하는 총비용은 각각 55.7만원과 51.8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아에게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다소 높지만, 남녀 간의 지출비용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t=0.9$). 세부항목별로 남자는 식비, 교육/보육비에서, 여자는 피복비 및 여가/문화 생활비에서 더 많은 지출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총양육비와 세부 항목별 양육비 모두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 < 2$).

〈표 V-4〉 아동 성별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남아 (1)	여아 (2)	(1)-(2) (3)	t값 (4)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55.7	51.8	3.8	0.9
1. 식비	13	11.4	1.6	1.5
3. 기기/집기	2.7	4.6	-1.8	1.3
4. 피복비	5.2	5.1	0	0.1
5. 보건/의료비	4.2	3.9	0.3	0.6
6. 교육/보육비	10.4	6.3	4	1.3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6.3	7.4	-1.1	1.4
8. 교통비	0.2	0.1	0.1	0.8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7.1	6.3	0.8	1.1
11-2. 보험	6.6	6.7	-0.1	0.1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82.2	392.3	-10.2	0.6
공적이전소득	58.4	52.6	5.8	0.9
표본아동 수	174	155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표 V-5〉에서는 출생 순서별로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1)~(3)열은 각각 첫째아, 둘째아, 셋째(이상)아의 평균 양육비를 나타내고 있다. (4)열은

첫째아와 셋째아와의 양육비 지출 차이, (5)열은 해당 차이의 t값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용은 출생순서가 늦을수록 감소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둘째와 셋째의 월별 평균 양육비 지출은 각각 63.6만원, 50.4만원, 43.3만원으로 나타났다. 첫째와 셋째 간 총 양육비 지출에는 20.4만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에서 세부항목별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둘째아나 셋째아가 첫째아보다 더 적은 지출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아동 1인당 지출되는 식비가 줄어들고, 첫째가 사용하던 가구나 의복을 그대로 둘째나 셋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기/집기나 피복비 지출이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출생순서가 늦을수록 여가 및 문화생활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는데, 둘째나 셋째를 위해 새로운 완구나 도서를 구매할 필요성이 적고, 0세 아동은 추가적인 여행비용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둘째나 셋째 0세 아동은 첫째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부 지출항목에서 첫째의 보육비용이 대체적으로 더 많이 드는 반면, 교육/보육비는 출생순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0세 아동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보육비 자체가 낮아 출생순서별 보육비 차이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모든 자녀를 같이 돌봐주는 일부 개별돌봄서비스를 제외하면 0세 아동에게 지출되는 추가적인 돌봄비용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0세 영아의 경우 첫째의 양육비용이 둘째나 셋째보다 20~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양육비용뿐만 아니라 보육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첫째 아동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서 첫째는 수혜대상에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이 둘째나 셋째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다.³⁴⁾ 반면에 본 사업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고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비 지출을 발생시키는 첫째아를 가진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미 지자체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둘째아나 셋째아에 대해 필요비용을 웃도는 지원을 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34)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지자체 62%에서 첫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아동 출생순서별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첫째 (1)	둘째 (2)	셋째 이상 (3)	(1)-(3) (4)	t값 (5)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63.6	50.4	43.3	20.4	2.7
1. 식비	13.5	12.4	8.6	4.9	2.9
3. 기기/집기	6.6	2.1	2.1	4.5	1.6
4. 피복비	6.5	4.8	3.3	3.1	2.9
5. 보건/의료비	5.1	3.7	3.1	2	2
6. 교육/보육비	9.1	7.3	11.3	-2.2	-0.4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8.6	6.6	3.3	5.3	4.1
8. 교통비	0.1	0.2	0.1	0.1	0.5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7.4	6.5	5.8	1.5	1.4
11-2. 보험	6.7	6.9	5.5	1.1	1.2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55.3	412.7	362.6	-7.3	-0.3
공적이전소득	40.2	60.8	73.3	-33.1	-4.1
표본아동 수	109	176	44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나) 가구의 경제적 특성별 양육비 차이

본 절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특성, 즉 맞벌이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0세 아동의 양육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먼저 〈표 V-6〉에서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양육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휴직자여도 맞벌이가정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0세 아동의 경우 부나 모가 휴직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양육비 계산에 앞서 외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소득을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양육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포함)을 제외한 외벌이가정의 최근 3개월 평균 가구소득은 363만원인 데 반해, 맞벌이가구는 431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급여 수령 등으로 인해 공적이전소득 또한 외벌이가정보다 평균 10만원 이상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6〉의 (1)열과 (2)열에서는 외벌이와 맞벌이가구의 0세 아동당 평균 양육비는 각각 50.9만원과 59.3만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매달 8.3만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데(3열), 이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4열). 외벌이와 맞벌이가구 간 양육비용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교육/보육비로, 맞벌이가정이 외벌이가정에 비해 평균 5.4만원의 보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어느 하나가 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6〉 맞벌이 여부별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외벌이 (1)	맞벌이(휴직 포함) (2)	(2)-(1) (3)	t값 (4)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50.9	59.3	8.3	1.8
1. 식비	12.1	12.6	0.5	0.4
3. 기기/집기	3.7	3.4	-0.4	0.3
4. 피복비	4.8	5.8	1.1	1.7
5. 보건/의료비	3.8	4.6	0.8	1.3
6. 교육/보육비	6.6	12	5.4	1.7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6.4	7.5	1.1	1.2
8. 교통비	0.2	0.1	-0.1	0.8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7	6.2	-0.7	1
11-2. 보험	6.4	7.1	0.7	1.1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63.4	430.8	67.3	4
공적이전소득	51.6	63.1	11.4	1.8
표본아동 수	214	115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한편 외벌이와 맞벌이가구의 양육비용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가구 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소득이 높은 맞벌이가구가 소득이 낮은 외벌이가구에 비해 아동에게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더 높은 것이다. 이에 〈표 V-7〉에서는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구간별로 양육비 지출액을 계산하였다.³⁵⁾ 구체적으로 (1)~(3)열에서는 각각 300만원 이하(저소득 가구), 301만~400만원(중소득 가구), 400만원 초과(고소득 가구) 소득 가구에 속한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용을 계산하였다. 또한 (4)열에서는 고소득가구(3열)와 저소득가구(1열)의 양육비용 차이를 보이고, (5)열에서는 해당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을 제시하였다.

35) 가구소득 계산 시 육아휴직급여나 양육수당과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제외하였다.

〈표 V-7〉의 (1)~(3)열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0세 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출도 많아짐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가구의 1인당 양육비용은 각각 43.2만원, 56.5만원, 64.8만원으로 계산되었다.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양육비용 차이는 월 평균 21.5만원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다($t=4.1$). 고소득과 저소득가구의 양육비용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역시 교육/보육비로, 저소득가구는 평균 4.1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고소득가정은 이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14.9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역시 많은 지출이 수반되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고소득층에서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피복과 여가/문화생활비에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각각 평균 2만원과 3.9만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자금 여력이 되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에 비해 월 평균 2만원을 더 아동을 위한 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는 고소득가구가 0세 아동에게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별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총양육비 지출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보육비였다.

〈표 V-7〉 가구소득별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300만 이하 (1)	400만 이하 (2)	400만 초과 (3)	(3)-(1) (4)	t값 (5)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43.2	56.5	64.8	21.5	4.1
1. 식비	10.6	13.9	12.5	1.9	1.4
3. 기기/집기	3.5	3.8	3.6	0.1	0.1
4. 피복비	4	5.7	6	2	2.8
5. 보건/의료비	4	4.3	3.9	-0.2	0.3
6. 교육/보육비	4.1	7.9	14.9	10.8	2.9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4.8	7.6	8.6	3.9	4.2
8. 교통비	0.1	0.3	0	0	0.8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6.3	6.6	7.4	1.1	1.2
11-2. 보험	5.9	6.4	7.9	2	2.6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269.1	368.1	562.6	293.6	21
공적이전소득	57.1	48.7	61.5	4.4	0.5
표본아동 수	126	107	96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 거주지역별 양육비 차이

본 절에서는 가구의 거주지 특성이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가구의 거주지역에 따라 평균적인 임금수준과 물가수준이 다르고 양육서비스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 지출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금액의 차이도 가구의 양육비 지출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다. 다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자세한 지역별 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본 분석에서는 도시 거주 여부와 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평균 양육비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표 V-8>에서는 가구의 거주지를 읍면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을 계산하였다. 흥미롭게도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의 양육비는 각각 53.6만원과 53.9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세부 지출항목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보육비를 2.5만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높은 보육비용이나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읍면지역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피복비 및 보건/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다만 읍면지역의 표본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8> 읍면지역과 도시지역의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읍면	도시	(2)-(1)	t값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53.6	53.9	0.3	0.1
1. 식비	10.6	12.5	1.9	1.2
3. 기기/집기	3.8	3.6	-0.3	0.1
4. 피복비	6.2	4.9	-1.3	1.6
5. 보건/의료비	5.3	3.9	-1.4	1.8
6. 교육/보육비	6.3	8.9	2.5	0.6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6.5	6.9	0.4	0.3
8. 교통비	0	0.2	0.2	1.3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7.9	6.5	-1.4	1.4
11-2. 보험	6.9	6.6	-0.3	0.4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63	391.2	28.2	1.2
공적이전소득	52.4	56.2	3.8	0.4
표본아동 수	49	280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표 V-9>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양육비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는 각각 54.2만원과 53.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총양육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세부 항목별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보건/의료비와 보험료를 수도권보다 각각 1만원과 3.4만원 더 지출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보육비에 대한 지출이 비수도권에 비해 5.1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0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지출항목별로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보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2)-(1)	t값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54.2	53.5	-0.8	0.2
1. 식비	11.8	12.7	0.9	0.8
3. 기기/집기	3.9	3.2	-0.7	0.5
4. 피복비	5.4	4.9	-0.5	0.8
5. 보건/의료비	4.6	3.5	-1	1.9
6. 교육/보육비	6	11.1	5.1	1.6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7.3	6.3	-1	1.2
8. 교통비	0.2	0.1	-0.2	1.9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6.7	6.7	0	0
11-2. 보험	8.3	4.9	-3.4	5.9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90.9	382.8	-8.1	0.5
공적이전소득	55.4	55.9	0.5	0.1
표본아동 수	169	160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라) 회귀분석을 통한 양육비 결정요인 분석

앞선 분석에서는 아동의 특성별, 가구의 경제적 특성별,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0세 아동당 양육비 지출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동과 가구의 특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평균 양육비만을 통해 개별 특성이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특성이 고정된 상태에서 개별 특성이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0세 아동의 총 월별 양육비이다(만원 단위). 아동의 특성에 관한 설명변수는 월령 6~11개월 더미, 여자아이 더미 그리고 둘째아 및 셋째아 더미이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설명변수로는 맞벌이 여부 더미와 월 가구소득(이전 소득 제외)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특성에 관한 설명변수로 도시지역 거주 더미, 그리고 수도권 거주 더미가 사용되었다.

〈표 V-10〉의 (1)열에서는 6~11개월 나이 더미와 여자아이 더미만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열에서는 (1)열의 설명변수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 더미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열에서는 회귀식의 설명변수에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맞벌이 여부 더미와 월 가구소득 변수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4)열에서는 거주지 특성 변수인 도시지역 거주 더미와 수도권 거주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5)열은 (4)열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하였지만, 표본을 2019년 5월 이전에 출생한 0세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이렇듯 〈표 V-10〉에서 다양한 설명변수의 조합과 표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에 걸쳐 각각의 특성 변수에 대해 거의 유사한 크기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따라서 아동 양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특성을 포함한 (4)열을 중심으로 추정계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6~11개월의 아동은 0~5개월 아동과 양육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아는 남아보다 육아비 지출이 적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반면에 다른 모든 특성을 통제했음에도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첫째 아이에 비해 각각 17.3만원과 20.5만원 더 적은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외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구가 더 많은 양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맞벌이 여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구소득으로,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 양육비 지출은 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특성변수, 즉 도시지역 거주 여부와 수도권 거주 여부는 양육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앞선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0세 영아의 육아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관측

가능한 특성은 아동의 출생순서와 소득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는 모든 특성변수를 포함한 (4)열에서도 0.11에 불과했다. 이는 아동의 양육비 지출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같은 관측 가능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의 출산지원금은 양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평균 양육비 지출 자체가 적은 둘째아와 셋째아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많은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중복 및 과대 지급의 우려가 크다.

〈표 V-10〉 아동 양육비 지출 결정요인 분석

(단위: 만원)

종속변수: 월별 0세 영아 육아비 지출(만원)	(1)	(2)	(3)	(4)	(5)
월령 6~11개월	0.53 (4.43)	-0.07 (4.39)	-1.83 (4.26)	-1.87 (4.29)	-2.06 (4.72)
여자아이	-3.87 (4.42)	-3.35 (4.36)	-4.35 (4.18)	-4.42 (4.20)	-7.03 (4.40)
둘째 아이		-13.21** (5.22)	-17.36*** (5.24)	-17.34*** (5.26)	-16.61*** (5.71)
셋째 아이		-20.08*** (6.54)	-20.43*** (6.12)	-20.50*** (6.11)	-22.61*** (6.56)
맞벌이가구			3.91 (4.63)	3.93 (4.68)	6.29 (5.02)
월 가구소득(만원)			0.07*** (0.02)	0.07*** (0.02)	0.06*** (0.02)
도시지역 거주				-1.65 (4.94)	0.39 (5.02)
수도권 거주				-0.53 (4.34)	-1.21 (4.55)
상수	55.40*** (3.44)	65.22*** (5.11)	39.95*** (6.51)	41.57*** (7.82)	45.31*** (8.57)
R^2	0	0.04	0.11	0.11	0.1
N	329	329	329	329	291
19년 5월 이전 출생					Y

주: 1. 강건표준오차 사용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나. 추가 발생 가능 비용 검토

향후 추가로 발생가능한 사업비 변동 요인으로는 (1)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가능성 (2) 차등보조율 적용의 가능성 (3)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 등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의견수렴의 충분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관련된다.

국비보조율 상향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는 총사업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 자체로 국고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총사업비 구성의 변동요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자체와 국비-지방비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으로 볼 때 총사업비 자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율을 변화시키게 된다.

2021년 6월 11일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영아수당, 첫 만남이용권³⁶⁾) 지자체 정책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전담 콜센터 운영, 출산·보육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이 사업비에 반영되는 경우 동 사업의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 변화

수요 변동, 즉 사업대상자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 가능성은 (1) 정책효과의 내생성(endogeneity) (2) 코로나19 팬데믹과 예측오차 문제를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첫 만남 축하 바우처에 따른 출산율 제고효과가 사업대상자를 증가시킴에 따른 내생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재정부담검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약 50%의 가임기를 혼인상태에서 보내고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2~0.03 상승한다는 분석결과(김미곤 외, 2019)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상승 요인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구추계 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대방향에서 수요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출생아 수는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배우자율과 유배우자의 출산율에 따라 결정된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이 유

36)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의미한다.

발할 수 있는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져 기존의 인구추계에 따라 상정된 총사업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비용 대비 효과성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기대효과의 명확성'과 '기대효과의 실현 가능성'에서의 논의를 종합할 때, 동 사업의 직접적인 기대효과로 양육부담 완화를 상정할 수 있다.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은 자녀출산으로 인한 가구소비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사업계획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종국적 기대효과로서 출산율 및 출산의도, 그리고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성과 대비 비용은 사업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전제로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동 사업의 성과 대비 비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용-효과적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가.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 효과

1) 분석개요

이하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급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지, 가구의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 보육비를 제외한 여타 가구소비지출, 자녀 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 상황과 보조금 수급뿐만 아니라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

가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재정패널자료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패널자료로, 2021년 7월 현재 12차 자료까지 공개되었다. 조사대상 가구는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이며, 2008년부터 조사된 원가구 5,014가구와 2009년에 새롭게 편입된 추가표본 620가구, 2009년 이후 분가하여 신규로 발생한 분가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조사로 나뉘며, 가구원의 인정 현황 및 경제활동 상황과 가구의 이전지출, 이전소득, 자산, 부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재정패널자료는 가구의 지출 현황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수령하고 있는 복지급여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어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수령이 가구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분석을 위해 1차 자료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12차 자료까지 모두 이용하였다. 재정패널 조사는 설문이 2008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득, 부채, 복지급여 등 설문의 내용이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분석 기간은 2007~2018년이다. 설문가구 중 가구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교육연수를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에 0~3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가임기 여성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모두 소진하여야 하므로 만 1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제한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우처 지급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소비할 품목을 바우처로 구매하고, 바우처로 소비한 만큼의 현금 소비를 다음 기회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서 만 0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3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범위를 넓혀 가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분석방법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의 보육비는 기저귀, 조제분유, 이유식 등에 지출한 비용이 직접적인 보육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패널 설문 문항에서 해당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육 및 교육비를 보육비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가구 중에서 보육비 지출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³⁷⁾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37)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약 46%의 가구가 보육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에서는 보육비를 교육비와 함께 묻고 있다. 이에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할 때 보육비를 주로 어린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 이해하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진행하였다. 종속변수가 일정 값 이상이나 이하에서만 관찰되는 중도절단 자료(censored data)의 경우 토빗모형을 이용하면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패널자료이므로 고정효과 토빗모형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분석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한계효과를 추정할 수 없어서(Honoré, 1992) 확률효과 토빗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childcare_{it} = \max(0, \beta_0 + \beta_1 subsidy_{it} + \beta_2 age_{it} + \beta_3 X_{it} + \mu_i + \del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1)}$$

$childcare_{it}$ 는 만원 단위로 측정한 가구 i 의 t 년도 연간 보육비를 의미하며, $subsidy_{it}$ 는 만원 단위로 측정한 가구 i 의 t 년도 연간 총출산 및 양육지원금이며, X_{it}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다. μ_i 는 가구 고유의 특성을 의미하고, δ_t 는 연도더미 변수를 뜻하며, ϵ_{it} 는 순수 오차항이다. X_{it} 에는 각 연령(0세, 1세, 2세, 3세)별 아동 수, 가구주 나이, 연간 가구소득,³⁸⁾ 가구 순자산, 가구주 교육연수, 맞벌이 여부와 함께 지역더미를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모든 금액변수는 만원 단위이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5년을 기준 연도로 물가조정하였다. $subsidy_{it}$ 를 구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금, 보육비 지원금, 교육비 지원금, 급식비 지원금, 다자녀 지원금, 아동수당 등 다양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모두 합하였다. 따라서 $subsidy_{it}$ 의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1만원 증가할 때 보육비가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확률효과 토빗모형에서는 X_{it} 와 μ_i 사이에 상관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추정한다.³⁹⁾

가구소득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육비와 여타 가구소비지출로 배분하게 되면 보육비가 많을수록 여타 가구소비지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를 일부 대체한다면 보육비 증가로 인한 여타 가구소비지출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38)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에는 가구가 수령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39) 토빗모형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는 달리 추정된 계수가 한계효과가 아니다. 일부 관측치의 종속변수 값이 0이고, 다른 관측치는 0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0일 경우를 고려해야 해서 한계효과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frac{\partial E(y | X)}{\partial x_j} = \phi\left(\frac{X\beta}{\sigma}\right)\beta_j$ 의 형태로 나타나며 σ 는 오차항의 분산이고, $\phi(\cdot)$ 는 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이다. 따라서 한계효과는 관측치마다 달라지는데, <표 V-12>와 <표 V-13>에서 보고한 것은 이를 평균한 값이다. 또한 평균 한계효과의 표준오차는 델타 방법으로 추정한다.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육비를 제외한 가구소비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보육비를 제외한 가구소비지출은 연속변수이며, 분석대상 중 0의 값을 갖는 가구는 없으므로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보육비를 제외한 가구소득과 보육비와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식 (2)를 적용하였다.

$$expenditure_{it} = \beta_0 + \beta_1 childcare_{it} + \beta_2 X_{it} + \mu_i + \del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2)}$$

$expenditure_{it}$ 는 보육비를 제외한 연간 가구소비지출을 의미하며, μ_i 는 가구 i 가 가지는 특성 중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 X_{it}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이며, 보육비 분석에 활용한 통제변수에 가구원 수를 포함하였다. 패널 고정효과모형은 추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변수에 시간에 대한 평균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각 가구에 대하여 분석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산출하고, 그 평균값을 각 연도의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되면 관찰할 수 없으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가구의 특성 (μ_i)이 사라지게 되어 편의가 줄어들게 된다.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가구소비지출에 얼마나 이용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출산지원금 성격을 지닌 첫 만남 축하 바우처가 가구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가구의 미성년 자녀 수로 설정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도 양육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약 30세 전후이며 첫 아이 출산까지 약 2년, 출산간격이 4년 정도(통계청, 2021)라는 점을 고려하면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면 여성의 가임기가 거의 끝나게 된다. 따라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여 종속변수를 미성년 자녀 수로 설정하였다. 미성년 자녀 수에 대한 분석 또한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고, 추정식은 식 (3)과 같다.

$$cnum_{it} = \beta_0 + \beta_1 subsidy_{it} + \beta_2 X_{it} + \mu_i + \del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3)}$$

$cnum_{it}$ 는 미성년 자녀 수를 의미하며, X_{it} 또한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하나 다른 분석과 달리 각 연령별 아동 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기초통계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기초통계를 <표 V-11>에 요약하였다. 분석대상에 따라 표본 수가 달라지는데, 이는 각 연령(0세, 1세, 2세,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면서 포함되는 가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본 수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육비와 교육비 제외 가구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보육비는 119만원에서 191만원으로, 보육비를 제외한 가구소비지출은 2,350만원에서 2,399만원으로 변화한다. 출산 및 양육지원금 또한 증가하는데, 이는 출산 당시에 일회성으로 지급 받는 지원금보다 이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금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연령 이하의 자녀 수는 1명 정도인데 평균 미성년 자녀 수가 1명 이하인 것은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나 자녀가 성년이 된 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나이는 약 36세 전후이며, 가구원 수는 4명 정도였다. 가구소득은 약 5천만원, 가구 순자산은 1억 5천만~1억 7천만원, 가구주 교육연수는 약 15년, 각 연령별 자녀가 있는 가구의 1/4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보육비는 약 46만원, 여타 가구소비지출은 2,617만원이었다.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29만원이었는데,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17%임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결과로 보인다. 가구소비지출은 2,600만원, 가구소득은 4,600만원, 가구 순자산은 2억 7천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는 51세 정도인데,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가구주의 나이도 함께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교육연수는 13년, 맞벌이 비율은 32% 정도였다.

<표 V-11> 기초통계

(단위: 만원, 명, 세, 년)

	0세 이하	1세 이하	2세 이하	3세 이하	미성년 자녀 수
보육비	119.3 (244.5)	138.4 (248.3)	161.6 (257.8)	191.9 (285.9)	46.92 (167.8)
가구소비지출 (보육비 제외)	2,350 (1,473)	2,340 (1,423)	2,367 (1,421)	2,399 (1,417)	2,617 (1,899)
출산 및 양육지원금	128.7 (218.5)	138.0 (221.6)	151.5 (242.8)	155.4 (237.6)	28.63 (109.7)
각 연령별 자녀 수 ¹⁾	1.02 (0.15)	1.05 (0.22)	1.12 (0.33)	1.20 (0.41)	0.81 (0.97)

〈표 V-11〉의 계속

(단위: 만원, 명, 세, 년)

	0세 이하	1세 이하	2세 이하	3세 이하	미성년 자녀 수
가구주 나이	35.86 (7.38)	36.15 (7.24)	36.49 (7.15)	36.92 (7.12)	50.56 (17.28)
가구원 수	3.554 (1.101)	3.758 (1.058)	3.835 (1.022)	3.883 (1.003)	3.196 (1.239)
가구소득	4,577 (3,188)	4,574 (3,286)	4,609 (3,293)	4,692 (3,296)	4,615 (4,259)
가구 순자산	15,010 (21,306)	15,899 (22,147)	16,378 (21,868)	16,795 (22,329)	27,233 (44,996)
가구주 교육연수	14.54 (2.46)	14.53 (2.42)	14.48 (2.46)	14.44 (2.46)	12.66 (3.94)
맞벌이 비율	26.5%	25.5%	26.6%	27.3%	31.9%
관측치 수	979	1,882	2,699	3,453	29,703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1) 자녀 수 분석의 각 연령별 자녀 수는 총 자녀 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3) 분석결과

가)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표 V-12〉와 〈표 V-13〉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부터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연령별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전반적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보육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1만원 더 수령하는 경우 보육비가 약 2,500원 증가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금 중 1/4은 보육비로 사용되었으며, 보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상당 부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를 증가시켜 이전보다 양질의 교육, 혹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같은 교육을 받았을 때의 여타 가구소비지출보다 더 많은 수준의 소비가 가능하게 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 및 양육지원금 사용으로 보육비가 물가상승률 이상 상승하여 동일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요 독립변수 이외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연령별 아동 수가 많을수록 보육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연령별 아동 수가 많아질수록 보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추정되어 이 결과는 퍼즐로 남는다. 단 연령별 아동 수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의 추정계수는 변화가 없어서 앞선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자녀 수 효과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크기가 줄어들어 3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보육비를 구성하는 변수가 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교육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유치원 등에 등원하게 되지만 자녀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수 보다는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생후 1~2년 사이에 처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것(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을 고려하면, 아동의 나이를 3세까지 고려한 분석에서 각 연령별 아동 수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길수록 보육비가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득이 높고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긴 경우 전문적인 교육, 혹은 양질의 교육을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일수록 보육비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추정결과가 흥미롭게 보이는데, 추정계수의 절대값과 유의성은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12〉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 토빗모형 추정결과(0세, 1세)

(단위: 만원, 명, 세, 년)

	0세 이하		1세 이하	
	토빗모형	한계효과	토빗모형	한계효과
출산 및 양육 지원금	0.743*** (0.094)	0.268*** (0.034)	0.718*** (0.062)	0.295*** (0.026)
각 연령별 아동 수	-366.9** (149.9)	-132.6** (54.29)	-244.3*** (63.30)	-100.2*** (26.04)
가구주 나이	2.212 (2.842)	0.799 (1.028)	4.355** (2.106)	1.786** (0.865)
가구소득	0.024*** (0.007)	0.009*** (0.002)	0.012*** (0.005)	0.005*** (0.002)
가구 순자산	0.001 (0.001)	0.0003 (0.0003)	0.001 (0.001)	0.0003 (0.0003)
가구주 교육연수	7.789 (8.702)	2.814 (3.147)	17.82*** (6.500)	7.311*** (2.673)

〈표 V-12〉의 계속

(단위: 만원, 명, 세, 년)

	0세 이하		1세 이하	
	토빗모형	한계효과	토빗모형	한계효과
맞벌이 여부	-121.0*** (45.37)	-43.72*** (16.43)	-52.30* (31.14)	-21.45* (12.78)
상수항	-692.7 (495.6)	- (-)	-964.7*** (335.3)	- (-)
관측치 수	979		1,882	
가구 수	690		949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p<0.001 ** p<0.005 * p<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13〉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 토빗모형 추정결과(2세, 3세)

(단위: 만원, 명, 세, 년)

	2세 이하		3세 이하	
	토빗모형	한계효과	토빗모형	한계효과
출산 및 양육 지원금	0.555*** (0.042)	0.264*** (0.020)	0.469*** (0.039)	0.250*** (0.021)
각 연령별 아동 수	-55.38** (27.48)	-26.34** (13.08)	-0.304 (19.04)	-0.162 (10.14)
가구주 나이	3.266* (1.758)	1.553* (0.835)	2.605 (1.586)	1.387 (0.843)
가구소득	0.0118*** (0.004)	0.006*** (0.002)	0.015*** (0.003)	0.008*** (0.002)
가구 순자산	0.0006 (0.0005)	0.0003 (0.0003)	0.001** (0.0004)	0.001** (0.0002)
가구주 교육연수	19.83*** (5.313)	9.432*** (2.532)	18.61*** (4.714)	9.909*** (2.512)
맞벌이 여부	-25.71 (23.55)	-12.23 (11.20)	-11.50 (20.57)	-6.123 (10.95)
상수항	-1,037*** (296.8)	- (-)	-855.4*** (233.9)	- (-)
관측치 수	2,699		3,453	
가구 수	1,117		1,249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p<0.001 ** p<0.005 * p<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나)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기본적인 지급목표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또한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비로 인해 가구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여러 지원금이 보육비와 가구소비지출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 시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지급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첫 만남 바우처의 성격을 고려하면 만 0~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출을 다음 기회로 이월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행태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14>에서는 보육비가 보육비를 제외한 다른 가구소비지출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가구의 소득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아이를 위해 사용하는 보육비가 소비에 추가되어 보육비를 제외한 여타 소비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이외의 모든 가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보육비를 제외한 다른 가구소비지출이 8,600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면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가구의 보육비로 지원되었으므로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구의 다른 소비 지출 감소를 그만큼 방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출산가구에 대한 정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선 <표 V-12>와 <표 V-13>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25%임을 고려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 금액 중 50만원을 보육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즉 가구는 가구 예산에서 50만원의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표 V-14>의 추정결과로부터 가구의 보육비 부담이 50만원 감소하면 가구의 다른 소비지출이 43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14〉 보육비가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단위: 만원, 명, 세, 년)

	0세 이하	1세 이하	2세 이하	3세 이하
보육비	0.265 (0.701)	-0.916*** (0.166)	-0.870*** (0.130)	-0.796*** (0.0905)
각 연령별 아동 수	409.5 (385.4)	295.6** (127.7)	42.67 (86.39)	28.97 (47.60)
가구주 나이	42.97*** (10.37)	41.92** (20.02)	24.08 (15.00)	14.00 (11.57)
가구원 수	-22.58 (70.46)	-12.10 (80.99)	-13.88 (65.13)	41.94 (53.07)
가구소득	0.0418 (0.0433)	0.061 (0.041)	0.091** (0.041)	0.115*** (0.0331)
가구 순자산	0.006 (0.005)	0.007* (0.004)	0.010*** (0.003)	0.008*** (0.002)
가구주 교육연수	128.4* (66.78)	61.06 (48.03)	9.424 (37.29)	17.17 (32.51)
맞벌이 여부	450.8 (312.7)	105.1 (164.2)	132.6 (110.3)	121.6 (82.20)
상수항	-1,012 (1,463)	-4.677 (1,158)	1,878** (938.6)	1,827** (812.0)
관측치 수	979	1,882	2,699	3,453
가구 수	690	949	1,117	1,249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p<0.001 ** p<0.005 * p<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표 V-15〉와 〈표 V-16〉은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신규 출산 및 미성년 자녀 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V-15〉의 신규 출산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프로빗모형을 적용하였다. 프로빗모형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예측값을 구하면 0과 1 사이의 값만 갖게 되어 특히 확률추정에 적합하다. 통상적인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이용하게 되면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면 음(-)의 값을 갖거나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⁴⁰⁾ 분석결과,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한 가구에서 신규 출산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녀 수도 더 많았다. 앞선 분석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보육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를 확인한 만큼,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추가 출산 확률, 자녀 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면 아직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의 향후 자녀 수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출산 및 양육지원금 효과를 과소추정할 수도 있고, 반면에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단지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만 있다면 오히려 과대 추정의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출산이 완결되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 출산이 완결된 가구, 다시 말해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자녀 수에 미친 최종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여성 배우자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재정패널 조사의 경우 자녀가 분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정확한 자녀 수를 알기 어려워 여성 배우자의 나이를 55세 이하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분석 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가구에서 독립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조사 기간 중에 미성년 자녀 수가 가장 많았을 때의 자녀 수와 수령했던 출산 및 양육지원금 총액을 각각 종속변수와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인 가구주 나이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나이로, 가구소득과 가구 순자산은 분석 기간의 평균을 취하였다.

〈표 V-17〉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독립변수인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수와의 관계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한계효과가 크지 않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첫 만남 바우처제도의 시행이 의미 있는 출산율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추가 출산을 결정하거나 자녀 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중요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적절하다.

40) 프로빗모형의 우도함수는 $\ln L_i = y_i \log \Phi(x_i \beta) + (1 - y_i) \log [1 - \Phi(x_i \beta)]$ 이며, $\Phi(\cdot)$ 는 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한다. 프로빗모형의 회귀계수는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β 이며, 한계효과는 $\phi(x_i \beta) \beta_j$ 이다. 이 때 $\phi(\cdot)$ 는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이다.

〈표 V-15〉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신규 출산과의 관계 분석

(단위: 만원, 명, 세, 년)

	(1)		(2)	
	프로빗 모형	한계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	한계효과
출산 및 양육 지원금	0.003*** (0.0002)	0.0002*** (0.00001)	0.003*** (0.0002)	0.0001*** (0.000001)
신규 출산 제외 자녀 수	-0.835*** (0.045)	-0.055*** (0.003)	-0.839*** (0.058)	-0.018*** (0.002)
가구주 나이	-0.067*** (0.004)	-0.004*** (0.0003)	-0.067*** (0.004)	-0.001*** (0.0002)
가구소득	0.00003** (0.000001)	0.000001** (0.0000006)	0.00002** (0.00001)	0.0000004* (0.0000002)
가구 순자산	0.000002 (0.000002)	-0.0000002 (0.0000001)	-0.000002 (0.000002)	- (-)
가구주 교육연수	0.039*** (0.013)	0.003*** (0.001)	0.039*** (0.013)	0.001*** (0.0003)
맞벌이 여부	-0.320*** (0.061)	-0.021*** (0.004)	-0.321*** (0.063)	- (-)
상수항	1.182*** (0.362)	- (-)	1.185*** (0.362)	- (-)
관측치 수	11,121		11,121	
가구 수			2,913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16〉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수와의 관계 분석

(단위: 만원, 명, 세, 년)

	합동 OLS	고정효과 모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0.002*** (0.0002)	0.001*** (0.0001)
가구주 나이	-0.013* (0.01)	-0.013*** (0.002)
가구소득	0.00001*** (0.000003)	-0.000004** (0.000002)
가구 순자산	-0.000001*** (0.000001)	-0.0000003* (0.0000002)
가구주 교육연수	0.043*** (0.014)	0.003 (0.005)
맞벌이 여부	0.097*** (0.023)	-0.009 (0.016)

〈표 V-16〉의 계속

(단위: 만원, 명, 세, 년)

	합동 OLS	고정효과 모형
상수항	1.105* (0.598)	1.304*** (0.167)
관측치 수	29,703	
가구 수	6,092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17〉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완결출산 가구의 미성년 자녀 수와의 관계 분석

(단위: 만원, 명, 세, 년)

	완결출산
출산 및 양육 지원금	0.001*** (0.00004)
가구주 나이	-0.001** (0.001)
가구소득	0.00002*** (0.00001)
가구 순자산	-0.000002** (0.000001)
가구주 교육연수	0.071*** (0.007)
맞벌이 여부	0.248*** (0.039)
상수항	0.240** (0.110)
관측치 수	2,301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p<0.001 ** p<0.005 * p<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12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4) 소결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출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첫 만남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보육비의 증가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2〉~〈표 V-14〉의 결과에 의하면 첫 만남 바우처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 중 1/4인 50만원은 보육비

로, 나머지 150만원은 보육비를 제외한 다른 가구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과 저축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출산 및 양육지원금과 미성년 자녀 수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출산 결정 과정에서 수령하는 지원금 수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만원 수준의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약 2%p의 추가 출산 확률 증가, 최대 0.2명의 자녀 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정책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도입은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도입 목적 달성과 더불어 어느 정도 추가 출산 확률 증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인적자본 형성 효과

1) 분석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⁴¹⁾에 따라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지원을 강화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영아수당 도입과 함께 본 사업의 도입이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목적이 생애 초기 양육부담 경감에 있으나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한 아동의 삶의 질 제고 또는 아동 발달 지원의 목적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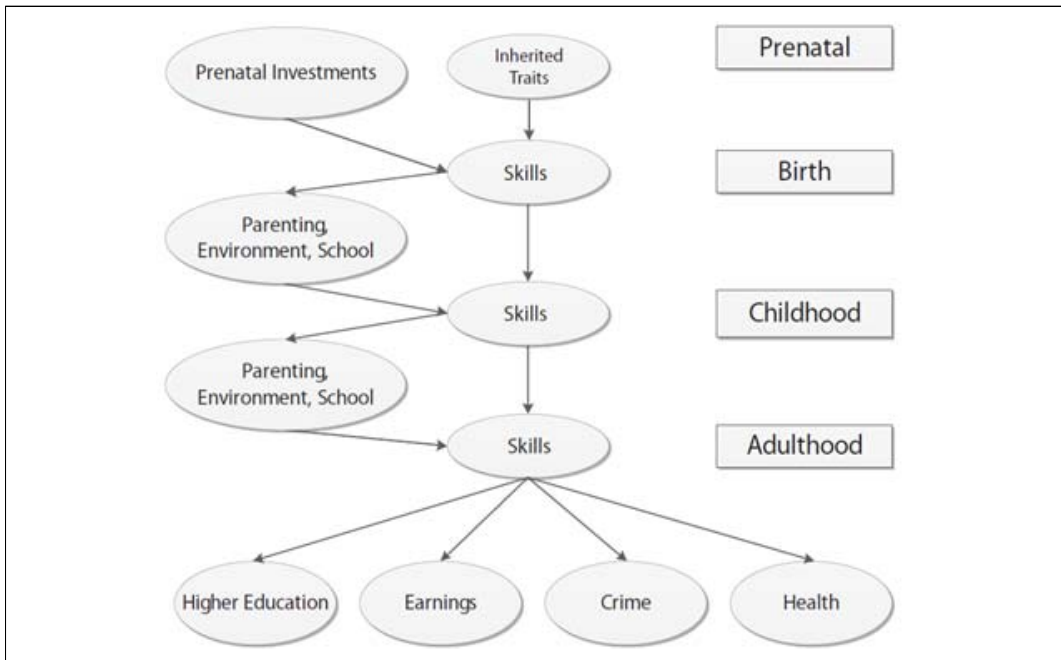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본 사업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사업이 아동의 발달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동의 발달과정은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 발달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본은 궁극적으로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아동기에 형성된 인적자본이 아동의 생애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의미한다. 본 소절은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영유아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본 사업이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41)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2) 인적자본 발달 이론

경제학에서는 인적자본의 형성과정을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축적되어가는 과정으로 모형화하여 설명한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아동기를 하나의 발달단계로 가정해 왔는데, 최근 경제학에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을 여러 단계로 가정하여 아동기의 인적자본 형성과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Cunha and Heckman(2007, 2008), Cunha, Heckman and Schennach (2010) 등이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아동의 발달과정을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확립하였다. 이렇게 확립된 아동기 인적자본 발달 과정의 개념적인 틀은 과거의 많은 인적자본 발달과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들과 다양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들의 효과 분석결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V-2] 동적 인적자본 형성(Dynamic Skill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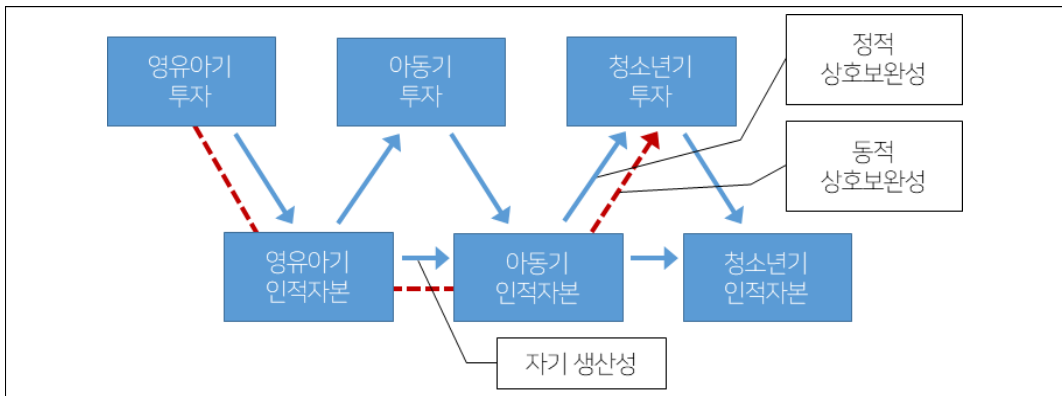
자료: Kautz, Heckman, Diris, Weel and Borghans(2014), p. 32

[그림 V-2]은 출생 이후 인적자본(Skills)이 동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보여 준다. 아동기를 더 세분화하여 더 많은 발달단계를 고려할 수 있으나,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그림에서는 발달단계를 출생(Birth)에서 아동기(Childhood)까지의 단계와 아동기

(Childhood)에서 성인기(Adulthood)까지의 단계, 두 단계로 단순화하였다. [그림 V-2]에서 보여주는 인적자본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생 시 생애 최초의 인적자본은 유전적 요인들(inherited traits)과 산전 투자(prenatal investments)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후 각 발달단계에서는 이전 발달단계에서 형성된 인적자본과 해당 발달단계의 양육(parenting), 환경(Environment), 투자(Investment)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해당 발달단계의 인적자본이 결정된다.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성인기에 이르러 인적자본은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요소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적 인적자본 형성 모형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서로 다른 시기의 투자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동적 상호보완성(dynamic complementarity)이다. 동적 상호보완성은 이전 발달단계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현 발달단계의 인적자본 형성에 주는 영향인 자기생산성(self-productivity)과 이전 발달단계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이 현 발달단계의 투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인 정적 상호보완성(static complementarity)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구체적인 예로써 영유아기 투자와 청소년기 투자의 동적 상호보완성을 [그림 V-3]와 함께 살펴보면, 영유아기의 투자는 영유아기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인적자본의 자기생산성에 의해 영유아기의 인적자본은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아동기에 형성된 인적자본은 청소년기 투자와의 정적 상호보완성에 의해 청소년기 투자효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영유아기의 투자는 청소년기의 투자효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V-3] 자기생산성, 정적 상호보완성, 동적 상호보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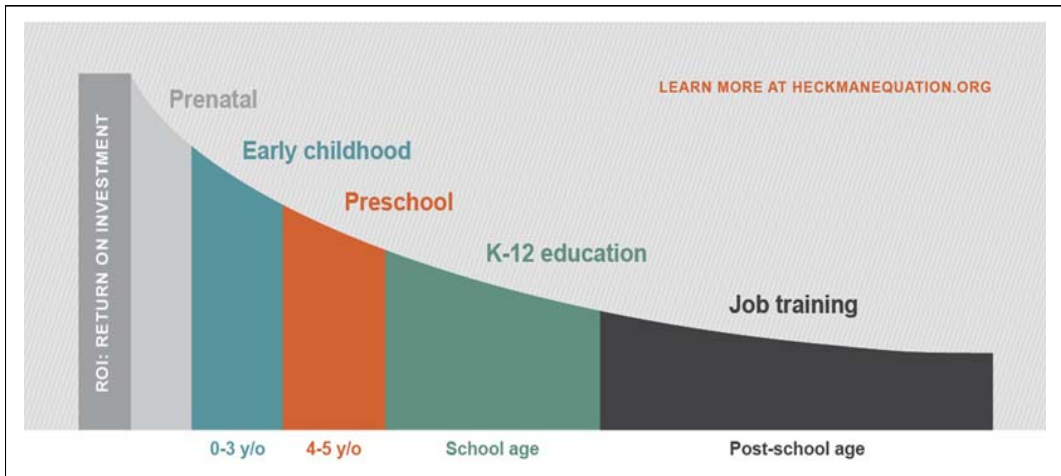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인적자본의 동적인 형성과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동적 상호보완성은 생애 초기 발달단계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적 상호보완성에 따르면, 여러 요인에 의해 생애 초기 또는 영유아기에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게 되면 인적자본의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이후 발달단계에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으로 인해 교육수준, 고용, 임금수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생애 초기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적자본이 충분히 형성된다면 이후 발달단계에서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성인기까지 충분한 수준의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인적자본 형성 이론은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서 투자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충분한 수준으로 인적자본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정이 초기 발달단계가 아닌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정의 효과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고 투자비용 또한 클 수 있다. 하지만 조기 개입을 통해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자본을 충분히 발달시킨다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James Heckman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림 V-4]에서 보여주듯이 인적자본의 대한 투자가 더 어린 연령대에서 이루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림 V-4] 생애주기별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



자료: The Heckman Equation 홈페이지, <https://heckmanequation.org/resource/the-heckman-curve/> 검색일자: 2021. 3. 10.

물론 인적자본의 유형에 따라 생애초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투자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 이는 인적자본의 유형에 따라 투자에 민감한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적 인적자본 형성 모형으로부터 민감기(sensitive periods)와 중대기(critical periods)라는 개념들을 도출할 수 있다. 민감기는 특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가 다른 시기보다 더 효과적인 시기를 의미하고, 중대기는 특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유일한 시기를 의미한다. Cunha, Heckman, Lochner, and Masterov(2006)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에 사회성, 학습의욕 등을 자극하는 개입 프로그램이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기가 사회성, 학습의욕 등 비인지적 인적자본 형성에 민감한 시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른 시기의 발달단계가 인적자본 투자의 민감기 또는 중대기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외국어 능력, IQ와 같은 인지적 인적자본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도 평균적으로 취약(disadvantaged) 아동에 대한 개입이 늦어질수록 개입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른 시기에 충분한 인적자본을 형성하도록 하는 개입의 중요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2) 관련 선행연구

본 사업과 같이 아동의 출산에 대해 일시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출산지원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인 출산에 대한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신뢰할 만한 식별전략과 아동발달에 대한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가 다른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Deutscher and Breunig(2018)가 일회성 출산지원금의 아동발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유일한 연구로 파악된다. 호주는 2004년 7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3천호주달러의 일시금을 출산지원금(Baby Bonus)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을 통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2004년 7월을 전후하여 출생한 아동들과 2003년과 2005년 7월을 전후하여 출생한 아동들을 비교하여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저자들은 3학년(Year 3) 학생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호주의 출산지원금이 아동의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향상시킨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증거는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인 경우 출산지원금으로 인해 아동의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는 0.04 표준편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eutscher and Breunig(2018)의 분석결과는 출산지원금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증기적으로 크지 않는 수준의 발달상 효과(modest effect)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증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출산지원금의 효과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의 아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연구보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기 대부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정책의 효과와는 다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가구소득의 아동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Adhvaryu, Fenske, and Nyshadham(2016), Akee, Copeland, Keeler, Angold, and Costello(2010), Akee, Copeland, Costello, and Simeonova(2018), Dahl and Lochner(2012; 2017), Milligan and Stabile(2011), Løken, Mogstad, and Wiswall(2012) 등이 있다.

Adhvaryu, Fenske, and Nyshadham(2016)는 아프리카 가나의 코코아 가격 변동성을 이용하여 코코아 생산지역 아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출생한 해에 코코아 가격 변동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생한 해의 코코아 가격이 1 표준편차 증가했을 때(즉 가구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고통에 대한 척도가 0.08 표준편차만큼 감소하고 중증의 경우 0.13 표준편차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는 키에 대해서는 양(+의) 효과가 나타났고, BMI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Akee, Copeland, Keeler, Angold, and Costello(2010)와 Akee, Copeland, Costello, and Simeonova(2018)는 가구소득이 아동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도심 외 지역(rural area)에 새로운 카지노 개장으로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인디언(American Indians)에게 지급하게 된 변화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Akee, Copeland, Keeler, Angold, and Costello(2010)에서는 가구소득 증가로 저소득계층 아동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고, 고등학교 졸업 확률이 39%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kee, Copeland, Costello, and Simeonova(2018)에서는 청소년기 성격적 특성들과 행동들에 0.21~0.37 표준편차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ahl and Lochner(2012; 2017)는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제도변화를 외생적 변동성으로 활용하여 가구소득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5세에서 14세 아동의 읽기와 수학에 대한 평가점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가구소득이 1천달러 증가하였을 때, 아동의 평가점수는 약 0.04 표준편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점수 상승 효과는 낮은 모의 교육수준, 흑인과 히스패닉, 편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에만 나타나거나 취약계층의 아동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Milligan and Stabile(2011)은 캐나다의 자녀장려세제(Child Tax Benefits)의 시계열상 변동 및 지역 간 변동성을 활용하여 가구소득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4세에서 10세 아동의 교육 및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 관련 변수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의 증가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남자아동에 대해서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신 및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가구소득의 증가는 정신 및 정서 문제에 대한 척도값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여자아동에 대해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Løken, Mogstad, and Wiswall(2012)은 노르웨이의 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인근 지역의 소득수준이 외생적으로 상승한 것을 활용하여 가구소득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 효과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구소득의 증가는 교육연수를 늘리고 고등학교 중퇴 확률을 줄여 주며, 성인기의 IQ 점수를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가구소득 분포에서 낮은 소득구간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Del Boca, Flinn, and Wiswall(2014)의 연구는 아동에 대한 지출의 인적자본 생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부모의 양육시간과 아동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결정을 모형화하여 아동의 인적자본생산함수와 함께 구조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아동의 (인지적) 인적자본 형성에 부모의 양육시간이 아동에 대한 지출보다 더 생산적임을

밝혔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시간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중요한 반면, 아동에 대한 지출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는 낮았고 저연령 아동에 집중투자하는 경우가 고연령 아동에 집중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효과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지원의 경우 모든 지원금이 아동에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다른 지출이나 부모의 여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만으로는 일회성 출산지원금의 아동발달에 대한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는 일회성 소득지원의 아동발달에 대한 효과를 엄밀한 식별전략으로 연구한 결과는 Deutscher and Breunig(2018)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시금 형태의 소득지원보다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소득이 지원되는 정책의 효과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일회성 출산지원금의 효과로 확대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Deutscher and Breunig(2018)과 DelBoca, Flinn, and Wiswall(2014)의 연구결과들은 출생 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낮은 수준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Del Boca, Flinn, and Wiswall(2014)에서 아동에 대한 지출의 효과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결과와 가구소득 증가의 효과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소득지원의 효과가 아동의 연령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앞서 논의한 인적자본 형성 이론에서 보여준 결과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론 모형에서도 인적자본 투자 유형을 나누어서 그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현금성 투자는 질 높은 양육시간 투자와는 다른 민감기나 중대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Del Boca, Flinn, and Wiswall(2014)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V-4]에서 보여주는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이 투자대상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은 여러 유형의 개입 프로그램의 평균적인 경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낮은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높은 인적자본 투자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일회성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낮을 수 있어도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utscher and Breunig(2018)에서도 전반적으로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의 효과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만 효과가 나타나거나 상위계층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지원 정책에서뿐 아니라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⁴²⁾ 취약계층에 대한 더 높은 효과성은 계층에 따른 차등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분석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최근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이용하여 아동에 대한 효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본 조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에 대한 지출을 투입요소로 고려하는 인적자본생산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지출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성을 추정해 보았다. 단 본 조사의 분석은 아동에 대한 지출과 아동발달 간 인과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적 증거로 보아야 한다.

가) 분석 모형

Todd and Wolpin(2003; 2007)은 인적자본생산함수의 다양한 형태(specification)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 저자들은 특정 시점의 인적자본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모든 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누적형태(cumulative specification)의 모형을 기본적인 '참(true)' 모형으로 가정하여, 자료의 한계에 따라 기본모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에 대한 가정과 한계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가 가지는 특성과 일회성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목적에 따라 관측된 과거 투입요소들만 포함하는 누적형태의 모형과 누적투입요소(cumulative inputs)를 고려한 부가가치(value-added) 모형을 인적자본생산함수로 이용하였다.

첫 번째로 고려한 관측된 과거 투입요소들만 포함하는 누적형태의 생산함수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2) 대표적인 연구로 Havnes and Mogstad(2015)와 Cornelissen, Dustmann, Raute, and Schönberg(2018)를 참고바란다.

$$Y_{ia} = \alpha_0 + \alpha_1 X_{ia} + \alpha_2 X_{ia-1} + \dots + \alpha_a X_{i1} + \varepsilon_{ia} \quad \text{식 (4)}$$

여기서 하첨자 i 와 a 는 각각 아동 i 과 나이 a 세를 나타내고, Y_{ia} 는 인적자본 측정변수의 값, X_{ia} 는 관측된 투입요소를 의미한다. 이때 투입요소로는 아동에 대한 지출, 모의 근로 여부,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를 고려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재기의 가구원 수, 아동의 월령, 월령의 제곱, 가구소득,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등도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ε_{ia} 는 잔차항으로 관측되지 않은 현재 및 과거 투입요소들의 효과, 관측되지 않은 아동 및 가구 특성들, 측정오류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식 (4)의 추정계수들이 일치추정치(consistent estimates)가 되기 위해서는 관측된 투입요소와 관측되지 않은 현재 및 과거 투입요소, 관측되지 않은 아동 및 가구 특성들 간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출생한 해 아동에 대한 지출이 인적자본의 향상을 가져왔느냐는 것인데, 이는 식 (4)에서 α_a 가 포착한다.

두 번째로 고려한 누적투입요소(cumulative inputs)를 고려한 부가가치(value-added) 생산함수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Y_{ia} = \alpha_0 + \alpha_1 X_{ia} + \alpha_2 X_{ia-1} + \dots + \alpha_a X_{i1} + \beta Y_{ia-1} + \varepsilon_{ia} \quad \text{식 (5)}$$

식 (5)는 식 (4)에 이전 연령의 인적자본을 포함한 식이다. 그래서 식 (5)는 동일한 인적자본 척도가 2개년 이상 존재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생산함수는 이전 연령의 인적자본이 과거에 투입된 모든 관측되지 않은 요소들의 영향을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측되지 않는 투입요소와 아동 및 가구의 특성들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 두 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가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 두 식을 추정한 결과를 해석할 시 주의가 요구된다.

나)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7월

에 출생한 신생아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 아동의 성장·발달, 가구 및 부모 특성, 양육 특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매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인적자본 발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서는 만 0세에서 만5세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인적자본 측정도구는 한국형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Korea-Ages & Stage Questionnaires, K-ASQ),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FCTYC)이다. K-ASQ는 4~6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등 5가지 발달영역에 대하여 부모가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인적자본을 측정한다. CBCL은 보호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18개월~만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평가한다. CBCL에는 여러 지표가 존재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반항행동문제에 대한 DSM 방식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CBCL 지표는 높은 수준의 값이 높은 수준의 행동문제, 즉 행동에 대한 부정평가를 나타낸다. REVT는 아동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용과 표현 어휘력에 대해 평가한다. K-FCTYC는 아동이 수행하는 검사로 아동의 창의적 특성과 능력을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 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투입요소로는 아동에 대한 지출, 모의 근로 여부,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등의 변수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에 대한 지출은 아동에 대한 월평균 소비성 지출과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을 합산하여 구하였다. 모의 근로 여부는 모가 취업 중이고 휴직상태가 아닌 경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개인 대리양육 등의 이용 여부를 의미한다.

분석에서는 가구소득 분위에 따른 아동에 대한 지출의 이질적 효과도 고려하였다. 이때 가구소득 분위는 조사연도 별로 한국아동패널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다) 분석결과

먼저 K-ASQ 척도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표 V-18>은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출생한 해의 경우, 아동에 대한 지출은 모든 K-ASQ 척도들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지원금의 아동발달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16.7만원씩 모든 아동에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K-ASQ 각 척도의 평균 원점수와 비교했을 때 추정치의 크기가 평균 원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의사소통 점수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월평균 16.7만원의 아동에 대한 지출 증가가 있을 경우 의사소통 점수는 0.267점($=16.7 \times 0.016$)만큼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 의사소통 점수 대비 0.50%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나 아동의 나이가 들에 따라 출생연도 아동에 대한 지출과 K-ASQ 척도들의 원점수 간 양(+)의 상관성은 대체로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정치의 크기는 여전히 평균 원점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당해 아동에 대한 지출 또는 이전해 아동에 대한 지출과 K-ASQ 척도 점수 간 상관관계가 없거나 음(-)의 상관관계로 추정되어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내생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개입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V-19〉는 K-ASQ 척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치들은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표 V-20〉에서는 소득분위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고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한 패턴도 발견되지 않는다.

〈표 V-18〉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K-ASQ 원점수

	소근육 운동 점수			대근육 운동 점수		
	0세	1세	2세	0세	1세	2세
평균값	54.560	47.785	53.348	57.152	56.513	57.246
아동지출	0.009*** (0.003)	-0.008 (0.006)	-0.001 (0.004)	0.005*** (0.002)	0.002 (0.002)	0.001 (0.002)
L1. 아동지출		0.018*** (0.003)	-0.006 (0.005)		0.001 (0.003)	0.000 (0.002)
L2. 아동지출			0.014*** (0.002)			0.003 (0.002)
관측치 수	1,773	1,632	1,489	1,773	1,632	1,489

〈표 V-18〉의 계속

	문제해결 점수			의사소통 점수		
	0세	1세	2세	0세	1세	2세
평균값	56.128	49.485	54.090	53.567	49.173	52.790
아동지출	0.005* (0.002)	-0.008 (0.007)	-0.002 (0.004)	0.016*** (0.003)	-0.007 (0.005)	0.001 (0.004)
L1. 아동지출		0.018*** (0.004)	-0.001 (0.003)		0.007** (0.003)	0.003 (0.002)
L2. 아동지출			0.009*** (0.003)			-0.000 (0.003)
관측치 수	1,773	1,632	1,489	1,773	1,632	1,489
개인/사회성 점수						
	0세	1세	2세			
평균값	54.504	52.525	54.839			
아동지출	0.011*** (0.002)	-0.013** (0.006)	-0.006 (0.006)			
L1. 아동지출		0.013*** (0.003)	-0.001 (0.002)			
L2. 아동지출			0.012*** (0.002)			
관측치 수	1,773	1,632	1,489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아동지출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가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19〉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K-ASQ 원점수

	소근육 운동 점수		대근육 운동 점수	
	1세	2세	1세	2세
평균값	47.803	53.348	56.529	57.246
L1.종속변수	0.169*** (0.041)	0.150*** (0.023)	0.183*** (0.060)	0.097*** (0.036)
아동지출	-0.007 (0.006)	-0.002 (0.004)	0.003 (0.002)	0.001 (0.002)
L1.아동지출	0.017*** (0.004)	-0.004 (0.005)	-0.000 (0.003)	0.000 (0.002)
L2.아동지출		0.012*** (0.002)		0.003 (0.002)

〈표 V-19〉의 계속

	문제해결 점수		의사소통 점수	
	1세	2세	1세	2세
관측치 수	1,570	1,489	1,570	1,489
평균값	49.446	54.090	49.182	52.790
L1.종속변수	0.209*** (0.049)	0.143*** (0.024)	0.213*** (0.034)	0.296*** (0.031)
아동지출	-0.006 (0.007)	-0.003 (0.004)	-0.006 (0.005)	-0.001 (0.004)
L1.아동지출	0.017*** (0.004)	0.001 (0.002)	0.004 (0.004)	0.006*** (0.002)
L2.아동지출		0.006** (0.003)		-0.003 (0.003)
관측치 수	1,570	1,489	1,570	1,489
개인/사회성 점수				
	1세	2세		
평균값	52.535	54.839		
L1.종속변수	0.243*** (0.044)	0.117*** (0.025)		
아동지출	-0.011** (0.006)	-0.006 (0.006)		
L1.아동지출	0.011*** (0.003)	0.002 (0.002)		
L2.아동지출		0.010*** (0.003)		
관측치 수	1,570	1,489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아동지출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가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20〉 부가치지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K-ASQ 원점수(소득분위별 이질성 고려)

	소근육 운동 점수		대근육 운동 점수		문제해결 점수		의사소통 점수		개인/사회성 점수	
	1세	2세	1세	2세	1세	2세	1세	2세	1세	2세
평균값	47.803	53.348	56.529	57.246	49.446	54.090	49.182	52.790	52.535	54.839
L1. 종속변수	0.172*** (0.041)	0.150*** (0.023)	0.182*** (0.060)	0.097*** (0.036)	0.209*** (0.049)	0.144*** (0.024)	0.215*** (0.035)	0.297*** (0.031)	0.242*** (0.044)	0.118*** (0.025)
이동지출	-0.007 (0.006)	-0.002 (0.004)	0.002 (0.002)	0.001 (0.002)	-0.007 (0.007)	-0.003 (0.004)	-0.006 (0.005)	-0.001 (0.004)	-0.011** (0.006)	-0.006 (0.006)
L1. 이동지출	0.008 (0.007)	-0.004 (0.005)	0.000 (0.005)	0.000 (0.002)	0.011 (0.008)	0.001 (0.002)	-0.006 (0.009)	0.006*** (0.002)	0.012** (0.006)	0.002 (0.002)
L2. 이동지출		0.008** (0.004)		0.002 (0.003)		0.000 (0.006)		-0.005 (0.006)		0.005 (0.005)
소득 2분위* 0세 지출	0.013* (0.008)	0.004 (0.006)	-0.002 (0.006)	0.002 (0.004)	0.004 (0.008)	0.007 (0.007)	0.012 (0.009)	-0.004 (0.008)	-0.002 (0.007)	0.007 (0.006)
소득 3분위* 0세 지출	0.014 (0.011)	0.006 (0.005)	-0.001 (0.007)	0.002 (0.004)	0.013 (0.010)	0.007 (0.007)	0.009 (0.011)	0.008 (0.007)	0.008 (0.008)	0.008 (0.006)
소득 4분위* 0세 지출	0.004 (0.009)	0.004 (0.005)	0.002 (0.006)	-0.001 (0.004)	0.007 (0.010)	0.007 (0.007)	0.010 (0.010)	0.003 (0.007)	-0.009 (0.008)	0.007 (0.006)
관측치 수	1,570	1,489	1,570	1,489	1,570	1,489	1,570	1,489	1,570	1,489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이동지출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기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년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4. 아동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 4분위 더미(기준: 1분위)와 출생연도 이동지출(0세지출)을 교차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21〉에서 〈표 V-23〉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관련된 CBCL 척도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V-21〉과 〈표 V-22〉는 각각 누적 형태 생산함수와 부가가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그리고 〈표 V-23〉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에서 소득분위별 이질성을 고려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V-21〉과 〈표 22〉의 결과들은 K-ASQ의 경우처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출생연도 아동에 대한 지출과 CBCL 척도들의 백분위점수 간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 5세 때 반항행동의 경우, 〈표 V-22〉의 결과를 기준으로 월평균 1만원의 아동에 대한 지출 증가는 반항행동 백분위점수를 0.025만큼 낮추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월평균 16.7만원 지출증가로 환산하여 평균 백분위점수의 비율로 계산하면 0.98%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출산지원금이 아동의 유아기 정서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이질성을 고려했을 때, 비록 모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서문제와 반항행동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나타났다(〈표 V-23〉 참고). 이 두 척도에 대해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백분위점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지원금의 정서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문제 척도의 소득 4분위 추정치를 환산하여 계산하면, 월평균 16.7만원의 지출 증가는 평균 백분위 점수 대비 1.97% 정서문제 백분위점수 감소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소득분위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취약계층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표 V-21〉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CBCL 백분위점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발달문제		과잉행동		반항행동	
	4세	5세	4세	5세	4세	5세	4세	5세	4세	5세
평균값	47.499	42.355	46.633	43.363	49.684	46.263	50.882	45.006	49.141	42.793
이동지출	0.032 (0.027)	0.012 (0.028)	-0.016 (0.030)	0.019 (0.033)	-0.017 (0.028)	-0.026 (0.029)	0.026 (0.027)	0.022 (0.031)	0.034 (0.028)	0.032 (0.027)
L1.이동지출	-0.006 (0.025)	0.058* (0.031)	-0.011 (0.027)	0.028 (0.031)	0.010 (0.025)	0.010 (0.031)	-0.015 (0.026)	0.060* (0.033)	-0.048* (0.025)	0.047* (0.028)
L2.이동지출	-0.005 (0.012)	-0.034 (0.028)	0.003 (0.012)	-0.008 (0.028)	0.004 (0.011)	-0.003 (0.027)	-0.021** (0.009)	-0.014 (0.035)	-0.021*** (0.007)	-0.016 (0.027)
L3.이동지출	-0.003 (0.008)	0.005 (0.007)	0.004 (0.012)	-0.006 (0.012)	-0.009 (0.009)	0.005 (0.011)	0.012 (0.009)	-0.019*** (0.007)	0.003 (0.013)	-0.009 (0.006)
L4.이동지출	-0.005 (0.011)	0.016* (0.009)	0.004 (0.013)	0.007 (0.011)	-0.011 (0.012)	0.009 (0.009)	0.003 (0.012)	0.006 (0.014)	0.003 (0.012)	0.015 (0.012)
L5.이동지출		-0.015 (0.011)		-0.016 (0.012)		-0.001 (0.011)		-0.010 (0.012)		-0.022* (0.011)
관측치 수	1,309	1,230	1,309	1,230	1,309	1,230	1,309	1,230	1,309	1,230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이동지출 이외에 분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기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22〉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CBCL 백분위점수

	CBCL 백분위점수				
	5세				
	정서문제	불안문제	발달문제	과잉행동	반항행동
평균값	42.358	43.395	46.306	44.967	42.764
L1.종속변수	0.438*** (0.027)	0.511*** (0.025)	0.517*** (0.024)	0.501*** (0.025)	0.503*** (0.024)
아동지출	0.002 (0.026)	0.015 (0.032)	-0.052** (0.025)	0.002 (0.028)	0.026 (0.024)
L1.아동지출	0.043 (0.029)	0.032 (0.027)	0.019 (0.026)	0.041 (0.028)	0.027 (0.025)
L2.아동지출	-0.031 (0.025)	-0.002 (0.025)	-0.003 (0.024)	-0.008 (0.029)	0.005 (0.024)
L3.아동지출	0.006 (0.006)	-0.007 (0.008)	0.003 (0.008)	-0.007 (0.005)	0.001 (0.005)
L4.아동지출	0.018** (0.008)	0.004 (0.007)	0.014* (0.007)	-0.000 (0.010)	0.013* (0.007)
L5.아동지출	-0.013 (0.010)	-0.012 (0.011)	0.010 (0.009)	-0.008 (0.011)	-0.025*** (0.009)
관측치 수	1,225	1,225	1,225	1,225	1,225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아동지출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가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V-23〉 부가가치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CBCL 백분위점수(소득분위별 이질성 고려)

	CBCL 백분위점수				
	5세				
	정서문제	불안문제	발달문제	과잉행동	반항행동
평균값	42.358	43.395	46.306	44.967	42.764
L1.종속변수	0.439*** (0.027)	0.511*** (0.025)	0.518*** (0.024)	0.500*** (0.025)	0.502*** (0.024)
아동지출	0.002 (0.026)	0.015 (0.033)	-0.051** (0.026)	0.001 (0.028)	0.025 (0.025)
L1.아동지출	0.042 (0.029)	0.032 (0.027)	0.019 (0.026)	0.042 (0.028)	0.028 (0.025)

〈표 V-23〉의 계속

	CBCL 백분위점수				
	5세				
	정서문제	불안문제	발달문제	과잉행동	반항행동
L2.아동지출	-0.028 (0.025)	-0.001 (0.025)	-0.004 (0.024)	-0.005 (0.029)	0.007 (0.024)
L3.아동지출	0.006 (0.006)	-0.007 (0.008)	0.003 (0.008)	-0.008 (0.005)	0.001 (0.005)
L4.아동지출	0.018** (0.008)	0.004 (0.007)	0.014* (0.007)	0.000 (0.011)	0.014* (0.007)
L5.아동지출	0.007 (0.015)	-0.011 (0.017)	0.005 (0.015)	0.015 (0.014)	-0.005 (0.015)
2분위* 0세지출	-0.012 (0.020)	0.002 (0.021)	0.006 (0.019)	-0.021 (0.021)	-0.022 (0.018)
3분위* 0세지출	-0.029 (0.023)	0.005 (0.025)	-0.002 (0.022)	-0.030 (0.022)	-0.026 (0.022)
4분위* 0세지출	-0.050** (0.024)	-0.011 (0.026)	0.015 (0.021)	-0.052** (0.026)	-0.041* (0.021)
관측치 수	1,225	1,225	1,225	1,225	1,225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아동지출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 가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4. 아동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 4분위 더미(기준: 1분위)와 출생연도 아동지출(0세지출)을 교차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REVT 척도를 이용하여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V-24〉에 정리되어 있다. 추정결과, 만 3세 아동의 수용 어휘력에 있어서 출생한 해의 아동에 대한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월평균 16.7만원 추가 지출이 수용 어휘력 원점수의 2.71% 상승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 어휘력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패턴도 확인되며,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낮은 소득분위에서 언어능력 향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현 어휘력의 경우, 아동에 대한 지출과 표현 어휘력 점수 간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득분위별로 추정하였을 때 소득 2, 3분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득 1, 4분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1분위

를 제외하고 보면, 아동에 대한 지출과 표현 어휘력 점수 간 양(+)의 상관성은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표 V-24〉 누적형태 인적자본생산함수 추정결과: REVT 원점수

	REVT 원점수			
	3세			
	표현		수용	
평균값	30.002	30.002	33.865	33.865
아동지출	0.016 (0.011)	0.017 (0.011)	0.010 (0.014)	0.014 (0.013)
L1. 아동지출	0.007 (0.005)	0.007 (0.005)	-0.004 (0.008)	-0.004 (0.008)
L2. 아동지출	0.001 (0.003)	0.001 (0.003)	-0.012*** (0.004)	-0.012*** (0.004)
L3. 아동지출	0.001 (0.005)	-0.019*** (0.007)	0.055*** (0.007)	0.072*** (0.015)
2분위* 0세지출		0.036*** (0.010)		-0.016 (0.019)
3분위* 0세지출		0.029*** (0.010)		-0.011 (0.017)
4분위* 0세지출		0.012 (0.011)		-0.047** (0.020)
관측치 수	1,369	1,369	1,365	1,365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아동지출 이외에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현재 및 과거 모든 모의 근로 여부, 현재 및 과거 모든 가정 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가구원 수, 출생 시 아동의 체중, 재태기간, 출생순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월령 제곱, 월평균 가구소득임.

4. 아동연령별 월평균 가구소득 4분위 더미(기준: 1분위)와 출생연도 아동지출(0세지출)을 교차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지금까지 다양한 인적자본 척도를 이용하여 인적자본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아동이 출생한 해의 아동에 대한 지출과 인적자본 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떤 척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는기는 하지만, 추정결과들은 아동에 대한 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을 100% 아동에 대한 지출로 소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아동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예상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Del Boca, Flinn, and Wiswall(2014)과 Deutscher and Breunig(2018)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성과 대비 비용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성과 대비 비용은 양육부담 완화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만원의 지원 금액이 생애 초기 의료서비스 및 양육비 평균 지출금액과 비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 양육비 지원정책과 영아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액이 과다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이 0세 아동의 육아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설문참여자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까지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 경험, 기간 및 금액에 대해 항목별로 응답하였다. 다만 해당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혜 경험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본고 역시 0세 아동 중 2019년 5월 이전에 출생한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먼저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혜 현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수혜 여부가 양육비용과 양육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혜 현황

〈표 V-25〉는 본격적인 출산장려금의 효과성 분석에 앞서 0세 아동의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비율과 수혜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에는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타수당,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급여가 있다.

먼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수혜받은 0세 아동의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수혜자의 경우 평균 82.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각각 20만원과 10만원씩 90%가 넘는 비율의 아동이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6%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의 평균 수혜금액은 42.6만원으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비율은 9%며,

육아휴직자의 휴직급여 평균액은 95.2만원으로 나타났다.

비수혜자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아동당 평균 출산장려금은 50.2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눌 경우 아동당 월별 4.2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양육수당, 아동수당, 기타수당,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포함하면 0세 아동당 매월 평균적으로 39.8만원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과 여러 아동 관련 지원 및 수당들을 합하면 2019년 기준 0세 아동은 평균적으로 월 44만원의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0세 아동의 월별 평균 양육비 지출이 53.8만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미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양육 관련 공적이전지출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5〉 0세 아동 출산·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혜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출산장려금 (총액)	양육수당 (월)	아동수당 (월)	기타수당 (월)	보육료 지원(월)	육아휴직 급여(월)
수혜비율	0.61	0.92	0.93	0.03	0.06	0.08
수혜금액 (수혜자만)	82.5	20	10	57.8	42.6	95.2
수혜금액 (비수혜자 포함)	50.2	18.4	9.3	1.8	2.5	7.8
표본아동 수	291	291	291	291	291	291

주: 1. 2019년 5월 이전 출생한 0세 아동으로 한정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출산장려금이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과 보육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출산장려금이 0세 아동의 양육비 지출과 보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표 V-26〉은 출산장려금을 받은 0세 아동과 받지 않은 아동의 양육비 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총양육비 지출은 비수혜자와 수혜자가 각각 48.6만원과 56.7만원으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양육비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교육/보육비로, 출산장려금을 수혜하는 아동의 양육비는 비수혜 아동보다 9.6만원의 지출을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산장려금이 양육비와 보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수혜 여부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양육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과 가구의 모든 특성을 통제한 <표 V-10>의 (5)열에서 출산장려금 수혜 여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양육비 지출 종속변수는 월별 총지출과 세부항목별 지출금액을 사용하였다. [그림 V-5]는 각각의 양육비 항목에 대한 출산장려금 수혜 여부 변수의 추정계수와 95% 신뢰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분석에 사용한 샘플이 적어 신뢰 구간이 넓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절대적인 크기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V-26〉 출산장려금 수혜여부별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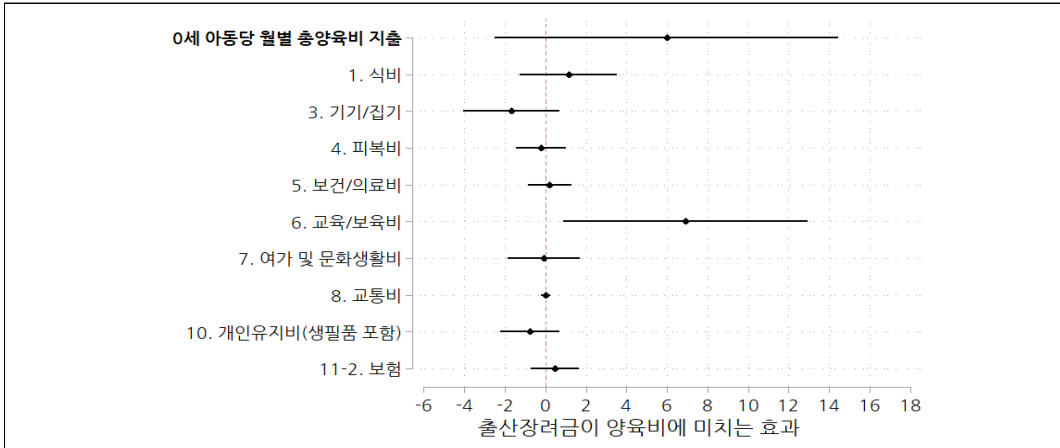
구분	장려금 비수혜 (1)	장려금 수혜 (2)	(2)-(1) (3)	t값 (4)
0세 아동당 월별 양육비 지출	48.6	56.7	8.1	1.7
1. 식비	12.3	12.9	0.6	0.5
3. 기기/집기	3.9	2.1	-1.8	1.5
4. 피복비	5.4	5.3	-0.1	0.2
5. 보건/의료비	3.8	4.2	0.4	0.6
6. 교육/보육비	1.9	11.5	9.6	2.8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7.9	7.4	-0.5	0.5
8. 교통비	0.1	0.2	0	0.4
10. 개인유지비(생필품 포함)	6.8	6.1	-0.7	0.9
11-2. 보험	6.4	7.1	0.7	1.1
가구소득(이전소득 제외)	387.7	399.5	11.8	0.6
공적이전소득	40.3	63.7	23.3	3.5
표본아동 수	101	153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V-5]의 최상단 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받은 0세 아동이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총 월별 양육비가 6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다음으로 세부 지출항목별로 추정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앞서 <표 V-10>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총양육비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요인은 교육/보육비였다.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면 보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6만원 가량 증가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장려금이 출산 가정의 양육비, 특히 보육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본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5] 출산장려금이 0세 아동 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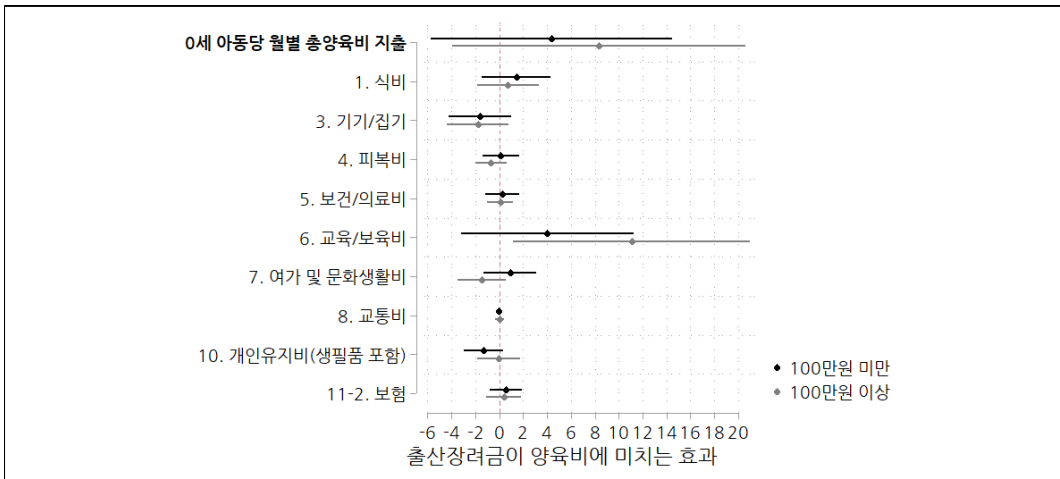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그림 V-6]에서는 출산장려금 금액별로 양육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출산지원금 수혜 여부 더미변수 대신, 100만원 미만 출산지원금 수혜 여부 더미변수와 100만원 이상 출산지원금 수혜 여부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100만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이 총양육비와 보육비에 미치는 효과가 100만원 이하의 출산지원금의 효과보다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효과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V-6] 출산장려금 구간별 0세 아동 양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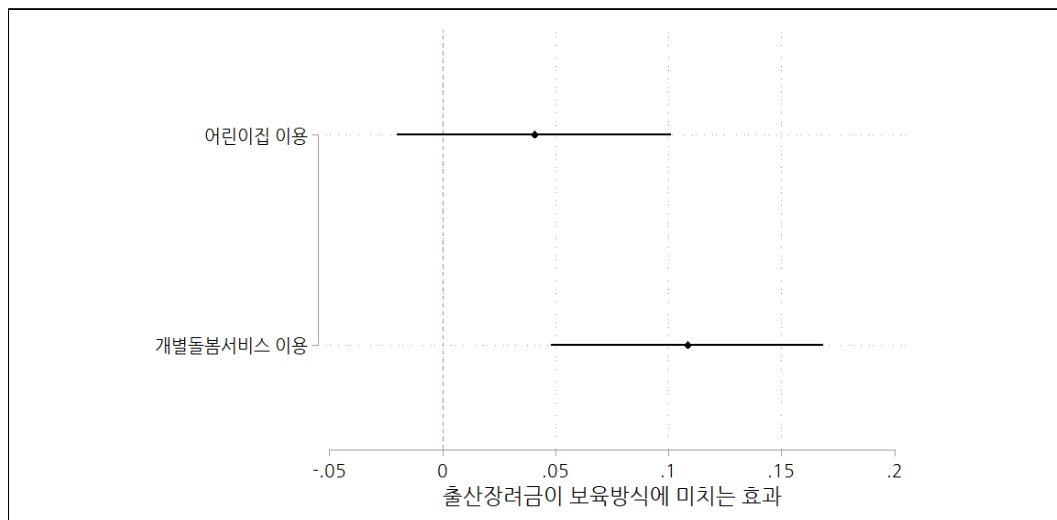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마지막으로 [그림 V-7]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실제로 출산가정의 보육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0세 아동의 보육비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각각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개별돌봄 이용 여부이다. 여기서 개별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을 모두 포함한다. 0세 아동 중 어린이집과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각각 8%와 10%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가정은 양육비의 여유가 생김에 따라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이는 보육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7] 출산장려금이 0세 아동 보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결론적으로 출산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총양육비 지출, 특히 보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보육비의 증가는 대체적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결과는 매우 적은 표본아동 수(291명)를 가지고 진행된 분석이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정책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1만원의 추가적인 출산지원금 지원이 보육비에 미치는 한계적인 효과 (marginal effects)는 총지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할 수 있다. 즉 지자체로부터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추가적으로 본 사업의 바우처를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금이

양육비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 비용-효과적 대안 검토

동 사업의 성과 대비 비용은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보자면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이 미치는 한계효과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수혜하고 있는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기대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가. 종합평가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는 앞서 검토되었던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과거의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은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동일하게 AHP 평가 방법론을 통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 중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고 있다. AHP 방법론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 4. 3.)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방식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복지사업에 기존 SOC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기존의 시행·미시행의 이분법적 평가를 지양하고 수혜대상과 전달체계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기존 정책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 항목을 토대로 수행되었던 AHP 구조의 평가항목 또한 개편하여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항목에 대한 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 점검 및 사업계획 보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기타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 1. 1.)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의 항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제50조(종합평가) 제6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나. 평가 대상(주무부처 사업계획)

본 사업은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유형에 해당된다. 주무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추진의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종합평가에서는 타 예비타당성 조사와 달리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을 '평가 대상 기본(안)'으로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한편 연구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제시한 '평가 대안' 등은 추후 분과위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반영될 수 있다.

평가 대상 기본(안)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 사업개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국적보유 및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출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출생아당, 일시금) 보편적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이후로 하는 계속사업임

□ 총사업비

향후 4년(2022~2025년)간 재정지출 총액은 2조 5,433억원으로 국고 1조 1,821억원, 지방비 1조 3,612억원 부담

(단위: 억원)

총사업비	2022	2023	2024	2025	계
중앙정부	2,790	2,902	3,013	3,116	11,821
지방정부	3,213	3,341	3,470	3,588	13,612
계	6,003	6,243	6,483	6,704	25,433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서비스 외 자녀 보육 관련 서비스, 지역 상권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일시금(바우처)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아동 성장에 필요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가 단위의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수행주체

- 국가(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및 집행 방안 수립
- 지자체: 바우처의 신청·접수·지원을 결정 및 대상자 관리
- 공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등 시스템 운영(바우처 생성·관리),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

□ 재원분담 및 국고지원비율

- (서울일 경우) 국가 30%, 지자체 70%
- (그 외 지역일 경우) 국가 50%, 지자체 50%

□ 분담을 관련 지자체 협의 필요

□ 소요예산 산출 근거

소요예산의 산출 근거는 2022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2,790억원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었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2,787억원)+바우처 운영 관리비(2.5억원)+사업관리 및 지원(0.6억원))

-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지원: 2,787억원
 - 2백만원×30만명('22년 장래인구추계 중위)×47%(평균보조율) = 2,787억원
 - 보조율 평균 47%(서울 30%, 지방 50%)
 - 분담을 관련 지자체 협의 필요
- 바우처 운영 관리비: 2.5억원
 - 인건비(4,600천원×3인×12개월=165백만원) 및 사업홍보 등 운영비(80백만원)
 - (인건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 나급 단가 적용)
 - (사회보장정보원 집행: 바우처 이용대상자에 대한 문자안내,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업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 사업관리 및 지원: 0.6억원
 - (보건복지부 집행: 수용비, 여비, 업추비 등)

다. 조사 대상 집단

종합평가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집단구성원들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을 위한 의사결정 집단구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는 조사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 참여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 1. 1.)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 제11조(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Project Manager: PM)을 포함한 연구진 3명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종합평가 참여자 총 10인을 구성한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진 3명,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의 위원 2명이 평가에 참여한다. 이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 위촉위원 5명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종합평가에 참여한다.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평가표를 통한 종합평가'에서는 AHP 종합평가와 같이 최대·최소 결과 값을 제외한 결과 값을 토대로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라. 종합평가 구조 및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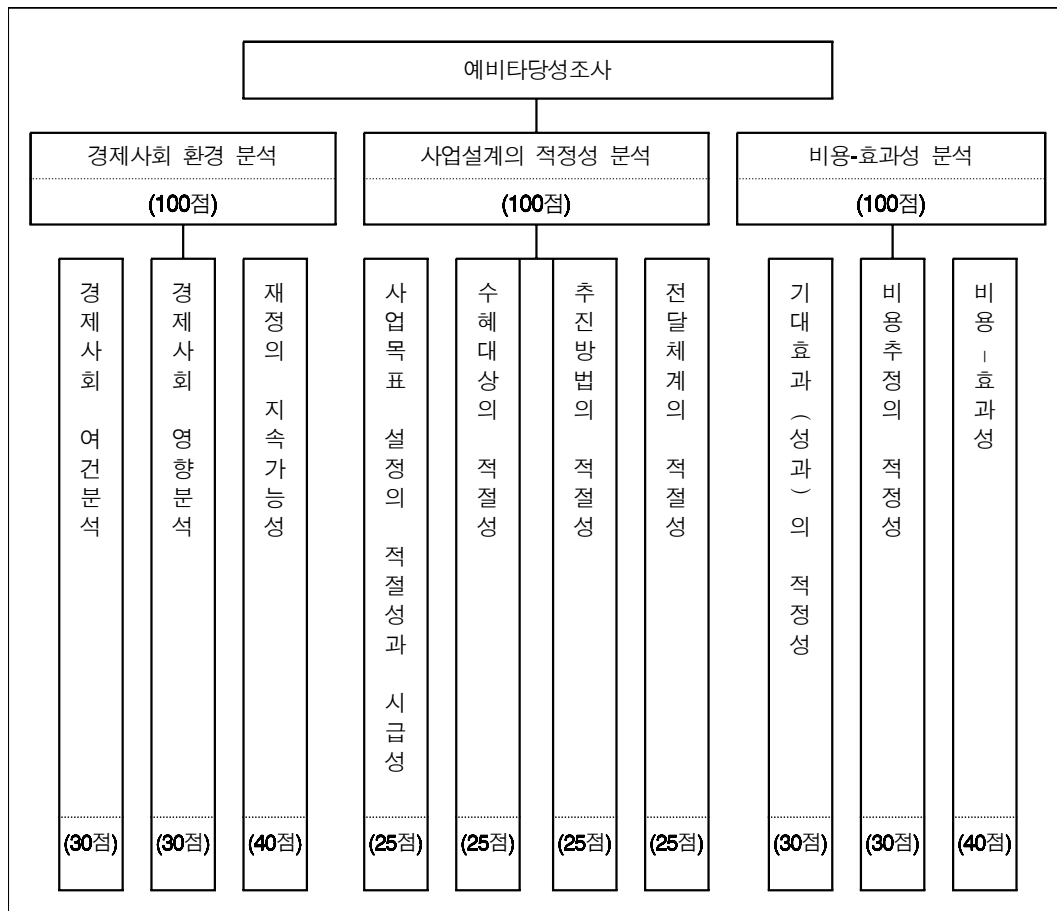
본 종합평가의 목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조건부 추진)을 추진하거나 사업 재기획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사업 재기획)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 1. 1.)에 따라 각 평가항목이 동일하게 100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인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하위 평가항목으로 경제사회 여건분석(30점), 경제사회 영향분석(30점), 재정의 지속 가능성(40점)을 포함한다. 두 번째 영역인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하위 항목이 동일하게 25점씩 배분되어 있으며,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시급성(25점), 수혜대상의 적절성(25점), 추진방법의 적절성(25점), 전달체계의 적절성(25점)을 포함한다. 마지막 영역인 '비용-효과성 분석' 영역은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30점), 비용추정의 적정성(30점), 비용-효과성(40점)이 포함된다. 기존 정량적 수치(B/C ratio)로 대체되었던 비용-효과성 평가항목 외 '장기재정 측면'과 '기대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또한 평가항목에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로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존재할 경우에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되나 본 조사에서는 추가 평가항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을 반영하여 본 사업의 종합평가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계층 구조



각 평가항목의 구성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표 VI-1>과 같다. 경제사회 환경분석 항목에서는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문제가 적절히 파악되었는지,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향후 재정의 미치는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사업설계의 적정성 검토 항목에서는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지, 사업목표·수혜대상을 고려하여 추진 방법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비용-효과성 분석에서는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비용추계가 적절한지,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를 평가한다.

<표 VI-1>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영역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경제사회 환경 분석 (100점)	① 경제사회 여건분석(30점)
	■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가 적절하게 파악되었는가?
	■ 해당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유사한 내용의 민간·지자체·재정사업이 존재하는가?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 우리나라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적절한가?
	② 경제사회 영향분석(30점)
	■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는가? * 기존집단의 반발,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갈등 가능성 검토
	③ 재정의 지속 가능성(40점)
	■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검토
	■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 가능한가?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검토되었는가?

〈표 VI-1〉의 계속

영역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100점)	①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가?
	② 수혜대상의 적절성(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가?
	③ 추진방법의 적절성(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법이 사업목표수혜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분야·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④ 전달체계 적절성(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은 적절한가? 	
비용-효과성 분석 (100점)	①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② 비용추정의 적정성(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검토되었는가?
	③ 비용-효과성(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 수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사업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마. 종합평가 방법

1) 평가 등급별 평가 점수

평가영역(100점) 내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음 <표 VI-2>의 평가 등급별 평가 점수 기준에 따라 각 평가자는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40점이 배정되어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비용-효과성’ 평가영역은 각 평가 구간에 대하여 적정(40~35점), 보통(34~28점), 미흡(27점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30점이 배정되어 있는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각 평가 구간에 대하여 적정(30~26점), 보통(25~21점), 미흡(20점 이하)으로 배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5점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설계의 적정성 하위 4개 평가항목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에는 각 평가 구간에 적정(25~22점), 보통(21~18점), 미흡(17점 이하)이 배분되어 있다.

<표 VI-2>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점수 기준	적정	보통	미흡
40점 기준	40~35점	34~28점	27점 이하
30점 기준	30~26점	25~21점	20점 이하
25점 기준	25~22점	21~18점	17점 이하

2) 평가 결과 산정 방식

영역별 100점이 배분되어 있는 3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 후 세 가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 결과가 산정된다.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이라면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며, 2개 영역 이상이 70점 미만이라면 사업을 다시 기획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 A. 부처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사업 시행
 -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
- B.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 A 또는 C 이외의 경우
- C. 사업 전면 재기획 후 조사 재요구
 - 2개 영역 이상이 70점 미만

〈표 VI-3〉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결과 산정 방식

경제사회 환경 분석		Low (70점 미만)			Medium (70점 이상~85점 미만)			High (85점 이상)		
		Low (70점 미만)	Medium (70점 이상 ~85점 미만)	High (85점 이상)	Low (70점 미만)	Medium (70점 이상 ~85점 미만)	High (85점 이상)	Low (70점 미만)	Medium (70점 이상 ~85점 미만)	High (85점 이상)
사업설계 적정성 분석	Low (70점 미만)	C	C	C	C	B	B	C	B	B
	Medium (70점 이상 ~85점 미만)	C	B	B	B	B	B	B	B	B
	High (85점 이상)	C	B	B	B	B	B	B	B	A

바. 종합평가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77.3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82.8점, 비용-효과성 분석은 78.3점으로(〈표 VI-4〉),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표 VI-5〉). 분과위에서는 경제사회 환경 분석과 관련하여,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 국고보조율 설정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를 지속하여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1) 바우처 사용기한(1년), 잔여금액 소멸 여부 등 바우처 활용 조건을 재검토하여 보완 (2) 추가적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적정 지원대상·지원금액 등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용-효과성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목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사업 시행의 조건으로, 주무부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평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VI-6〉과 같다.

〈표 VI-4〉 평가자별 종합평가점수

구분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종합점수
■ 경제사회 환경 분석	70	57	86	85	85	85	73	77	77.3
- 경제사회 여건 분석	21	15	24	30	25	25	20	23	22.9
- 경제사회 영향 분석	21	15	29	20	21	25	25	24	22.5
- 재정의 지속가능성	28	27	33	35	39	35	28	30	31.9
■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80	82	86	80	86	80	81	87	82.8
- 사업목표 적절성·시급성	20	17	21	17	22	17	21	21	19.5
- 수혜대상의 적절성	20	21	23	22	21	23	22	22	21.8
- 추진방법의 적절성	20	22	21	21	21	17	17	21	20.0
- 전달체계의 적절성	20	22	21	20	22	23	21	23	21.5
■ 비용-효과성 분석	66	72	85	77	87	90	73	76	78.3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20	20	25	25	27	25	20	20	22.8
- 비용추정의 적정성	21	25	26	25	25	28	25	23	24.8
- 비용-효과성	25	27	34	27	35	37	28	33	30.8
총 점(300)	216	211	257	242	258	255	227	240	238.3

〈표 VI-5〉 평가자별 종합의견

구분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종합집계
A. 원안 추진			√		√				
B. 대안 추진	√	√		√		√	√	√	√
C. 사업재기획									

〈표 VI-6〉 분과위 총평

1. 경제·사회 환경 분석
 -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 국고보조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를 지속하여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
 - 이해관계주체(기초·광역지자체)와 구체적인 사업설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2.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바우처 활용조건*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
 - * 바우처 사용기한(1년), 잔여금액 소멸 여부, 양육자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
 - 추가적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적정 지원대상·지원금액 등을 고민할 필요
 -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검토, 유사 출산지원등과의 통합조정 여부 검토 등
3. 비용-효과성 분석
 - 사업목표와 보다 밀접하게 관계되고, 사업추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
 - * 아동의 발달상태 관련 지표, 가구의 경제여건 관련 지표, 부모의 삶의 만족도, 육아휴직 활용도 등
 - ※ 추가적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정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검토

〈표 VI-7〉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명	요구 총사업비(억원)	조사결과	
		총사업비(억원) ¹⁾	평가결과 ²⁾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5,433	20,914	조건부 추진

주: 1)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액수로 중기재정지출 4개년 기준임.
 2) '조건부 추진'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부처는 분과위 총평을 반영한 후속조치를 먼저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

2.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가. 종합결론

‘첫 만남 축하 바우처’는 국가 단위에서 초기 육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초기 양육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양육 방식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종합평가 구조를 토대로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구분되는 세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경제사회 환경 분석”에서는 하위항목인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문제 인식, 정부개입의 적절성, 사업추진 여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의 중복 조정, 국고보조율 설정 등 재정분담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이라는 하위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이 높고 전달체계와 추진방법 설계가 적절하며 추진주체의 역할이 명확하나, 사업목표의 명확화와 구체화가 필요하고 양육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와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와 전반적인 가족정책의 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용-효과성 분석”의 하위항목은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성으로 구성된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폭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성과지표의 사업효과 식별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추가적인 출산지원금이 미치는 한계효과가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기 검토내용을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1. 1. 1.) 제11조(분과위원회)에 따라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종합평가 결과 동 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도출되었다.

나. 정책제언

동 사업의 긍정적인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기대하는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설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 유사사업 조정과 국고보조율 설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동 사업은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의 중복 조정, 국고보조율 설정 등 재정분담 등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23일부터 이해관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여 사업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의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233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19개)가 시행 중에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과 중복성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동 사업의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의 조정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조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조정 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30%, 그 외 지역은 50%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강하게 피력된 바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과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2) 바우처 사용조건의 보완

바우처 사용조건과 관련하여 먼저 바우처 유효기간과 미사용금액의 문제를 살펴보면,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데 미사용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금액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사용금액을 저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바우처 사용처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양육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육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목표와 밀접한 성과지표 설정

동 사업의 사업목적[사업목표]은 “국가 단위 보편적 지원 도입 및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설정하면서도 성과지표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만족도’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사업추진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 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성과지표로는 아동의 발달상태 관련 지표, 가구의 경제여건 관련 지표, 부모의 삶의

만족도, 육아휴직 활용도 등이 예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정책연구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등 관련 지원정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4) 유사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사업내용의 보완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출산지원정책 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혹은 시행 예정인 유사 출산지원정책 및 가족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사업, 육아휴직 제도를 출산지원정책 및 가족정책의 일환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영아수당 역시 시행 예정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한 유사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의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비용-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지원 효과와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한계효과 체감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제이·신윤정·강신욱·오미애·안형석,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15.
- 김미곤·고제이·이철희·홍석철·전병목·여유진·이소영·조성은·전진아·김은정·노용환·서문희·정희정·최은영·김성아·권선정·고경표·서효진,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8262&PAR_CONT_SEQ=356080, 검색일자: 2021. 7. 6.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20190234159, 검색일자: 2021. 7. 6.
- 김민곤·천지은,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 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국가정책연구소, 2016, pp. 163~190.
- 도남희·최정원·박은영·김병철,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2019.
- 박창우·송헌재,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제16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pp. 5~34.
- 보건복지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U1J0H5U3G1N1H3S3B9T0Y0X7M0G8, 검색일자: 2021. 7. 29.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육아정책연구소, 2018.
- _____,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0,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262>, 검색일자: 2021. 7. 6.
- 변수정·정희선·최선영·조성호,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0.
-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pp. 143~180.
- 안정혜·유동우, 「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pp. 159~182.
- 이도훈·계봉오·박종서·김세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협력 연구(제2부) - 초저출산화 시대 출산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이명석·김근세·김대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행정연구원, 2012, pp. 149~174.
- 이유진·김상헌·김나영, 「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 제54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20, pp. 173~197.
- 이유진·정도상,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육아정책연구소, 2015.
- 이병호·박민근,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 318~342.
-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 제1호, 한국 지방자치학회, 2014, pp. 23~51.
- 이충환·신준섭,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7권 제1호, 2013, pp. 97~124.
- 이철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제66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18, pp. 5~4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https://url.kr/uja5ko>, 검색일자: 2021. 7. 6.
- 정호용,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1호, 한국정책학회, 2020, pp. 23~47.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육아 정책연구소, 2020.
- 허만형·이정철,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한국정책 연구』, 제11권 제3호, 경인행정학회, 2011, pp. 387~411.
-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이동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시·군·구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pp. 51~67.
- Adhvaryu, Achyuta, Fenske, James, and Nyshadham, Anant, “Early Life Circumstance and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4), 2019, pp. 1516~1549.
- Akee, Randall K. Q., Copeland, William E., Keeler, Gordon, Angold, Adrian, and Costello, E. Jane, “Parents' Incomes and Children's Outcomes: A Quasi-experiment Using Transfer Payments from Casino Profit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1), 2010, pp. 86~115.
- Akee, Randall K. Q., Copeland, William E., Costello, E. Jane, and Simeonova, Emilia, “How Does Household Income Affect Child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s?,” *American Economic Review*, 108(3), 2018, pp. 775~827.
- Cuhna, F. and Heckman, J.J., “The Technology of Skill 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7(2), 2007, pp. 31~47.
- _____, “Formulating, Identifying and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43(4), 2008, pp. 738~782.
- Cunha, F., Heckman, J. J., Lochner, L., and Masterov, D. V., *Interpreting the evidence*

-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2006.
- Cuhna, F., Heckman, J.J., and Schennach, S.M.,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Econometrica*, 78(3), 2010, pp. 883~931.
- Cornelissen, T., Dustmann, C., Raute, A., & Schönberg, U. (2018). Who benefits from universal child care? Estimating marginal returns to early child care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6), pp.2356~2409.
- Dahl, G. and Lochner, L.,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merican Economic Review*, 102(5), 2012, pp. 1927~1956.
- _____,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107(2), 2017, pp. 629~631.
- Del Boca, D., Flinn, C., and Wiswall, N., “Household Choices and Child Develop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1), 2014, pp. 137~185.
- Deutscher, Nathan and Breunig, Robert, “Baby Bonuses: Natural Experiments in Cash Transfers, Birth Timing and Child Outcomes,” *Economic Record*, 94(304), 2018, pp. 1~24.
- Havnes, T., & Mogstad, M., “Is universal child care leveling the playing fiel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27, 2015, pp. 100~114.
- Kautz, T., Heckman, J. J., Diris, R., Ter Weel, B., Borghans, L., *Fostering and measuring skills: Improving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to promote lifetime success*, OECD, 2014.
- Honore, B. E. “Trimmed Lad and Least Squares Estimation of Truncated and Censored Regression Models with Fixed Effects,” *Econometrica*, 60(3), 1992, pp. 533~565.
- Løken, K.V., Mogstad, M., and Wiswall, M., “What Linear Estimators Miss: The Effects of Family Income on Child Outcom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4(2), 2012, pp. 1~35.
- Milligan, K., Stabile, M., “Child benefits,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health: Evidence from Canadian child benefit expan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9(2), 2009, pp. 128~132.
- _____, “Do Child Tax Benefits Affect the Well-Being of Children? Evidence from Canadian Child Benefit Expansion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3(3), 2011, pp. 175~205.
- Todd, Petra E. and Wolpin, Kenneth I., “On the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Function for Cognitive Achievement,” *Economic Journal*, 113, 2003, pp. F3-F33.
- _____, “The Production of Cognitive Achievement in Children: Home, School, and Racial Test Score Gaps,” *Journal of Human Capital*, 1(1), 2007, pp. 91~136.

〈보도자료〉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보도자료, 2021. 2. 4.,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265, 검색일자: 2021. 7. 6.

〈신문기사〉

김효정, 「30~40대 미혼여성 138만명의 그늘」, 『조선일보』, 2017. 9. 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699.html, 검색일자: 2021. 7. 27.

이유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육아 정책」, 『EBS뉴스』, 2021. 6. 15.,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20471898/N>, 검색일자: 2021. 7. 12.

〈웹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_____,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싱가포르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CDA>, 검색일자: 2021. 7. 12.

영국 정부, <https://www.gov.uk/sure-start-maternity-grant>, 검색일자: 2021. 7. 12.

Citizensinformation,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health/medical_cards_and_gp_visit_cards/medical_card.html, 검색일자: 2021. 8. 1.

CLEISS, https://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4.html, 검색일자: 2021. 8. 2.

Csalad, <https://csalad.hu/tamogatasok/anyasagi-tamogatas>, 검색일자: 2021. 8. 1.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social>.

Expatica, <https://www.expatica.com/be/healthcare/womens-health/having-a-baby-in-belgium-100241/#Pregnancy-childbirth>, 검색일자: 2021. 7. 27.

Famiris.brussels, <https://famiris.brussels/nl/faq/hoe-zit-het-precies-met-de-geboortepremie>, 검색일자: 2021. 7. 27.

Groeipakket, <https://www.groeipakket.be/en/benefits-Groeipakket/birth-benefit>, 검색일자: 2021. 7. 27.

Guichet,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famille/parents/allocation-naissance/allocation-naissance.html>, 검색일자: 2021. 8. 1.

InfoTujci, <https://infotujci.si/en/integration-into-slovenian-society/marriage-birth-and-parenting/birth-of-a-child/>, 검색일자: 2021. 8. 2.

InterNations, <https://www.internations.org/go/moving-to-switzerland/working/its-all-about-family-extra-benefits-in-switzerland>, 검색일자: 2021. 8. 1.

IOM MIGRATION INFORMATION CENTRE, <https://www.mic.iom.sk/en/social-issues/social-support-benefits/430-childbirth-allowance-2.html>, 검색일자: 2021. 8. 1.

Kol Zchut, https://www.kolzchut.org.il/en/Maternity_Grant, 검색일자: 2021. 8. 4.

Migrapolis, <https://www.migrapolis.pl/en/thematic-section/child-in-poland/family-benefits-after-the-child%E2%80%99s-birth>, 검색일자: 2021. 8. 2.

Ministry of Social Affairs, <https://www.sm.ee/en/family-benefits-0>, 검색일자: 2021. 8. 1.

MISSOC,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Parentia, <https://www.parentia.be/en-WA/maternity-allowance>, 검색일자: 2021. 7. 27.

Renkuosilietuva, <https://www.renkuosilietuva.lt/en/lumpsum-child-benefit-payable-for-each-new-born-child-/>, 검색일자: 2021. 8. 1.

SeguridadSocial, <https://www.seg-social.es/wps/portal/wss/internet/Trabajadores/PrestacionesPensionesTrabajadores/10967/33761#33760>, 검색일자: 2021. 8. 4.

The Heckman Equation, <https://heckmanequation.org/resource/the-heckman-curve/>, 검색일자: 2021. 3. 10.

<데이터>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008~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2008~2019.

부록

1. 발송 공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경유)

제 목 첫만남 이용권 예비타당성 조사 추가자료 요청(1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본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한 : 조사일정 상 2021. 07. 09(금) 까지
나. 작성요령 : 불임 참고

불임: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1차 질의 및 자료요청 목록,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위촉연 구원	06/30	선임연구위원	06/30	선터장	06/30
조연주		최성은			박한준

협조자

시행 정부투자분석센터-1415 (2021.6.30.)

접수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s://www.kipf.re.kr>

전화 044-414-2422 / 전송

/ yjjo@kipf.re.kr

/ 비공개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경유)

제 목 첫만남 이용권 예비타당성 조사 추가자료 요청(2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본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한 : 조사일정 상 2021. 07. 09(금) 까지

나. 작성요령 : 불임 참고

붙임: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2차 질의 및 자료요청 목록,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위촉연구원	07/05	선임연구위원	07/05	센터장	07/05
조연주		최성은			박현준

협조자

시행 정부투자분석센터-1465 (2021.7.5.)

접수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s://www.kipf.re.kr>

전화 044-414-2422 / 전송

/ yjjo@kipf.re.kr

/ 비공개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출산정책과장)
(경유)

제 목 첫만남 이용권 예비타당성 조사 추가자료 요청(3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본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한 : 조사일정 상 2021. 07. 16(금) 까지
나. 작성요령 : 불임 참고

불임: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3차 질의 및 자료요청 목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위촉연 구원	07/08	선임연구위원	07/08	선 티장	07/08
	조연주		최성은		박한준

협조사

시행 정부투자분석센터-1516 (2021.7.8.) 접수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s://www.kipf.re.kr>

전화 044-414-2422 / 전송 / yjjo@kipf.re.kr / 공개

2.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지

평가지 번호 / 10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성 명: _____ (서 명)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본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평가지의 응답에는 시간제한 등 특별한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결과를 꼼꼼히 읽어보신 뒤 제시된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시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결론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각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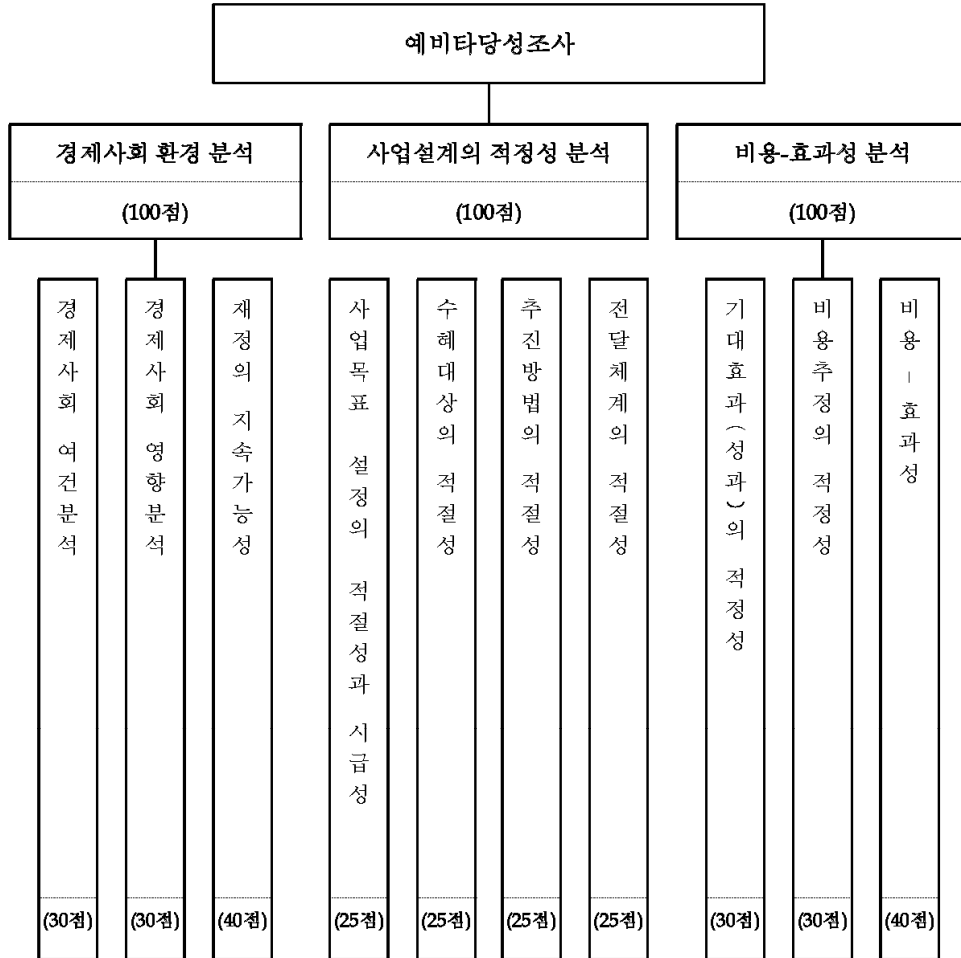
설문목차

1.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229
1) 평가 구조	229
2) 평가 내용	230
2. 평가 방법	231
1) 평가점수별 평가등급	231
2) 평가 예시	231
3) 평가 결과 산정 방식	232
4) 평가 시 유의사항	232
3. 개인별 평가지	233
1) 종합의견	233
2) 점수표	233
3) 검토의견	234
4. 연구를 위한 추가 설문	238

1. 평가 구조 및 평가 내용

1) 평가구조

<표 1>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종합평가 구조



2) 평가 내용: 세부 평가 기준은 참고용이며, 영역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표 2>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

영역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경제사회 환경 분석 (100점)	① 경제사회 여건분석(30점)
	■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가 적절하게 파악되었는가?
	■ 해당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유사한 내용의 민간·지자체·재정사업이 존재하는가?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 우리나라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적절한가?
	② 경제사회 영향분석(30점)
	■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는가? * 기존집단의 반발,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갈등 가능성 검토
	③ 재정의 지속가능성(40점)
	■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검토
■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 가능한가?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검토되었는가?	
사업설계의 적정성 (100점)	①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25점)
	■ 사업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가?
	② 수혜대상의 적절성(25점)
	■ 수혜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가?
	③ 추진방법의 적절성(25점)
	■ 추진방법이 사업목표·수혜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사업추진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 동일한 분야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④ 전달체계의 적절성(25점)	
■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은 적절한가?	
비용-효과성 (100점)	①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30점)
	■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② 비용추정의 적정성(30점)
	■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검토되었는가?
	③ 비용-효과성(40점)
	■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 수준인가?	
■ 제시된 사업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2. 평가 방법

1)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평가영역(100점) 내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음 <표 3>의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등급 및 점수 기재

<표 3>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점수 기준	적정	보통	미흡
40점 기준	40~35점	34~28점	27점 이하
30점 기준	30~26점	25~21점	20점 이하
25점 기준	25~22점	21~18점	17점 이하

2) 평가 예시

- 종합의견: 부처의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 연구진이 제시하는 대안을 반영하여 추진, 사업 전면 재기획하여 조사 재요구 중 택1
- 평가표: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기재하고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시행·대안추진·사업 재기획 중 택1)
- 검토의견: 평가항목별로 자유롭게 서술하되 조사과정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이 아니라 부처의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 평가자는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 이외의 대안 제시는 지양

<표 4> 종합의견: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판단 체크 예시

원안 추진	대안 추진	사업 재기획	
√			■ 사업추진에 대해 종합판단

<표 5> 평가표: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의견 기재 예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가점수	
경제사회 환경 분석 (100점)	경제사회 여건분석	적정	√ 보통	미흡	25 / 30점	■ “보통” 등급에 체크했으므로, 21~25점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
	경제사회 영향분석	적정	보통	√ 미흡	19 / 30점	■ “미흡” 등급에 체크했으므로 20점 이하로 점수를 부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적정	보통	미흡	37 / 40점	■ “적정” 등급에 체크했으므로 35~40점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
	종합점수 81 점					■ 각 평가항목 점수 합산

1) 평가점수 합계와 평가자의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비교하여 비일관성 여부를 확인

ex) 평가점수 합계는 3개영역 모두 85점 이상으로 ‘부처의 사업계획 원안 추진’이나, 사업 추진여부 판단은 ‘대안추진’ 또는 ‘사업 재기획’으로 선택하는 경우 → 비일관성으로 재평가 실시

<표 6> 검토의견: 검토의견 기재 예시

1. 수혜대상의 적절성

예시) 부처가 제시한 수혜 대상기준은 본 사업취지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대상을 포함할 우려가 있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평가 결과 산정 방식

※ 영역별 100점을 배분하여 3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 수행

- A. 부처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사업 시행
 -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
- B.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 A 또는 C 이외의 경우
- C. 사업 전면 재기획 후 조사 재요구
 - 2개 영역 이상이 70점 미만

<표 7>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결과 산정 방식

경제사회 환경 분석		Low(70점 미만)			Medium (70~84점)			High (85점 이상)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Low (70점 미만)	Medium (70~84점)	High (85점 이상)	Low (70점 미만)	Medium (70~84점)	High (85점 이상)	Low (70점 미만)	Medium (70~84점)	High (85점 이상)
비용-효과성 분석	Low (70점 미만)	C	C	C	C	B	B	C	B	B
	Medium (70~84점)	C	B	B	B	B	B	B	B	B
	High (85점 이상)	C	B	B	B	B	B	B	B	A

4) 평가 시 유의사항

- 첫째, 본 평가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한 종합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 둘째, 설문지와 함께 제시된 조사결과 요약은 꼭 읽어보시고 평가에 응해주십시오.
- 셋째, 검토의견 작성 시 평가의 근거 및 정책제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3. 개인별 평가지

성 명:	소 속:	직 위:
------	------	------

1) 종합의견

원안 추진	대안 추진	사업 재기획

2) 점수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가점수
		적정	보통	미흡	
경제사회 환경 분석 (100점)	경제사회 여건분석	적정 (30~26점)	보통 (25~21점)	미흡 (20~0점)	___ / 30점
	경제사회 영향분석	적정 (30~26점)	보통 (25~21점)	미흡 (20~0점)	___ / 30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정 (40~35점)	보통 (34~28점)	미흡 (27~0점)	___ / 40점
	종합점수 ___ 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100점)	사업목표 적절성·시급성	적정 (25~22점)	보통 (21~18점)	미흡 (17~0점)	___ / 25점
	수혜대상의 적정성	적정 (25~22점)	보통 (21~18점)	미흡 (17~0점)	___ / 25점
	추진방법의 적정성	적정 (25~22점)	보통 (21~18점)	미흡 (17~0점)	___ / 25점
	전달체계의 적절성	적정 (25~22점)	보통 (21~18점)	미흡 (17~0점)	___ / 25점
종합점수 ___ 점					
비용- 효과성 분석 (100점)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적정 (30~26점)	보통 (25~21점)	미흡 (20~0점)	___ / 30점
	비용추정의 적정성	적정 (30~26점)	보통 (25~21점)	미흡 (20~0점)	___ / 30점
	비용-효과성	적정 (40~35점)	보통 (34~28점)	미흡 (27~0점)	___ / 40점
	종합점수 ___ 점				

2021년 ___월 ___일 평가자: _____(서명)

3) 검토의견: 분과위 토론을 위한 참고용이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성 명:	소 속:	직 위:
------	------	------

I. 경제사회 환경 분석


1. 경제사회 여건분석

2. 경제사회 영향분석

3. 재정의 지속가능성

II.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2. 수혜대상의 적절성



3. 추진방법의 적절성



4. 전달체계 적절성



Ⅲ. 비용-효과성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2. 비용추정의 적정성

3. 비용-효과성

2021년 __월 __일 평가자: _____(서명)

4. 연구를 위한 추가 설문 : 연구를 위한 설문이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음 설문은 본 종합평가의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및 2계층 내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자께서는 본 사업의 평가에 있어,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추가 설문은 평가 결과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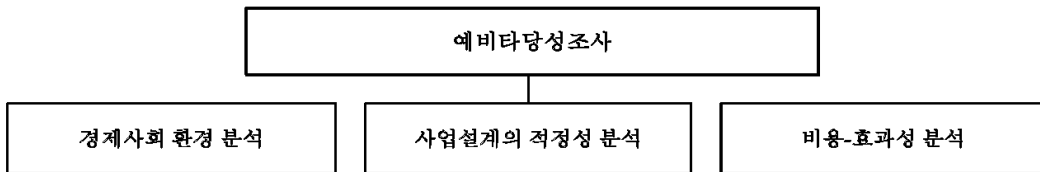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_____ : _____ : _____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15~65%	15~65%	15~65%

<표 8>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종합평가 1계층 평가구조



II-1.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사회 환경 분석 내 평가항목인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지속가능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사회 영향분석 : 재정의 지속가능성 = _____ : _____ : _____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15~65%	15~65%	15~65%

II-2.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업설계의 적절성 내 평가항목인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30 : 30 : 20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 수혜대상의 적절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전달체계의 적절성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10~55%	10~55%	10~55%	10~55%

II-3.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비용-효과성 내 평가항목인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비용추정의 적절성, 비용-효과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 비용추정의 적절성 : 비용-효과성 = _____ : _____ : _____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비용추정의 적절성	비용-효과성
15~65%	15~65%	15~65%

다음 설문은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II.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IV-1. ‘경제사회 환경 분석’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IV-2.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IV-3. ‘비용-효과성 분석’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지금까지 평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분과위원회 총평

본 부록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위원들이 작성한 종합평가서를 표로 정리한 것임.

〈부표 3-1〉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구분	내 용
평가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출산지원금과의 중복성이 존재하며 지자체와의 협의(국고보조율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영아수당과의 사실상의 중복으로, 생애초기에 현금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됨 ■ 영유아 관련 지원이 지나치게 보편적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 상대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affirmative action이 위축됨(예산효율, 형평성 고려)
평가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지원금 사업과의 중복성이 심하므로 중복사업들의 조정이 필요 ■ 영아수당과의 차별성이 높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영아수당 사업과의 통합 필요
평가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바, 예산과 사업 내용측면에서 지자체와 업무 조정 필요 ■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가 필요함 - 연관성이 크지 않은 출산율 관련 지표 보다는 출산 관련 지원금이 가져올 양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측면의 지표 개발 필요
평가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 설계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국고보조사업 방식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와 조율이라고 할 수 있음 ■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유사행태/대상/목적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매칭 부담과 관련 지자체 반발이 예상됨 -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원조달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의 조정, 국고부담비율의 설정 등에 대하여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평가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축하금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음 - 최근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포함) 중 233개 단체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여러 가지 한계(지역간 지원금 차이, 인구유입의 목적)를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의 보편적 사업으로 도입하는 배경은 이해하지만, 지방정부와의 역할 조정·국고부담비율 설정 등 부단한 협의가 필요함 ■ 근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갈등이 예상됨
평가자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타개를 위한 획기적인 양육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책 도입 및 시행의 필요성이 존재 ■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 및 국고보조율 설정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시행 법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처 사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적절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평가자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출산지원정책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음

〈부표 3-1〉의 계속

구분	내 용
평가자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자체 출산지원금과의 유사 중복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사업 추진시 지자체 사업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측면에서는 국고보조율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는 기제가 될 수 있으며, 국고보조율 상향을 지양하며 지자체의 사업조정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출산지원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음
평가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존폐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해야하는 초저출산 사회에서 국가가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됨 ■ 다만, 출산지원사업이 이미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평가자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해 양육비 부담 경감, 출산을 제고 등의 효과를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첫째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일시금으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게 조정을 강력히 권고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현황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부표 3-2〉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강원	육아 기본 수당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440 (30만원×4 8개월)	1,440 (30만원× 48개월)	1,440 (30만원× 48개월)	1,440 (30만원× 48개월)	1,440 (30만원× 48개월)	0	15,153	45,580	70	30
경남	출산 장려금	일시금		-	-	50	50	50	1,550	1,450	1,040	30	70
경북	출산 장려금	일시금		10	60	60	60	60	6,060	5,394	5,900	30	70
광주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20	60	60	60	1,641	1,494	1,900	100	
대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	20	50	50	50	1,807	1,558	1,850	70	30
대구 2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	120 (5만원× 24개월)	360 (20만원× 18개월)	360 (20만원× 18개월)	360 (20만원× 18개월)	12,811	11,111	12,905	70	30
대전	출산 장려 지원금	일시금		30	40	60	60	60	1,566	2,998	3,708	100	
부산	(둘째 이상) 출산 지원금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	50 (30만원+ 20만원, 총2회)	150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회, 총1년)	150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회, 총1년)	150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회, 총1년)	7,200	6,500	5,900	100	
세종	출산 축하금	일시금		120	120	120	120	120	4,320	4,620	4,620	100	
울산	출산 지원금	일시금		10	50	100	100	100	3,218	2,134	2,540	100	
인천	I-Mom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0	100	100	100	100	20,413	19,972	19,062	100	

〈부표 3-2〉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전남	신생아 양육비	일시금		30	30	30	30	30	3,359	3,256	3,570	50	50
제주	출산 장려 축하금	일시금		50	200	200	200	200	5,831	5,943	6,207	100	
충남	행복 키움 수당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40 (월10만원 ×24개월)	240 (월10만원 ×24개월)	240 (월10만원 ×24개월)	240 (월10만원 ×24개월)	240 (월10만원 ×24개월)	2,848	20,142	37,368	50	50
충북	둘째아 이상 출산 양육 지원금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	120 (10만원× 12개월)	240 (20만원× 12개월)	240 (20만원× 12개월)	240 (20만원× 12개월)	10,380	8,334	8,509	30	70

주: 1. 서울, 경기, 전북은 시행하지 않음

2. 분할금은 1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될 경우 수당적 분할금으로, 1년 이하 혹은 12회 이하(기한을 파악할 수 없고 지급 회수만 표기된 지자체의 경우) 지급일 경우 일시금적 분할금으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표 3-3〉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강원강릉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30	50	100	100	100	330	409	491		100
강원고성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40 (20만원+ 10만원× 12개월)	290 (50만원+ 10만원× 24개월)	460 (100만원+ 10만원× 36개월)	460 (100만원+ 10만원× 36개월)	460 (100만원+ 10만원× 36개월)	233	279	300		100
강원동해시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60 (10만원× 6개월)	120 (10만원× 12개월)	180 (10만원× 18개월)	180 (10만원× 18개월)	180 (10만원× 18개월)	199	164.1	210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강원 삼척시 1	출산 장려금	일시금		200 (100만원+ 100% 추가지급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300 (150만원 +100% 추가지급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400 (200만원+ 100% 추가지급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400 (200만원+ 100% 추가지급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400 (200만원+ 100% 추가지급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시))	392	460	500		100
강원 삼척시 2	출생아 지원금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36 (월3만원 ×12개월)	60 (월5만원 ×12개월)	84 (월7만원 ×12개월)	120 (월10만원 ×12개월)	120 (월10만원 ×12개월)	170	166	210		100
강원 속초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70	100	200	200	200	242.2	280		100
강원 양구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100	200	300	400	500	48.5	51.5	310		100
강원 양양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20 (100만원 (출산축하 금)+월10 만원×12 개월)	340 (100만원 (출산축하 금)+월20 만원×12 개월)	820 (100만원 (출산축하 금)+월30 만원×24 개월)	1900 (100만원 (출산축하 금)+월50 만원×36 개월)	1900 (100만원 (출산축하 금)+월50 만원×36 개월)	333	415	411		100
강원 영월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30	50	100	300	300	54	57	72		100
강원 원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30	50	100	100	100	895	905.2	1,000		100
강원 인제군	출산 양육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100만원 ×2년)	300 (150만원 ×2년)	500 (200만원+ 150만원× 2년)	700 (300만원 ×200만원 ×2년)	700 (300만원 ×200만원 ×2년)	175	164	208		100
강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20 (월10만원 ×1년)	120 (월10만원 ×1년)	1440 (월10만원 ×12년)	1440 (월10만원 ×12년)	1440 (월10만원 ×12년)	436	519	660		100
강원 철원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150	200	200	200	336	360	360		100
강원 춘천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70	100	100	100	1,100	1,027	1,050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강원 태백시	출산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분할금	50	100	360 (30만원×12개월)	360 (30만원×12개월)	360 (30만원×12개월)	225.7	192.6	208.2		100
강원 평창군	출산축하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100	200 (100만원+50만원×2회 (분기별))	300 (100만원+50만원×4회 (분기별))	400 (100만원+50만원×6회 (분기별))	500 (100만원+50만원×8회 (분기별))	247	149	185		100
강원 홍천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200 (100만원×2년)	300 (100만원×3년)	600 (200만원×3년)	600 (200만원×3년)	600 (200만원×3년)	147	298	608		100
강원 화천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	-	150 (50만원×3년)	150 (50만원×3년)	150 (50만원×3년)	31	28.5	30		100
강원 횡성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20	100 (50만원×2년)	1080 (월30만원×3년)	1080 (월30만원×3년)	1080 (월30만원×3년)	496	446	516		100
경기 가평군	출산 및 입양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100 (50만원 현금+50만원 가평사랑 상품권)	400 (200만원×2년, 50% 가평사랑 상품권)	1000 (200만원×5년, 50% 가평사랑 상품권)	2000 (200만원×10년, 50% 가평사랑 상품권)	2000 (200만원×10년, 50% 가평사랑 상품권)	707	789	732		100
경기 고양시	출산지원금	일시금		70	70	70	70	70	934	991	4,060		100
경기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100	150	300 (200만원+100만원 (1년후))	500 (200만원+100만원×3회)	500 (200만원+100만원×3회)	220	300	450		100
경기 광명시	출산축하금	일시금		70	70	70	70	70	360	269.9	1,050		100
경기 광주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30	50	100	100	100	278	1,145	1,440		100
경기 구리시	출산지원금	일시금		-	30	60	100	100	231.8	194	238		100
경기 군포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	300	500	700	700	1,718	3,939	3,960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기 김포시	출산 축하금	일시금		5	5	100	100	100	397	416	510		100
경기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30	100	100	100	972	863	1,060		100
경기 동두천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50	100	200	500 (200×2회+100만원)	500 (200×2회+100만원)	165	355	392		100
경기 부천시	(둘째이상)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	100	200	1000 (400만원+50만원×12회)	1000 (400만원+50만원×12회)	3,362	3,088	3,450		100
경기 성남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30	50	100	200	300	1,260	3,086	3,083		100
경기 수원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	50	200	500	1000 (600만원+100만원×4회(1년 후 분기별))	3,290	3,023	3,437		100
경기 시흥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100	200	1000 (200만원×5년)	1000 (200만원×5년)	2,400	2,993.5	1,900		100
경기 안산시	출생 축하금	일시금		100	300	300	300	300	3,169	6,693	6,650		100
경기 안성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	50	200 (100만원×2회)	300 (100만원×3회)	300 (100만원×3회)	382	447	522		100
경기 안양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100	200	300	500	500	5,528	6,100	6,258		100
경기 양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50	100	100	100	269	386	525		100
경기 양평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150만원×2년)	500 (125만원×4년)	1000 (240만원×4년)	2000 (400만원×5년)	2000 (400만원×5년)	1,750	1,825	2,438		100
경기 여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0 (100만원×5년)	1000 (200만원×5년)	1000 (200만원×5년)	1000 (200만원×5년)	810	1,041	904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기연천군	출산축하금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100 (50만원× 2회)	200 (100만원 ×2회)	500 (100만원 ×5회)	1000 (200만원 ×5회)	1000 (200만원 ×5회)	702	614	696		100
경기오산시	출산축하금	일시금		20	50	150	300	300	642	810	860		100
경기용인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일시금		30	50	100	200	300	658	617	3,000		100
경기의왕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	200	300	500	500	1,252	1,476	1,540		100
경기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	100	100	100	100	257	231	1,152		100
경기이천시	출산축하금	일시금		-	-	100	200	300	178	167	240		100
경기파주시	출산축하금	일시금		-	-	80	80	80	278	236	312		100
경기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일시금		50	100	200	300	300	1,454	2,612	3,053		100
경기포천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	30	100	300	300	232	184	270		100
경기하남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	50	100	200	300	522	603	639		100
경기화성시	신생아 출산 지원금	일시금		-	-	100	200	300	695	674	900		100
경남거제시	출산장려금	일시금 +분할 금	일시금 적 분할금	30	70	220 (120만원 (출생시)+ 100만원 (1년 후))	220 (120만원 (출생시)+ 100만원 (1년 후))	220 (120만원 (출생시)+ 100만원 (1년 후))	164	199	1,318.7		
경남거창군	출산축하금	일시금		100	200	300	300	300	75.5	116.5	45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남 고성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일시금 적 분할금	100 (50만원 (첫달)+50 만원(6개 월후))	200 (100만원 (첫달)+100 만원(6개 월후))	500 (300만원 (1개월후) +100만원 (6개월후) +100만원 (12개월후))	500 (300만원 (1개월후) +100만원 (6개월후) +100만원 (12개월후))	500 (300만원 (1개월후) +100만원 (6개월후) +100만원 (12개월후))	375	331	557		
경남 김해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50	100	100	100	339	1,738	1,693		
경남 남해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30만원+ 월15만원 ×18개월)	400 (40만원+ 월15만원 ×24개월)	500 (80만원+ 월20만원 ×21개월)	500 (80만원+ 월20만원 ×21개월)	500 (80만원+ 월20만원 ×21개월)	101	140	295		
경남 밀양시 1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첫돌))	200 (100만원 (출생시)+ 50만원 (첫돌)+ 50만원 (두돌))	500 (150만원 (출생시)+ 150만원 (첫돌)+ 200만원 (두돌))	500 (150만원 (출생시)+ 150만원 (첫돌)+ 200만원 (두돌))	500 (150만원 (출생시)+ 150만원 (첫돌)+ 200만원 (두돌))	977	955	923		
경남 밀양시 2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20	30	30	30	100	80	60		100
경남 사천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200	600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4회(12/24 /36/48개월 거주확인 시))	600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4회(12/24 /36/48개월 거주확인 시))	600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4회(12/24 /36/48개월 거주확인 시))	271	237.35	725.5		
경남 산청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만원+ 50만원 (첫돌))	200 (100만원 +50만원 ×2년 (첫돌, 두돌))	1000 (200만원+ 100만원× 6년(첫돌~ 여섯돌)+ 200만원 (일곱돌))	1000 (200만원+ 100만원× 6년(첫돌~ 여섯돌)+ 200만원 (일곱돌))	1000 (200만원+ 100만원× 6년(첫돌~ 여섯돌)+ 200만원 (일곱돌))	274	285	354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남 양산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100	200	200	200	2,188	1,646	2,580		
경남 의령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만원 출생6개 월후)+50 만원(12개 월후))	300 (50만원 출생6개 월후)+50 만원(12개 월후)+100 만원(24개 월)+100 만원(36개 월))	10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출생후6 개월)+100 만원(12개 월후)+100 만원(18개 월)+100만 원(24개월 +200만원 (36개월)+ 200만원 (48개월)+ 200만원 (60개월))	10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출생후6 개월)+100 만원(12개 월후)+100 만원(18개 월)+100만 원(24개월 +200만원 (36개월)+ 200만원 (48개월)+ 200만원 (60개월))	10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출생후6 개월)+100 만원(12개 월후)+100 만원(18개 월)+100만 원(24개월 +200만원 (36개월)+ 200만원 (48개월)+ 200만원 (60개월))	100	126	85		
경남 진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50	100	300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생후1년))	300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생후1년))	300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생후1년))	1,231.9	1,862	2,015		
경남 창녕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400 (100만원 ×4회(3, 6, 12, 18개월 마다))	1000 (250만원 (출생후3 개월)+150 만원×5회 12, 24, 36, 48, 60개월 마다)	1000 (250만원 (출생후3 개월)+150 만원×5회 12, 24, 36, 48, 60개월 마다)	1000 (250만원 (출생후3 개월)+150 만원×5회 12, 24, 36, 48, 60개월 마다)	1,082	1,985	1,985		
경남 창원시	출산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50	2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돌축하금))	2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돌축하금))	2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돌축하금))	2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돌축하금))	4,175	5,191	6,692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남 통영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100	200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6개월후))	300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2회(출산아 6월,12월))	300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2회(출산아 6월,12월))	300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2회(출산아 6월,12월))	320	240	1,149		100
경남 하동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100만원 ×2회 (2년간))	300 (100만원 ×3회 (3년간))	1000 (100만원 ×10회 (10년간))	1500 (150만원 ×10회 (10년))	2000 (200만원 ×10회 (10년간))	373	471	481		
경남 함안군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300 (100만원 ×3회 (3년간))	1000 (200만원 ×5회 (5년간))	1000 (200만원 ×5회 (5년간))	1000 (200만원 ×5회 (5년간))	338.5	446	680		
경남 함양군	출산· 입양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출생신고 시지급)	200 (100만원 ×2회 (2년간))	1000 (200만원 ×5회 (5년간))	1000 (200만원 ×5회 (5년간))	1000 (200만원 ×5회 (5년간))	273	285	370		
경남 합천군 1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출생후 1년)	300 (100만원 ×3년 (생후 1년부터))	1000 (100만원 ×10년 (생후 1년부터))	1000 (100만원 ×10년 (생후1년 부터))	1000 (100만원 ×10년 (생후1년 부터))	237	164	200		
경남 합천군 2	출산 (입양) 축하 상품권	일시금		10	20	30	30	30	62	22	57		100
경북 경산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120 (월10만원 ×12개월)	360 (월30만원 ×12개월)	1200 (월50만원 ×24개월)	1200 (월50만원 ×24개월)	2,128	1,929	2,300		
경북 경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20만원 (출산축하 금)+30만원 1회)	260 (20만원 (출산축하 금)+월20 만원×12 개월)	1820 (20만원 (출산축하 금)+50만 원×36개 월)	1820 (20만원 (출산축하 금)+50만 원×36개 월)	1820 (20만원 (출산축하 금)+50만 원×36개 월)	1,207.4	1,114.4	3,158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북고령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50 (30만원+20만원(첫돌축하금))	240 (월10만원×24개월)	360 (월10만원×36개월)	600 (월10만원×60개월)	600 (월10만원×60개월)	200	196	292		
경북구미시1	출산축하금	일시금+분할금	수당적분할금	90	60 (30만원+30만원(1년후))	140 (70만원+70만원(1년후))	240 (120만원+120만원(1년후))	340 (170만원+170만원(1년후))	288	213	1,050		100
경북구미시선산2	통합적출산축하금	일시금+분할금	수당적분할금	90	60 (30만원+30만원(1년후))	140 (70만원+70만원(1년후))	240 (120만원+120만원(1년후))	340 (170만원+170만원(1년후))	60	45	372		100
경북군위군1	출생축하금	일시금		50	50	50	50	50	39	38.5	50		100
경북군위군2	출산장려금	일시금+분할금	수당적분할금	10	60 (월5만원×12개월)	720 (월10만원×72개월)	720 (월10만원×72개월)	720 (월10만원×72개월)	78.6	73	48		
경북김천시	출산장려금	일시금+분할금	수당적분할금	300 (100만원(축하금)+10만원×20개월)	500 (200만원(축하금)+10만원×30개월)	800 (300만원(축하금)+10만원×50개월)	1000 (400만원(축하금)+10만원×60개월)	1000 (400만원(축하금)+10만원×60개월)	2,362	2,089	3,200		
경북문경시	출산장려금	일시금+분할금	수당적분할금	360 (100만원+20만원(출산축하금+돌축하금)+10만원×24개월)	1400 (100만원+100만원((출산축하금+돌축하금)+30만원×40개월)	1600 (100만원+100만원(출산축하금+돌축하금)+35만원×40개월)	3000 (100만원+200만원(출산축하금+돌축하금)+45만원×60개월)	3000 (100만원+200만원(출산축하금+돌축하금)+45만원×60개월)	862	1,048.2	1,596.8		
경북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700 (100만원(출산축하금)+월10만원×60개월)	900 (15만원×60개월)	1500 (25만원×60개월)	1800 (30만원×60개월)	1800 (30만원×60개월)	1,574	1,364	1,41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북 상주시	출산 육아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60 (15만원× 24개월)	960 (20만원× 48개월)	1800 (30만원× 60개월)	2400 (40만원× 60개월)	2400 (40만원× 60개월)	1,425	1,263	1,407		
경북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420 (30만원 (출산축하 금)+10만 원×36개 월+20만원 (첫돌축하 금)+10만 원(임신축 하금))	770 (30만원 (출산축하 금)+20만 원×36개 월+20만 원(첫돌축 하금)	1850 (30만원 (출산축하 금)+50만 원×36개 월+20만원 (첫돌축하 금)	2570 (30만원 (출산축하 금)+70만 원×36개 월+20만원 (첫돌축하 금)	2570 (30만원 (출산축하 금)+70만 원×36개 월+20만원 (첫돌축하 금)	613	518	1,123		
경북 안동시 1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40 (10만원× 24개월)	480 (20만원× 24개월)	720 (30만원× 24개월)	720 (30만원× 24개월)	720 (30만원× 24개월)	3,701	2,622	3,554		
경북 안동시 2	출산 축하금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1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돌))	1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돌))	1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돌))	1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돌))	1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돌))	0	0	470		100
경북 영덕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80 (월20만원 ×24개월 +50만원 (첫돌축하 금)+50만 원(초등학 교입학시))	820 (월20만원 ×36개월 +50만원 (첫돌축하 금)+50만 원(초등학 교입학시))	820 (월20만원 ×36개월 +50만원 (첫돌축하 금)+50만 원(초등학 교입학시))	820 (월20만원 ×36개월 +50만원 (첫돌축하 금)+50만 원(초등학 교입학시))	820 (월20만원 ×36개월 +50만원 (첫돌축하 금)+50만 원(초등학 교입학시))	807.8	1,040.4	1,240		100
경북 영양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60 (월10만원 ×36개월)	540 (월15만원 ×36개월)	1200 (월20만원 ×60개월)	1200 (월20만원 ×60개월)	1200 (월20만원 ×60개월)	635	400	421		
경북 영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90 (50만원 (축하금)+ 20만원× 12개월)	770 (50만원 (축하금)+ 30만원× 24개월)	1,850 (50만원 (축하금)+ 50만원× 36개월)	1,850 (50만원 (축하금)+ 50만원× 36개월)	1,850 (50만원 (축하금)+ 50만원× 36개월)	1,327	1,132	1,396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북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300 (100만원+10만원×20개월)	500 (100만원+10만원×40개월)	1000 (100만원+15만원×60개월)	1300 (100만원+20만원×60개월)	1300 (100만원+20만원×60개월)	759	1,331	1,923		
경북예천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240 (월10만원×24개월)	480 (월20만원×24개월)	720 (월30만원×24개월)	1200 (월50만원×24개월)	1200 (월50만원×24개월)	1,169	1,236	1,753		
경북울릉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680 (200만원(출생축하금)+월10만원×48개월)	1160 (200만원(출생축하금)+월20만원×48개월)	2600 (200만원(출생축하금)+월50만원×48개월)	2600 (200만원(출생축하금)+월50만원×48개월)	2600 (200만원(출생축하금)+월50만원×48개월)	133	192	223	100	
경북울진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600 (10만원×60개월)	600 (10만원×60개월)	600 (10만원×60개월)	1200 (20만원×60개월)	1200 (20만원×60개월)	853	771	852	100	
경북의성군	출산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390 (출생100만원, 10만원×24개월, 첫돌50만원)	510 (출생100만원, 10만원×36개월, 첫돌50만원)	1,550 (25만원×60개월, 첫돌50만원)	1,850 (30만원×60개월, 첫돌50만원)	1,850 (30만원×60개월, 첫돌50만원)	923	1,170.6	854.8		
경북청도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150 (100만원+50만원(첫돌축하금))	560 (200만원+월15만원×24개월)	900 (300만원+월25만원×24개월)	1500 (420만원+월45만원×24개월)	2500 (580만원+월80만원×24개월)	369	490	490		
경북청송군	출산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580 (100만원(축하금)+10만원×48개월)	700 (100만원(축하금)+10만원×60개월)	1600 (100만원(축하금)+25만원×60개월)	1900 (100만원(축하금)+30만원×60개월)	1900 (100만원(축하금)+30만원×60개월)	241	224.6	454		
경북칠곡군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분할금	10	130 (40만원(출산축하금)+월5만원×12개월+30만원(첫돌축하금))	200 (40만원(출산축하금)+월10만원×12개월+40만원(첫돌축하금))	440 (40만원(출산축하금)+월10만원×36개월+40만원(첫돌축하금))	800 (40만원(출산축하금)+월10만원×72개월+40만원(첫돌축하금))	698	596	781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경북 포항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 (20만원+ 돌10만원)	110 (50만원+ 5만원× 12개월)	220 (100만원+ 10만원× 12개월)	1,120 (100만원 ×10년+ 10만원× 12개월)	1,120 (100만원 ×10년+ 10만원× 12개월)	463	2,262	2,925		
광주 광산구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일시금		-	-	45	100	300	168	173	197		100
광주 남구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일시금		-	10	20	50	100	61	69	89		100
광주 동구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일시금		-	-	10	10	10	194	56.8	6		100
광주 북구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일시금		-	-	10	10	10	36	22.6	30		100
광주 서구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일시금		-	-	20	20	20	33	30	50		100
대구 남구	첫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	-	-	-	0	27	35		100
대구 달서구	출산 축하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	-	-	200 (연100만 원×2회)	500 (연250만 원×2회)	25	40.5	65		100
대구 달성군	출산 축하금	일시금		50	130	250	250	250	2,222	2,508	2,655		100
대구 동구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50	50	100	100	100	220	202	300		100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 기프트 카드	일시금		-	10	10	10	10	145	123	156		100
대전 유성구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출산 장려 지원금 지원	일시금		-	-	30	30	30	0	0	81		100
대전 중구	출산 장려금 지원	일시금		30	30	30	30	30	60	270	270		100
부산 강서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	50	120 (10만원× 12회)	120 (10만원× 12회)	120 (10만원× 12회)	510	466	510		100
부산 금정구	출산축 하금	일시금		10	20	50	50	50	264	163	192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부산 기장군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 지원금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	-	360 (30만원× 12회)	360 (30만원× 12회)	360 (30만원× 12회)	502.8	507.6	576		100
부산 남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	30	50 (30만원+ 20만원)	50 (30만원+ 20만원)	50 (30만원+ 20만원)	36	157	255		100
부산 동구	출산축 하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	20	200 (20만원× 10회)	200 (20만원× 10회)	200 (20만원× 10회)	101	78.2	144		100
부산 동래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10	20	50	50	50	142	151	222		100
부산 진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	20	60	60	60	54	179	204		100
부산 북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	20	50	50	50	220	181	190		100
부산 사상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	20	30	50	50	131	101	102		100
부산 사하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	20	50	50	50	75	56	195		100
부산 서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20	30	100 (20만원× 5회)	300 (30만원× 10회)	300 (30만원× 10회)	75	116	150		100
부산 수영구	출산 장려금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	100 (20만원× 5회)	200 (40만원× 5회)	300 (50만원× 6회)	300 (50만원× 6회)	104	80	570		100
부산 연제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30	40	60	60	60	253	246	485		100
부산 영도구	출산 축하 (지원)금	일시금		10	30	80	80	80	58	34	107		100
부산 중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20	60 (20만원× 3회)	300 (50만원× 6회)	300 (50만원× 6회)	300 (50만원× 6회)	75	60.6	104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부산 해운대구	둘째 이상 출산 장려금	일시금		-	20	50	50	50	300	219	270		100
서울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30	100	300	500	500	1,311	957	2,042		100
서울 강동구 1	출산 축하금	일시금		20	30	50	100	100	421	383	773.2		100
서울 강동구 2	출산 특별 장려금 지원	분할금							0	150	1,440		100
서울 강북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	30	60	100	150	212	205	275		100
서울 강서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10	50	100	150	200	510	1,050	1,207		100
서울 관악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20	30	50	100	207	320	337		100
서울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10	30	50	100	500	435	376	360		100
서울 구로구	출산 장려 지원금	일시금		-	30	60	200	200	410.2	360.7	385		100
서울 금천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30	50	70	100	100	322.6	267	521.5		100
서울 노원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	20	50	100	100	281	279	325		100
서울 도봉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10	30	50	100	100	370	250	365		100
서울 동대문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30	60	100	200	300	286	618	950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서울 동작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30	50	100	200	200	310	828	1,000		100
서울 마포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50	100	300	500	707	650	760		100
서울 서대문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10	20	50	50	50	269	244	305		100
서울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금	일시금		30	50	100	100	100	690	593	1,212		100
서울 성동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	20	100	150	150	224	241	262		100
서울 성북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30	50	100	100	455	441	430		100
서울 송파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	30	50	100	100	750	620	750		100
서울 양천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	50	70	100	200	569	520.2	740		100
서울 영등포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10	50	300	500	500	1,116	1,048	1,225		100
서울 용산구	출산 지원금	일시금		50	70	100	200	200	192.6	206	689		100
서울 은평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10	35	70	100	200	310	530.55	632		100
서울 종로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30	100	150	150	150	377	415	450		100
서울 중구	출산 양육 지원금	일시금		20	100	200	300	500	346	350	497		100
서울 중랑구	출산 축하금	일시금		10	50	100	200	200	614	608.2	748.2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울산 남구	출산양육장려금품	일시금		60	100	100	100	100	1,341	1,070	1,510		100
울산 동구	출산장려금	일시금		40	50	100	100	100	379	450	460		100
울산 북구	출산지원금	일시금		50	50	100	100	100	490	1,061	1,085		100
울산 울주군	출산장려금	분할금	일시금 적 분할금	50	250 (50만원× 5회)	500 (50만원× 10회)	500 (50만원× 10회)	500 (50만원× 10회)	1,142	2,117	2,610		100
울산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일시금		40	50	100	100	100	415	328	560		100
인천 강화군	출산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50만원× 4회)	500 (50만원× 10회)	1000 (50만원× 20회)	2000 (50만원× 40회)	2000 (50만원× 40회)	234	1,300	1,700		100
인천 계양구	출산입양장려금	일시금 +분할 금	일시금 적 분할금	50	100	300 (100만원+ 월20만원 ×10회)	500 (200만원+ 월30만원 ×10회)	500 (200만원+ 월30만원 ×10회)	1,112	1,114	1,670		100
인천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일시금 +분할 금	일시금 적 분할금	-	100	300	500	1000 (500만원+ 100만원× 5회)	47	2,028	1,300		100
인천 동구	출산입양축하금	일시금		50	100	300	300	300	370	335.5	415		100
인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일시금		-	-	100	100	100	227	218	260		100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출산·입양축하금	일시금		50	100	200	300	300	0	1,234	3,803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인천 연수구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	100	240	1000 (250만원+25만원×30개월)	3000 (500만원+50만원×50개월)	1,673	1,518	1,860		100
인천 옹진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200 (100만원+100만원(만1세))	300 (100만원(출생시)+100만원×2년)	500 (300만원(출생시)+100만원×2년)	1000 (500만원(출생시)+200만원×2년+100만원(만3세))	99	98.5	118		100
인천 중구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	100	300	500 (200만원+월100만원×3개월)	500 (200만원+월100만원×3개월)	370	261	828		100
전남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20 (10만원×12개월)	240 (20만원×12개월)	720 (35만원×12개월+100만원×3회(18, 24, 30개월))	720 (35만원×12개월+100만원×3회(18, 24, 30개월))	720 (35만원×12개월+100만원×3회(18, 24, 30개월))	532	472.9	600		100
전남 고흥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480 (20만원×24개월)	480 (20만원×24개월)	720 (20만원×36개월)	1440 (40만원×36개월)	1440 (40만원×36개월)	859	954	1,101		100
전남 곡성군	농어촌 출생아 양육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100	200	500 (2회분할)	700 (3회분할)	700 (3회분할)	152	115	224		100
전남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0 (100만원+100만원×4년)	500 (100만원+100만원×4년)	1000 (200만원+200만원×4년)	2000 (400만원+400만원×4년)	2000 (400만원+400만원×4년)	2,400	2,580	3,940		100
전남 구례군	신생아 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100만원+20만원×10회)	500 (100만원+20만원×20회)	750 (200만원+27.5만원×20회)	1,000 (200만원+32만원×25회)	1,000 (200만원+32만원×25회)	239	342	556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전남 나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만원+50만원(6개월후))	200 (50만원+50만원×3회(6개월마다))	300 (50만원+50만원×5회(6개월마다))	300 (50만원+50만원×5회(6개월마다))	300 (50만원+50만원×5회(6개월마다))	2,819	2,165	2,200		100
전남 담양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30	220	1000 (50만원×2회+40만원×10회)×2년)	1500 (50만원×2회+40만원×10회)×3년)	2000 (50만원×2회+40만원×10회)×4년)	220	464	840		100
전남 목포시	출산 축하 신생아 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	70	170 (70만원+100만원(1년후))	270 (70만원+100만원×2년(다음해))	370 (70만원+100만원×3년(다음해))	584	731	1,014		100
전남 무안군	신생아 양육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만원+50만원(6개월후))	150 (50만원+50만원×2회(6개월마다))	250 (50만원+50만원×4회(6개월마다))	300 (50만원+50만원×5회(6개월마다))	300 (50만원+50만원×5회(6개월마다))	215	279	338		
전남 보성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40 (10만원×24개월)	360 (15만원×24개월)	600 (25만원×24개월)	720 (30만원×24개월)	960 (40만원×24개월)	680	576	600		100
전남 순천시	순천 아이 꿈 통장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월5만원×60개월)	300 (월5만원×60개월)	300 (월5만원×60개월)	300 (월5만원×60개월)	300 (월5만원×60개월)	1,050	2,018	2,919		100
전남 신안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150	250	350	450	450	477	371	477		100
전남 여수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70	270 (70만원+100만원(1년후))	470 (70만원+100만원×4년(다음해))	470 (70만원+100만원×4년(다음해))	470 (70만원+100만원×4년(다음해))	2,886	3,400	3,308		100
전남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0 (100만원+20만원×20개월)	1200 (120만원+30만원×36개월)	3000 (150만원+50만원×57개월)	3000 (150만원+50만원×57개월)	3000 (150만원+50만원×57개월)	1,537	3,096	2,491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전남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20 (20만원+ 10만원× 10개월)	270 (70만원+ 10만원× 20개월)	470 (170만원+ 10만원× 30개월)	670 (220만원+ 15만원× 30개월)	970 (370만원+ 20만원× 30개월)	908	867	974		100
전남 완도군	출산 장려 양육비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0 (100만원 +400만원 24개월분 할)	1300 (300만원+ 1,000만원 36개월분 할)	1500 (400만원+ 1,100만원 36개월분 할)	2000 (500만원+ 1,500만원 36개월분 할)	1,085	1,216	1,104		100
전남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20 (30만원× 4회 (분기별))	250 (31.25만 원×8회 (분기별))	420 (35만원× 12회 (분기별))	1000 (62.5만원 ×16회 (분기별))	1000 (62.5만원 ×16회 (분기별))	687	687	824		100
전남 장흥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200만원+ 100만원 (1년후))	300 (200만원 +100만원 (1년후))	500 (300만원+ 100만원 (1년후)× 2회)	500 (300만원+ 100만원 (1년후)× 2회)	1000 (400만원+ 200만원 (1년후)× 3회)	563	721	725		100
전남 진도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0 (100만원+ 100만원× 4년)	1000 (100만원 +100만원 ×9년)	2000 (200만원+ 100만원× 18년)	2000 (200만원+ 100만원× 18년)	2000 (200만원+ 100만원× 18년)	317	302	350		100
전남 함평군	나비 고을 출생아 양육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70 (50만원+ 20만원× 11개월)	470 (30만원+ 40만원× 11개월)	670 (50만원+ 20만원× 6개월+1년 후100만원 ×5년)	970 (70만원+ 40만원× 10개월+ 1년후100 만원×5년)	970 (70만원+ 40만원× 10개월+ 1년후100 만원×5년)	525	524	696		100
전남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70 (15만원× 18개월)	320 (50만원+ 15만원× 18개월)	570 (90만원+ 20만원× 24개월)	690 (90만원+ 25만원× 24개월)	690 (90만원+ 25만원× 24개월)	1,983	1,736	1,766		100
전남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30 (10만원× 23개월)	230 (10만원× 23개월)	690 (30만원× 23개월)	1150 (50만원× 23개월)	1150 (50만원× 23개월)	665	847.7	906		100
전북 고창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200	500 (250만원 ×2년)	700 (350만원 ×2년)	1000 (500만원 ×2년)	515	488	536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전북 군산시 1	출산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	100	3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2년)	500 (200만원 (출산시)+ 100만원× 3년)	1000 (400만원 (출산시)+ 150만원× 4년)	582.6	925.2	1,219		100
전북 군산시 2	출산 축하금 지원	일시금		30	30	30	30	30	0	375.9	405		100
전북 김제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400 (신청시 200만원 +다음해 생일월 200만원)	600 (신청시 200만원 +다음해 생일월 200만원 +두번째 생일월 200만원)	800 (신청시 200만원 +다음해 생일월 200만원 +두번째 생일월 200만원 +세번째 생일월 200만원)	1,000 (신청시 400만원 +다음해 생일월 200만원 +두번째 생일월 200만원 +세번째 생일월 200만원)	332	457	587		100
전북 남원시	출생 축하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1년후))	500 (200만원 (출산시)+ 100만원 ×3년)	1000 (400만원 (출산시)+ 200만원× 3년)	1000 (400만원 (출산시)+ 200만원× 3년)	1000 (400만원 (출산시)+ 200만원× 3년)	771	1,371	1,560		100
전북 무주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100만원+ 10만원× 20개월)	300 (100만원 +10만원 ×20개월)	1000 (100만원+ 30만원× 30개월)	1000 (100만원+ 30만원× 30개월)	1000 (100만원+ 30만원× 30개월)	156	208.7	250		100
전북 부안군	출생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50만원 (출생시)+ 50만원 (6개월후) +100만원 ×2년 (다음해))	500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6개월후) +100만원 ×3년 (다음해))	1000 (200만원 (출생시)+ 200만원 (6개월후) +200만원 ×3년 (다음해))	1000 (200만원 (출생시)+ 200만원 (6개월후) +200만원 ×3년 (다음해))	1000 (200만원 (출생시)+ 200만원 (6개월후) +200만원 ×3년 (다음해))	479	541	706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전북 순창군	출산 장려금 (축하금 + 양육비 + 셋째아 이상 특별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60만원 (축하금)+ 20만원× 12개월 (양육비))	460 (60만원 (축하금)+ 20만원× 20개월 (양육비))	1000 (100만원 (축하금)+ 20만원× 30개월 (양육비)+ 100만원× 3분기 (특별출산 장려금))	1500 (100만원 (축하금)+ 30만원× 30개월 (양육비)+ 100만원× 5분기 (특별출산 장려금))	1500 (100만원 (축하금)+ 30만원× 30개월 (양육비)+ 100만원× 5분기 (특별출산 장려금))	900	900	900		100
전북 완주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100 (30만원+ 10만원× 7회)	600 (30만원× 4회(분기) ×5년)	600 (30만원× 4회(분기) ×5년)	600 (30만원× 4회(분기) ×5년)	658	670	670		100
전북 익산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2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300 (100만원 (출산시)+ 100만원× 2년)	500 (200만원 (출산시)+ 100만원× 3년)	1000 (400만원 (출산시)+ 200만원× 3년)	1,089.1	2,015.9	2,300		100
전북 임실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150만원 ×2년)	300 (150만원 ×2년)	500 (250만원 ×2년)	800 (400만원 ×2년)	800 (400만원 ×2년)	285	334	385		100
전북 장수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0 (100만원+ 20만원× 10개월)	500 (200만원 +20만원 ×15개월)	1000 (400만원+ 20만원× 30개월)	1200 (400만원+ 20만원× 40개월)	1500 (500만원+ 20만원× 50개월)	165	196.8	288.2		100
전북 전주시 1	첫째아 출생 축하금	일시금		10	-	-	-	-	79.2	178.1	180		100
전북 전주시 2	둘째아 이상 출생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	30	150 (30만원 (일시금)+ 월10만원 ×12회)	150 (30만원 (일시금)+ 월10만원 ×12회)	150 (30만원 (일시금)+ 월10만원 ×12회)	800.4	935.2	1,020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전북 정읍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0	100	300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2회 (반기별))	1000 (200만원 (출생시)+ 200만원× 4회 (반기별))	1000 (200만원 (출생시)+ 200만원× 4회 (반기별))	678	583	679		100
전북 진안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20 (100만원+ 60만원 (7개월후) +60만원 (13개월후))	220 (100만원 +60만원 (7개월후) +60만원 (13개월후))	1000 (300만원 ×2년+ 200만원× 2년)	1000 (300만원 ×2년+ 200만원× 2년)	1000 (300만원 ×2년+ 200만원× 2년)	450	458	460		100
충남 부여군	출산 장려금, 다태아 출산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200 (50만원+ 50만원× 3년)	500 (100만원+ 100만원× 4년)	1000 (250만원+ 150×5년)	1000 (250만원+ 150×5년)	352	373	380		100
충남 계룡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100	150	150	150	347	230	250		100
충남 공주시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100만원+ 100만원 (1년후))	200 (100만원 +100만원 (1년후))	300 (150만원+ 150만원 (1년후))	500 (200만원+ 100만원 (3년))	500 (200만원+ 100만원 (3년))	730	858	1,000		100
충남 금산군	출산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0 (100만원 ×5년)	700 (100만원 ×7년)	1000 (100만원 ×10년)	2000 (200만원 ×10년)	2000 (200만원 ×10년)	241	181	570		100
충남 논산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50	100	200	300	500	606	617.5	715		100
충남 당진시	출산 지원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100	500 (250만원+ 250만원 (1년후))	1000 (500만원+ 500만원 (1년후))	1000 (500만원+ 500만원 (1년후))	1,425	1,510	1,655		100
충남 보령시	출산 양육 지원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20만원× 5년)	300 (60만원× 5년)	500 (50만원× 10년)	1500 (150만원 ×10년)	3000 (300만원 ×10년)	226	387	700		100
충남 부여군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충남 서산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50	100	500 (250만원+ 250만원 (1년후))	1000 (500만원+ 500만원 (1년후))	1000 (500만원+ 500만원 (1년후))	991.3	1,456	1,700		100
충남 서천군	출산 장려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50만원× 2회)	200 (100만원 ×2회)	300 (100만원 ×3회)	500 (100만원 ×3회+ 200만원)	1000 (200만원 ×5회)	352	321	290		100
충남 아산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	50	100	200	200	879	812	800		100
충남 예산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400 (200만원 ×2년)	600 (200만원 ×3년)	1000 (200만원 ×5년)	3000 (500만원 ×6년)	299	425	595		100
충남 천안시	출생 축하금	일시금		30	50	100	100	100	431	443	2,200		100
충남 청양군 1	출산 축하금	일시금		-	-	50	50	50	8	10	15		100
충남 청양군 2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100	200 (100만원 ×2년)	500 (200만원+ 100만원× 3년)	1000 (200만원 ×5년)	2000 (400만원 ×5년)	183	210	240		100
충남 태안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50	100	200	200	200	237	200	200		100
충남 홍성군	출산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400 (200만원 ×2년)	600 (200만원 ×3년)	1000 (200만원 ×5년)	3000 (600만원 ×5년)	498	603.5	1,344		100
충북 괴산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100만원+ 50만원 (출생후1년) +50만원 (2년))	180 (100만원 (출생후1년) +80만원 (2년))	760 (100만원 (출생후1년) +160만원 (2년)+200 만원(3년) +300만원 (4년))	760 (100만원 (출생후1년) +160만원 (2년)+200 만원(3년) +300만원 (4년))	760 (100만원 (출생후1년) +160만원 (2년)+200 만원(3년) +300만원 (4년))	271	304	399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충북 단양군	출생 장려금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100 (50만원+ 50만원 (돌축하금))	150 (50만원+ 100만원 (돌축하금))	200 (50만원+ 150만원 (돌축하금))	250 (50만원+ 200만원 (돌축하금))	300 (50만원+ 250만원 (돌축하금))	83	127.2	198		100
충북 보은군 1	출산 축하금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100 (10만원× 10개월)	100 (10만원× 10회)	100 (10만원× 10회)	100 (10만원× 10회)	100 (10만원× 10회)	120	126	200		100
충북 보은군 2	넷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	-	-	180 (15만원× 12개월)	180 (15만원× 12개월)	42	34	54		100
충북 영동군	출산 양육 지원금 (자체)	일시금 +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350 (50만원+ 15만원× 20회)	380 (80만원+ 15만원× 20회)	510 (150만원+ 15만원× 24회)	760 (160만원+ 20만원× 30회)	760 (160만원+ 20만원× 30회)	858	985	1,000		100
충북 옥천군 1	출산 축하금	분할금	수당적 분할금	200 (20만원× 10회)	300 (20만원× 15회)	500 (25만원× 20회)	500 (25만원× 20회)	500 (25만원× 20회)	243	357	470		100
충북 옥천군 2	출산 축하 상품권	일시금		10	10	10	10	10	15	17	20		100
충북 음성군	출산 장려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50	-	-	260 (20만원× 11개월+ 40만원× 1개월)	760 (60만원× 11개월+ 100만원× 1개월)	73	124	186		100
충북 제천시	출산 축하금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100	300 (30만원× 10개월)	500 (50만원× 10개월)	500 (50만원× 10개월)	500 (50만원× 10개월)	421	1,099	1,630		100
충북 증평군	출산 축하금	일시금 + 분할금	일시금적 분할금	30	30	80 (30만원+ 50만원 (돌축하금))	180 (80만원+ 100만원 (돌축하금))	260 (100만원+ 10만원× 10회+60 만원(돌축 하금))	123	110	132		100

〈부표 3-3〉의 계속

지방자치단체명	사업명	지급방법	비고	출산순위별 1인당 지원액 (단위: 만원)					2018년 결산 (백만원)	2019년 결산 (백만원)	2020년 예산 (백만원)	보조율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광역	기초
충북 진천군	출산 축하금 지원	일시금 + 분할금	일시 금적 분할금	50	-	-	260 (20만원× 11개월+ 40만원× 1개월)	760 (60만원× 11개월+ 100만원× 1개월)	158	220	233		100
충북 청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30	50	100	100	100	1,050	881.4	934.5		100
충북 충주시	출산 장려금	일시금		100	100	100	100	100	629	1,056	1,250		100

주: 1. 동일한 시군구에서 두 가지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는 곳이 있음. 총 12곳(대구광역시, 강원 삼척시, 경남 밀양시, 경남 함천군, 경북 구미시, 경북 군위군, 경북 안동시, 전북 군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이 해당 하며 대부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의 사업명으로 일시금 지급방식과 분할금 지급방식으로 사업을 나누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충북옥천의 경우는 출산축하 상품권(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2. 분할금은 1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될 경우 수당적 분할금으로, 1년 이하 혹은 12회 이하(기한을 파악할 수 없고 지급 횟수만 표기된 지자체의 경우) 지급일 경우 일시금적 분할금으로 분류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지자체 출산지원금 현황」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FAX 044-414-2179
www.kipf.re.kr